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0205-10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4.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 사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I. 유아교육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3
2.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방법 4
3. 누리과정 재정 지원 요청 4
4. 37개월 유아 유치원 교육비지원 요청 6
5. 유치원비 인상 관련 7

II. 특수교육

1. 특수학교 중등2급 정교사 자격 취득 11
2. 일반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 12
3.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익히기’ 교과서 관련 13
4. 특수교육대상자의 타 시도 소재 유치원 배치 관련 13
5. 재활복지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관련 질의 16
6. 장애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관련 17
7. 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특수교사 충원 요청 18
8. 취학 유예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지원 관련 건의 ... 20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질문(전공과 설치 등) 21

CONTENTS

10.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치료지원 관련 질의	23
1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배치 변경 절차 관련 질의	24
12.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신지체' 장애명 통일 관련 건의	25

Ⅲ.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1. 취학유예확인서 발급기관 확인 요청	29
2. 입학 유예 사유	29
3. 귀국학생의 학적처리(취학인지, 재취학인지)	31
4. 중학교 의무교육 자퇴 관련 문의	32
5. 불법체류자의 고등학교 전학가능 여부 확인	33
6. 독일 고등학교 유학 후 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경우 ...	34
7.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에 관한 질의	37
8. 교육부 학교폭력기록삭제 졸업생은 제외	38
9. 학생부에서의 한 부모 및 재혼가정에 대한 문제정책 개선안	39
10.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재취학 및 졸업 문제 ...	41
11. 초등학생 유급 가능 여부	42
12. 생활기록부 지각처리 수정여부	43
13. 일본에 재학중인 학생의 한국 전학에 대하여	44
14. 예비중학생 재배정관계	46
15. 생리 공결제	47

CONTENTS

16. 인정유학 범위 확대관련	48
17. 등굣길 불의의 교통사고 학생에게 치명적 불이익 주는 현 교육훈령개정 ...	49
18.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학문의	50
19. 졸업장 관련	51
20. 초등학교 전입생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전입을 올 경우 처리 방법	52
21. 학교 졸업 학력 취소	53
22. 외국인 아동의 개명예정 한국이름 나이스시스템 등록 가능 여부	53
23.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질문	55
24. 아들 유학관련 문의	56
25. 무단결석 정의	57
26. 초등학교 전학 문의	58
27. 생활기록부 외부활동 기재	59
28. 2015학년도 외고 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 개선방안	60
29. 고등학교 입학문의	63
30.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거주기간 산정 기준	64
31. 특례요건 충족후 부모 조기 귀국시 특례자격 상실	65
32. 특례입학	66
33. 무상교육 관련 문의	67
34. 특목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다자녀가구)정책의 문제점	68
35. 영훈국제중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호소문	69
36. 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른 정부의 입장 문의	71

CONTENTS

37. 사립학교 학교회계의 구분	72
38.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	74
39. 개인이 특수학교 설립 가능 여부	75
40.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교재등 자료 찾기 안내	76
41. 다문화 교육 폐지 요청	76
42. 검정고시 합격 후 과목 재응시 가능 여부 문의	77
43. 정규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질의	78
44. 공교육을 따라가려면 사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	79
45. 불법사교육 신고 포상제도 문의	81
46.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95
47.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재문의	96
48. 자율학기제 관련 문의	97
49.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원 인정 유무	98
50.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포상제 문의	100
51. 자율학기제 시행재검토	102
5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03
53. 과외 알선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105
54.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	106
55. 학부모회 성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질의	106
5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제 참여 관련 문의	109
57. 주5일제 교육의 문제점 해소 문의	110

CONTENTS

58.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 공문에 따른 업무 과중	111
59. 고교 정규수업 시간 전 보충수업을 9교시(마지막시간)에 편성 운영 문의 ...	112
6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시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	113
61.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시 전공분야 수업 서류제출 관련	114
62. 비영리법인의 방과위탁사업운영 관련 문의	115
63.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117
64. 아직도 학력이 철폐되지 않는 학력사회	118
65. 이적 동의서	119
66.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120
67. 최근의 초등체육전담교사 제도에 관한 의견제안	121
68. 스포츠강사가 왜 교사입니까?	123
69.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 중 스포츠강사의 단독수업진행 반대 ..	124
70. 고등학생들 체육시간에 대하여	126
71. 우리나라 야구 꿈나무들의 현실	127
7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128
73.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130
74. 1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 요청	132
75. 체험활동 관련 인증 프로그램	133
76. 교과 교실제 질문	134
77. 재량 휴업	139

CONTENTS

Ⅳ. 초·중등 교원인사

1. 퇴직과 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143
2.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144
3. 승진 가산점 적용 여부	145
4. 개방형 교장 공모에 대한 문의(교육부)	146
5. 교원승진의 연구실적 점수부여 기준	147
6. 박사학위 및 연수점수 인정여부 질의	147
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 보장	148
8. 2014학년도 복수담임제도 운영 문의	149
9. 기간제 교사 계속 근무기간 문의	150
10. 교원복무시간의 근거	151
11. 교원의 부동산 임대사업	152
12. 교원동반휴직 기간 및 횟수	152
13. 1년 미만 국외연수휴직 가능한지?	154
14. 교사 타시도 교류(일방전출) 확대	154
15. 교사의 육아휴직 중 계절제대학원 수강	155

Ⅴ. 학생건강안전

1. 한센인 자녀(미감아)의 특별지도 내용	159
-------------------------------	-----

CONTENTS

2.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정책	160
3. 학교 보건실 예산 및 직원 배치	161
4. 보건교사 직무와 국민건강보험업무와의 관련성 질의	161
5. 학교 급식법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관련	162
6. 학교 급식법 관련 건강진단 횟수 문의	163
7. 급식 후 남은 음식 재활용	164
8. 방사능 급식	166
9. 학교 급식판 세척제에 관한 질의(교육과학기술부 급식담당) ...	167

Ⅵ.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1.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편 관련 문의	171
2. 역사교육 확대 방안	171
3.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편성 및 관련 근거	173
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평가영역	174
5.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	176
6. 고등학교 1시간 수업을 50분에서 감축 운영 가능 여부	176
7.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적용시기 문의	177
8. 초등학교 하루 수업 시수 증배 가능여부	178
9. 2015년 5, 6학년군 사회과 편성 관련 문의	179
10. '진로와 직업' 교과명 문의	180

CONTENTS

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자료 요청	181
---	-----

VII. 대 학 입 시

1.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특례입학 자격 문의	185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응시자격	187
3.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 조정 요청	189
4. 입학사정관제 전형 개선 건의	190
5. 검정고시 출신의 만학도가 입학 가능한 학교 문의	191
6. 2014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192
7. 대학입시 재외국민전형 중 영주교포 자격	194
8. 여주군 행정구역이 여주시로 편입시 현중1,2재학생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	195
9. 수시 2차 전형료 환불	198
10. 대학 수시 지원 가능 횟수 문의	199
11. 외국 고등학교 졸업장 관련	200
12.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응시서류 제출 여부	202
13.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방법 문의	203
14. 학생부 전형 외부 스펙 반영 문의	205
15. 대학입학 시험 수시, 정시 지원 횟수에 관한 질의	207
16. 대입지원 시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질의	209
17. 대학 입시 전형 중 고른기회(다문화가족자녀 자격) 문의	210

CONTENTS

VIII.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1. 고3 재학 중 군입대시 출결 처리방법	215
2. 마이스터고 이중 지원에 대한 문의	216
3. 특성화고 취업률에 관해 통계 관련	217
4.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규정에 대한 민원	218
5. 진로·진학 상담교사 추가 선발 모집 문의	219
6.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의 강력한 변화 필요	220
7.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 계획	221
8.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현실과 문제점	221
9. 청소년 행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222
10.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연수 제한 시정 요청	223
11. 학부모 대학진학 상담사 과정 개설요청	224
12. MACOS 운영 및 개최 추진에 대한 컨설팅 요청	225
13. 부전공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도 진로 부전공 자격 대상요청 ..	227
14.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학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 및 관리 제안 ...	228

IX. 국 제 교 육

1. 해외 유학생의 국비 장학 지원 여부	233
2. 쿠웨이트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자격	234

CONTENTS

3. 사우디아라비아 단기초청연수 자격	236
4.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금	237
5.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선발자의 증명서 발급	238
6. 병역 미필자의 유학생 지원 가능여부	238
7.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연령 폐지 건의	239
8. 일본 전수학교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과 나이제한 문의	240
9.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시 복수전공자 가능 여부	241
10.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응시 자격	242
11. 중국 유학 관련 정보	244
12. 중국 유학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 장학금	246
13. 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 선발 시 나이 제한	247
14.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관련문의	249
15.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관련	250
16. 중국 학생 한국유학 할수있는 학교와 유학방법	252
17. 초등학생 인정유학 조건	253
18. 외국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 문의	254

X. 교육청 및 지방교육

1. 지방공무원 위생원의 위험수당 지급 시기	259
2.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관련 법령해석 자료 관련	260

CONTENTS

3. 교행 일방 전입	261
4. 공로연수중 겸직허가 여부	262
5. 전보 제한	263
6. 지방공무원의 복무중 겸직 허가에 대하여	263
7.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문의	264
8. 육아휴직중 대학원 수학 가능여부	266
9. 기술정보수당 및 연구업무수당 관련	266
10. 지방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관련 질의	267
11.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복무 후 대체휴무 관련 질의	269
12. 지방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	270
13.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자격(응시요건) 질의	271
14. 지방공무원 직렬 문의	272
15.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에 관한 질의	273
16. 조무직렬 공무원 구조조정 요구	275
17. 교육공무직 제안	278
18. 지방교육행정직 중학교 보전수당 보류 또는 철회 관련	280
19. 우리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281
20. 유,초,중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관련	282
21.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갈등 그리고 분열(수당 관련 해결 제안) ...	286
22. 교육부장관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의뢰	288
23. 교육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290

CONTENTS

24. 교육부와 교사들의 이중적인 행태 시정 요구	291
25. 지방공무원(중학교) 관리수당 지급 시기 문의	292
26. 정책제안 보완 사항	293
27. 전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95
28.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296
29. 시설관리 직렬과 관련하여	297
30.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법안 마련 요망 ..	298
31.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301
32. 선진국으로 가는 길(2/3)	302
33. 시설관리직렬 자격증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4
34. 교육부와 교육감제도	307
35. 교육감선거 폐지 신청	308

XI. 교육정보 및 통계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 ...	313
2.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지연 문제	314
3. 공인인증서 등록 문제 및 번거로운 인증절차	315
4. 회원가입정보-E-mail 수신여부 및 민원게시판 신설 여부	316
5. 非윈도우즈 사용 컴퓨터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317
6. 나이스 가입 절차 과정의 복잡화	318

CONTENTS

7. 학부모서비스 관리 감독 문제	319
8. 나이스 고객상담센터의 응답 성실도 문제	321
9. 에듀팟 가입 했으나 주민번호입력이 안돼 사용 못하는 문제 ..	322
10.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학부모서비스) 윈도우 XP 차단관련	322
11. 다른 OS나 브라우저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324
12. 교육부 청사 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화기 구매처 문의	325
13. 전체 학교 리스트	325
14. 학생 수	326
15. 취학률	326
16. 사이버대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327
17. 사이버대학 내 박사과정 설치 요청	328
18. 보육실습 대란	329
19. 사이버대학교 전형료 환불 건	330
20. EBS 방송교육	331
21.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인증 관련유무	332
22. 사이버 대학 수업료에 관해	333

XII. 대학 및 대학원

1. 부산 경성대 국가지원 자금내역 자료 요청	337
2. 성적 분포에 대한 비율 변경 관련	337

CONTENTS

3. 전임 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관한 문의	338
4. BK21플러스 사업에 관하여	339
5. 국고지원 구입 장비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문의	340
6. 의과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및 등록금 보조 문의	341
7. 그린벨트 지역에 대학 분교 설치 문의	342
8. 법령해석(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관련) 요청	343
9. 지방대학이 서울에 건물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불법	345
10. 육아휴직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문의	346
11. 신학교설립에 관한 건	349
12. 육아휴직 관련 문의	350
13.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가능여부	351
14. 사립학교와의 일람불외화지급보증 거래시 기재 허가사항 질의	353
15. 지방대학교 수도권 캠퍼스 개교 건	354
16. 산업 단지내 대학원 신설	355
17. 대학원·대학교 설립 요건 및 기준	356
18. 신학교 명칭 사용	357
19.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중복지급여부 ..	359
20. ○○대학교 문제	360
21.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해석	361
22. 육아 휴직 중 급여에 대하여	362
23. 지방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에 따른 수도권 학생의 불이익 문제 ...	364

CONTENTS

XI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1. 교과서에서 사용된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 보상금	367
2. 초등학교 교과서	367
3. 내년도 초등교과서 표기방식이 궁금	369
4. 일본의 독도및 위안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370
5. 교과서 선정 의무 규정에 대하여	371
6.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구입	371
7. 교사가 교과서 영업행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나?	372
8. 광개토대왕릉 현지답사 추진 요청	373
9. 한국사 교육 강화 요청	374
10. 일본의 독도및 위안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375
11. 于山島(우산도)가 獨島(독도)라는 논증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요청	376
12.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하여 질의	377

XIV. 교원양성 및 연수, 수당 및 성과금

1. 관광 중등 정교사 2급 취득에 관한 건	383
2.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사자격증 수여 요구	384
3.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해결	384
4. 중등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385

CONTENTS

5. 교육경력 인정관련 질문	386
6. 교원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의	387
7. 전직 대학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388
8. 전문상담교사 2급 기본 이수과목 문의	389
9.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위한 학적상태	390
10. 유아교육법	393
11. 08학번 유아교육과 자격증과 관련	394
12. 방송대 유아교육과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	395
13.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관련 질의	396
14. 정교사 자격증관련	399
15. 교직이수 관련 문의	400
16.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	401
17. 교육봉사 인정 방법	401
18. 교원자격증 발급문의	402
19.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해	403
20. 교직 이수 과목 관련 재문의	404
21. 교장자격 인정제도에 대하여	405
22. 2급 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406
23. 실기교사 자격 문의	406
24. 교육경력 인정기준에서 '전임경력 인정기준'이란?	407
25. 전문상담교사1급 교육경력 인정 범위	408

CONTENTS

26. 교원자격증 부전공 표시 문의	409
27. 최근에 나온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410
28. 2급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	411
29.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시-교원임용시 호봉 인정유무	411
30. 교원 성과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412

XV.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1.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질문 및 염려	417
2. 자격 기본법상 국가의 범위	419
3. 민간자격증 시험일정 조정요망	420
4.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한국시행 관련	421
5. 자격시험 문제지 공개청구	422
6.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의 학원 등록여부 ...	424
7.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환불기간 관련 문의	425
8.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426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문의	427
1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한가?	428
11.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성인반 개설·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429
12. 피아노 방문 레슨 관련 문의	430
13. 원격교습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할때 그 건축물의 용도	431

CONTENTS

14. 평생교육원 부설 체험공간 등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432
15.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예능학원 운영과 관련 질의	433
16. 학원설립 관련 문의	434
17. 원어민(중국인강사) 채용시 구비서류	435
18. 독학사 제도 관련 문의	437
19. 학사학위 인정에 대하여	438
20.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의	440
21.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문의	441
22. 보습 학원에서 외국어 자격증반 운영	442
23. PEET 기숙학원 개원 가능 여부	443
24.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해	443
25. 온라인 학원관련 법률상담	444
26. 온라인 침삭 서비스의 학원법 적용 유무	445
27. 학원의 내부 실측	446
28. 외국인에게 한국어 과외를 할수있나?	447
29.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문의	448
30. 방위산업체 학점인정에 대해서	449
31. 취학전 아동의 교습 문의	450
32. 방송통신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관련 문의	451
3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조건 및 절차	452
34. 방문미술(유아~성인대상)교습의 학원설립 여부	453

CONTENTS

35. 강사 요건	454
36. 방송 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가능 여부	454
37. 성인 대상 평생 직업 학원 설립시	456
38. 학원 교습과정 문의	457
39.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 문의	458
40. 평생교육원 교수가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에 포함되나? ...	459
4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치변경 불가 등의 제한 완화 요구	460
4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일반 특성화고의 차이와 교사 채용 및 지위 ...	461
43. 국내대학에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462
44.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 자격 제한을 두는지 여부 ...	463
45. 학원법 문의	464
46. 학원 강사 자격 문의	464
47. 학원의 휴원 및 폐원에 대한 질문	466
48. 학원 환불 처리 기한 문의	467
49.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수강생 대학 소속 선수로 인정 가능한가? ...	467
50.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68
51.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어캠프 관련	469

XVI. 기 타

1. 원격콘텐츠 나레이션 자막 지원 문의	473
------------------------------	-----

CONTENTS

2. 연수 이수증 발급 시기 문의	473
3. 이수증 출력 오류	474
4. 연수 신청기간 문의	475
5. 물품 구매 요청	475
6.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476
 X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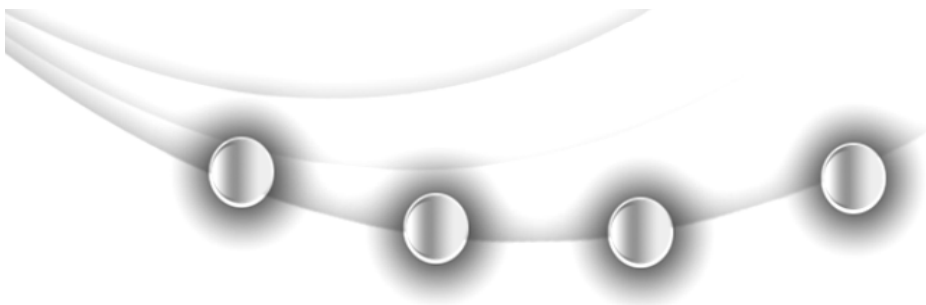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I. 유아교육

■ *민원 질의 · 화신 사례집*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질의

- 현재 정보컴퓨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유아교육과 편입 이외의 방법이 있나요? 교직과정이 개설된 아동학과나 가족학과 이런 곳에서 교직 이수를 하여도 자격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9 13:58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관련별표2에 의해 첫째,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둘째,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입니다. 셋째,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서울대, 한국교원대)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유아교육과에 편입하여 졸업 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취득가능하고, 유아교육과 관련학과(예를 들면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에 들어가서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성적 상위10%에 한해서 자격증을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방법

질의

- 유치원 정교사 2급을 받고, 4년제 대학원격 대학원에서 영·유아교육을 전공해 유아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9 16:45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별표 2에 의해서 제1호는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며, 제2호는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 한국교원대)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위 자격 기준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누리과정 재정 지원 요청

질의

- 이제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는데, 국가에서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비를 못 주겠다고 하니, 부모 된 마음으로써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누리과정이 이제 3~5세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출발점 평등이라는 취지하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니, 지방교육청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럼 그 몫은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이나 교사가 줄어들게 되고, 그 영향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 미래 사회의 기반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합니다. 인적 자원대비 투자 비율이 확실한 유아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재정적 지원을 국고로 지원해 주세요.
- 또한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하거나 대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사립에 보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공립유치원 증원과 그에 걸맞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증원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6 10:3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우리 부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만 3~5세)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 5세아에 이어 '13년 3~4세 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최근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부는 유아단계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적용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유치원 교원 정원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37개월 유아 유치원 교육비지원 요청

질의

- 37개월 아이를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교육비 지원을 알아보니 2010년 9월생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리교육과정은 36개월부터라서 유치원에 다닐 수가 있는데 왜 유아교육비 지원은 안 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 상 그렇다고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면 지침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지원 지침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비를 못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꼭 개선해 주셔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10-17 13:2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거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 포함)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10. 9월생은 2013학년도 기준 유치원 입학대상 연령 및 무상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유치원비 인상 관련

질의

-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유치원비가 비싼 편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또 오르네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상한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나라에서 지원을 22만원이나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비용 다 빼고 교육비만 30만원을 냅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 재량으로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4-02-17 23:24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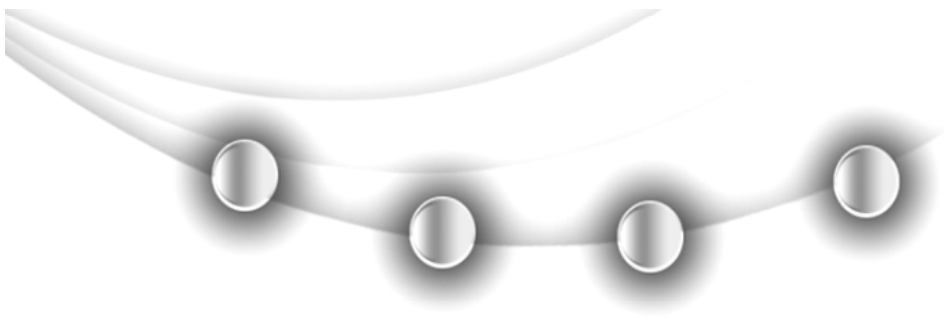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운영, 불법과다 인상 유치원 인하 조치 및 재정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Ⅱ. 특수 교육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특수학교 중등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질의

- 특수학교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준교사 자격을 가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우, 2012년에 준교사 연수를 마쳤고 2013년 2월에 특수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준교사에서 2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 목적이 관련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함이고 일정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이미 대학원에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을 마친 준교사에 한해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대체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8. 21.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기준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 2항 [별표2] ‘정교사(2급) 특수학교’ 내용 7번에 의하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2

일반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

질의

-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부 교과목과 단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 방법에 있어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경우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8. 20. [국립특수교육원]

- 일반학교의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적관리는 시·도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익히기' 교과서 관련

질의

-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 익히기' 교과서를 받고 싶습니다.
- 또한 시각장애학생들이 대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 3. 27. [국립특수교육원]

- '점자 익히기' 교과서는 매년 6~8월경 NEIS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대독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한국점자도서관(<http://infor.kbll.or.kr/>)
엘지상남도서관(<http://www.lg.or.kr/>), 소리책(<http://www.sori.or.kr>)

4 특수교육대상자의 타 시도 소재 유치원 배치 관련

질의

- 뇌병변 장애아동(5세) 엄마입니다. 특수아동 대상으로 선정이 교육을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받고 싶은데 통합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자리도 없고 일반 사립유치원은 저의 아이를 현실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지원센터에 몇 차례 문의를 했지만 우리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반 사립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보라고 했고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이 거절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받아주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신고 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 집 근처 근접한 곳을 찾다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산들 유치원을 알게 되어 찾아가 상담을 하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관내에 있는 통합 유치원보다 거리가 더 가깝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등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곳은 인천소속이라 하여 인천 서부 특수 지원센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을 하고 다시 평가를 받기로 했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서울 거주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고 특수지원센터 직원이 이야기 해주셨고, 직원 본인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는 해놓고, 이 정책이 현실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고, 교육받고자 하는 우리 아이는 지역이 다르다고 지원을 못해준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행정상의 문제가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은 타 지역도

지원을 해주는데 인천은 안 된다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반아동은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지원에 된다고 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원하는 곳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16 13:48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과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민원인께서 특수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불가피한 사유(배치할 관내 유치원 없음)로 타 시·도 소재 유치원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한 바, 우선 거주지 부근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검토, 노력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5

재활복지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관련 질의

질의

- 2013년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이수를 받았습니다. 본래는 치료교육교사 정교사 2급 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재활복지교사(중등 특수) 정교사 2급을 이수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임용고시를 지원할 때 특수교사분야로 지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재활복지 부분도 일반 특수(중등)으로 임용고시를 지원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2 19:15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문의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42(2007년 6월 15일 시행) '치료교사 제도 변경 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 조치 사항' 공지에 따라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과 복지)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특수학교(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특수학교(중등) 교원 임용시험(별도 과목 비지정 공고 시 가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

- 현재 언어발달 지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4세인데, 내년에 만 3세 반에 들어가요. 일반 어린이집에 등원 시 현재 국가에서 22만원 교육료 지원해 주는데, 장애아동일 경우 따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없는지요? 또한 유치원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지요? 동사무소와 보건복지 콜센터에도 문의하였으나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05 9:12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자녀가 만 3세로서 진단·평가 결과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특수교사 총원 요청

질의

- 저는 ○○대학교 부설유치원 사랑(특수)반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랑반 아이들이 특수교사 및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로 정말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알기로는 사랑(특수)반의 정원이 총 4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걸로 알았었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육부의 특수교육법에도 교사 1명에 아동 2명으로 되어있어 그렇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랑(특수)반의 정원이 6명으로 늘어나서 선생님 한 분이 3명의 아이들 지도한다고 하는군요. 아이들이 만3, 4, 5세로 나뉘게 되고 또 그 중 한 아이는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특수 교사 2명으로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지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또, 교육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발전을 한 아이들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2014년에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발전 하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기회마저 앗아 간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2014년에 들어

오는 모든 아이들과 같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사 선생님 한 분을 충원 해 주셔서 아이들 모두에게 조금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를 생각 해 주셔서 특수 교사 충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특수 교사의 충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0 21:27[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민원인께서는 ○○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13년도에 특수교사 2명이 장애유아 4명을 지도하였으나 ‘14년도에는 유아가 6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 1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4년도에 교사를 증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생의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취학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학의무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황 7살인 지적장애 1급 딸아이가 2013년부터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특수학급)에 재학 중 초등학교 입학 유예신청을 함 유예신청을 받아들여졌으나 다니던 병설유치원(특수학급)에 재배치되는 것은 안 되고 일반(사립)유치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일반유치원을 알아보면 절대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며 더욱 큰 문제는 일반 유치원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나 특수학급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무조건 일반(사립)유치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이 받아야 하는 특수교육환경에서 내모는 것입니다. 유예신청과 함께 현재 다니고 있는 일반학급+특수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병설유치원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9 15:37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제2항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법령에 준하여 유치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질병·발육 상태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고 다시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의무 교육과정을 중복지원 받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 유예 이후에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을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질문(전공과 설치 등)

질의

- 안녕하세요? 장특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을 보면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 학교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각급 학교라 함은 특수교육기관(법에서는 특수학교+특수학급)과 공민학교, 일반학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2. 27조를 보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각급학교의 장에 특수학교가 포함되는데 왜 법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의 장으로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 3. 순회교육을 보면 교육감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학급을 특수학급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러면 제2조에서 정의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의 조항과 맞지 않는데요.
- 4.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관련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일반학교의 교원은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시행령을 보면 특수교육교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법에서는 특수교육교원까지 포함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0 17:43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공과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설치 할 수 있다.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각급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 3. 순회교육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1항의 '특수학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제2호의 '일반학교의 교원'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교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치료지원 관련 질의

질의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28조 2항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오더가 없으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나 작업치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법 28조 2항의 내용을 들어 장애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사설 치료실,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실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면허를 걸고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특수교육법 28조 2의 내용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사가 단독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치료지원(예: 장애아동에게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지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07 13:45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교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이 이루어지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의사의 지도를 거쳐 치료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배치 변경 절차 관련 질의

질의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배치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정 지역교육청 소속의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서울에 있는 통합어린이집으로 기관을 옮길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교육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었고 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로 관리되어야 하는 아이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취소 절차를 굳이 밟지 않고 이사 가는

서울교육청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였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시설(통합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청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청별로 통일된 지침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장특법과 관련 교육부 지침 등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12 17:42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문제는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본 건에 관해서는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신지체' 장애명 통일 관련 건의

질의

- 복지부에서는 2008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정신지체 장애'의 용어를 '지적장애'로 개칭이 되었는데, 2014년 6월 현재까지도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2013.12.30) 15조에 '정신지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과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보호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관련 교육공무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하므로 일부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견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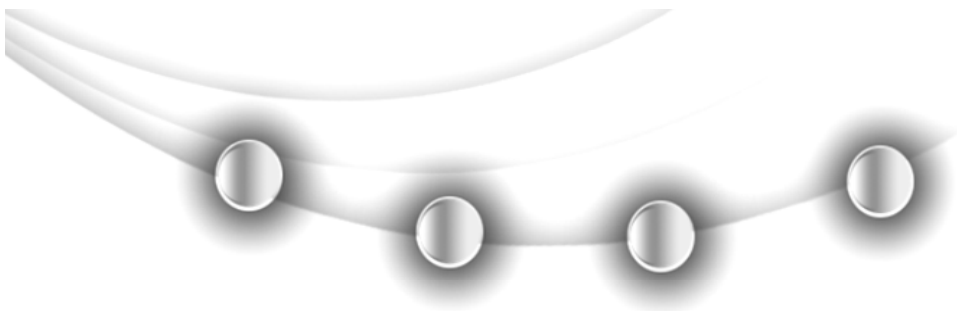
회신 회신일 : 2014-06-25 21:44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지적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정신지체'는 다른 차원에서 분류된 것으로, '지적장애'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정신지체'는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분류입니다.
- 따라서, '지적장애'와 '정신지체' 용어를 위의 두 법에서 반드시 통일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 용어(지적장애, 정신지체)의 통일에 관해서는 관련학회, 특수교육교원,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취학유예확인서 발급기관 확인 요청

질의

- 취학유예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초등학교도, 동 주민센터도 서로 발급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취학유예확인서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06 11:08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유예승인은 입학연기신청서를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승인 사실을 확인받는 별도 법정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주민 센터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 취학유예승인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자녀 유아학비 신청 등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입학 유예 사유

질의

- 1.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허가되지 않는 대안학교 입학이 포함 되는지요? (대안학교 입학이 유예 사유가 되는지 입학 예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 학부모 중 대안학교에 보내면서도 학교에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에서는 입학 기일이 지난 후에도 입학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동사무소에 미취학 아동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0 10:5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1.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질병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허가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입학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학교에서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취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2조에 의거해서 초·중등학교의 장은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읍면동장은 동법시행령 26조에 의해 취학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국학생의 학적처리(취학인지, 재취학인지)

질의

- 7살 때 부모님과 해외 출국하여 외국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으로, 올해(2014년) 초등학교 3학년(10살)에 다니고자 합니다.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적 없으므로 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자가 아니며, 외국학교는 한국국제학교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재취학인지? 취학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11 9:3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귀국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 등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결과 학생의 경우는 유예나, 면제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 받아서 국내 학교로 전학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초등학교의 취학 및 재취학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교육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중학교 의무교육 자퇴 관련 문의



질의

- 중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소 산만하고 개구쟁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 입장에서 사사건건 학교에서 우리 아이 잘못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같이 한 것도 유독 저희 아이만 걸려서 징계를 받고 선생님 눈에 띄고 해서 본인은 물론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 그래서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자퇴를 시키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매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조금만 늦게 와도 불안에 떨며 살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인 저나 할 짓이 아니지 않을까요?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도 학생 마음이 변해 다시 다니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08 17:1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먼저 의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14조(취학의무의 면제)에 의하면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의무교육 학생에게는 자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및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유예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 진급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평가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용어라 다소 어려우실 것 같아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부모의 신청으로 자녀를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학생이 질병이나, 발육 부진 등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또 다른 방법은 학생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을 유예 조치를 하게 됩니다(학교에서는 자퇴, 퇴학이란 말 대신에 유예, 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이러한 방법 이후에 1, 2년이 흘러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으면 학교에 가서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 적정학년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학생이 현재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불법체류자의 고등학교 전학가능 여부 확인

질의

-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 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원할 시 보통은 가능한 사항인데 만약 신청하는 신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그의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13 9:3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2에서 귀국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귀국학생의 경우에도 위 법령이 적용되어 해당 학교에 학칙에 따라 전학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기타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독일 고등학교 유학 후 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경우

질의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방법을 구하고자 문을 두드리니 바쁘신 중 빠른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구리시 도농동에 주소를 두고 직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회사원이고, 대상이 되는 학생인 제 자녀는 92년생 남자아이의 경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2008년 전남 광주에서 중학교 졸업 후 그 해 3월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현지 언어적응이 어려워 약 1년반 가량 어학학원에 다닌 후 정식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5월 졸업을 예정되어 있고 독일 대학시험인 아비투어에 응시 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이수과목 중 4개과목이 학점 미달되면 졸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아비투어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고사 성적이 마땅찮아 더 나은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3학년 과정을 한 번 더 다니게 했는데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독일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는 한 번 더 3학년 과정을 다니든지

하라는 권유를 하는데 아무래도 독일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만간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결국 국내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아들이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지요? 편입한다면 어느 고등학교로 몇 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도 아니어서 이런 경우 자율선택이 아들에게 있는지요?

- 만약, 편입한다면 대학수능시험에 재외국민 전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 독일 6년 생활로 의사소통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독일 관련 기업체 등에 지원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아들이 23살로 입영 문제와 이수과목 등으로 일단 제외하고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21 10:47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이 여러 과에 걸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아서 보내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9조에서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전, 편입학을 허용하고,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9조의2에서 귀국학생은 위의 경우를 생략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전, 편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국내학교 편입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마다 상이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부 대입제도와 입니다.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대학교 입학할 시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설립목적, 건학이념, 대학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학별로 다소 자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참고하시는 것도 세부 자격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참고로, 특별전형 지원자격과 관련한 공통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동 자료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한 정보 및 상담이 필요하실 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 Tel. 1600-1615)에서 상담 및 자료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에 관한 질의

질의

-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가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후 적성을 파악해보니 자연계 적성에 맞습니다. 하여 자연계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전입 규정 제1조(방침) 제1항의 규정에 전입학이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중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제 아이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계열을 달리 하여 자연계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한 학년을 낮추어 1학년 2학기로 전입하여 자연계열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싶습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 학교정책과와 유선상 위의 조항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으나, 해당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계시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22 18:39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전학은 같은 학년으로만 가능하며, 민원내용과 같이 학년을 낮추어 입학하려는 경우 재입학, 편입학을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입학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의 장,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교육부 학교폭력기록삭제 졸업생은 제외

질의

- 경위-고등학교 재학생은 반성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가능하고 졸업생은 교사들이 반성정도를 파악 할 수 없어 제외 한다-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교사들이 반성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교사가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교사가 삭제하고자 하는데 피해자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교사가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봉사태도가 불량해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즉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부모가 가해자의 깊은 반성을 느끼고 용서하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안 일어나는 것이 주요 평가이지요. 즉 교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 그런데 졸업생은 교사가 눈으로 볼 수 없어 제외라니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시작된 발상 인가요? 고3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학교폭력기록이 올라간 경우도 삭제가능한데 졸업생은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 단세포적인 조치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취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 대학입시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졸업생만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요? -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졸업생도 삭제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18 9:3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5년간 보관’에서 ‘2년간 보관’하도록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매뉴얼을 통해 일선학교에 안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조치사항 1,2,3,7호 조치의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학을 제외한 4,5,6,8호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심의(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졸업한 졸업생의 경우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학교에서 판단할 근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졸업 예정자 중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재발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졸업한 학생의 경우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9 학생부에서의 한 부모 및 재혼가정에 대한 문제정책

질의

- 저는 40대 후반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저의 자식이 첫돌이 지나지 않아 아이의 생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여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이가 학생회장의 출마를 생각할 만큼 누구 못지않게 씩씩하고 똑똑하게 온갖 사랑을 주면서 키워 왔습니다.

- 그런데 6학년 담임선생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아이 편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란은 생모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친족간의 혼인이나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증명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학적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생활이라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임선생님이 요구하다니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27 13:3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해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학생의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부모는 학생의 생부·생모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 다만, 다양화된 가정형태(재혼, 이혼, 조손가정 등)를 고려하여 친권자인 부모 중 한명의 동의를 받아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하였

으며,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이나 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가 아닌 모(부)를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 또는 모의 서식이나 절차 등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재취학 및 졸업 문제

질의

- 안녕하십니까? 미 인정 유학으로 인한 정원 외 관리학생 재 취학 및 졸업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학생은 2013년 5월자로 6학년에서 미 인정 유학으로 인하여 정원 외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2014년 1월 귀국하여 6학년으로 재취학 후, 졸업하여 중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재 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당 해년도 수업일수 2/3이상 출석이 되지 않아 졸업이 불가능 것인지 졸업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16 10:00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님께서 문의하신 미 인정 유학에 대한 학력인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업일수)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규정하여, 정원 외 관리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는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 취학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단,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 취학을 희망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진급 혹은 졸업을 할 수 없음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주셔야 합니다.

11 초등학생 유급 가능 여부



질의

- 외국에서 장기간 지내다 온 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낮아 유급을 하고 싶을 경우 유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1-20 9: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초등학생의 유급에 관한 것입니다. 유급이라 함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교육 기간에서는 유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생활기록부 지각처리 수정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현재 24살에 취업 준비생입니다. 이력서에 고등학교 출결사항을 기록하는데 2006년에만 질병지각 1번, 무단지각 1번, 무단결과 1번 이렇게 3개 있고 2007년 2008년에는 개근 이였습니다.
- 그런데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수업 1교시에는 지각한 적이 없고 0교시에 지각 한 것을 생활기록부에 지각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0교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지각처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면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06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차분하고 성실하나 의욕이 약하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윤보열 선생과 상담 한번 해본적도 없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수정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2 15:3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먼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별지 제8호(출결상황관리)에 의해 출결 및 지각, 조퇴, 결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말씀하신 1교시 시작시간이 지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정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13 일본에 재학중인 학생의 한국 전학에 대하여

질의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원고등학교 교사 ○○○입니다. 금강학교는 한국정부에서 인가한 재외한국 학교임과 동시에 일본 정부에서 인가한 학교로 현재 일본 정부의 교육 과정과 일정에 의해 한국정부의 교육과정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2일 현재 금강학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국으로 전학을 갈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교육과정은 3월까지 학기가 진행되고, 이 학기 운영에 따로 본교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가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즉, 학생이 한국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도, 1학년 1학기의 성적은 현재 중간고사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1. 한국으로 전학하여 진급이 가능한지.
2. 전학할 경우 학생의 성적은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는지.
3. 학생의 학교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4.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학 가는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성적은 어떻게 입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II.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III

-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재외 한국 학교는 30곳이 있습니다. 이중 25개 학교는 현재 NEIS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비슷한 양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그러나, 남미의 2개교, 일본의 3개교는 현재 교육과정에 의하여 현지어(일본어)로 생활기록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이수단위 인정으로 졸업 단위수가 달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대입에서도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7 13:2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한국 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전학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세부적인 지침이나 절차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만,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면, 고등학교의 전학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1항'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의 전학은 국내학교에서의 전학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학절차를 거친 후 진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따라서 먼저 전학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예비중학생 재배정관계



질의

-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통영에 살고 있는 예비중학생 엄마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체육 특기자 심사가 있었는데 저의 실수로 서류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는 동원중학교 일반 학교인데 아이가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통영중학교입니다. 통영의 교육청에서는 통영에서 통영으로 전학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아이가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교육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해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이가 타 지역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서 훈련을 하다가 적응을 못해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8 10:07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중학생의 동일 학구내 전학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중학생의 전학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생리 공결제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제가 친한 여자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생리 공결제를 꼭 생리 때문이 아닌 무단결석으로 처리 되어 할 상황에서 생리 공결제를 이용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적어도 생리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다음날 생리 때문이 맞는지 소변검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여자애가 생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 달에 주기가 비슷할 때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가요? 실제로 많은 학교들은 전화로 생리 때문에 학교 못 간다고 하면 공결 처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허술한 생리 공결제 하루빨리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07 11:2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여학생의 생리 공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학생의 생리 공결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보건 휴가 및 학교생활

기록 및 관리지침 별지8호에 의해 출석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 인정유학 범위 확대관련



질의

- 인정유학 범위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부모 모두 출국할 경우 인정에서 부 또는 모 중 1인과 출국할 경우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유학인정의 범위가 "부친,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 단, 부친,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유학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로 제한하고"와 관련하여 저 같은 경우 공무원이고 필리핀 국제학교(교육부 인가학교) 면접 후 합격하여 2년간 계약하여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휴직을 내고 해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 아내는 공무원으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 따라올 수 있는 형편이라 자녀만 동반하여 출국할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정유학"인지 궁금합니다. 붙임 1.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
2. 201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선(안)

회신 회신일 : 2014-02-06 17:5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인정유학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안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공무상 파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무상 해외 취업으로 볼 수 있어 인정 유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 등곳길 불의의 교통사고 학생에게 치명적 불이익 주는 현 교육훈령개정

질의

-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훈령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오. 학교교육정책과 담당자님 심층 검토 바랍니다. 실무적 검토 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장관님께서 아시도록 보고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21 17: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현재 학생의 결석처리와 시험 결시에 따른 시험성적 처리 등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학칙이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등굣길 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의 경우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일괄적으로 특정유형의 결석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결석 유형에 대한 판단과 시험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에서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학문의



질의

-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9조를 요약해 보자면 고등학교 전학을 시키려면 첫째, 주소지가 타 시도나 학교 군을 달리해서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 전학이 가능하고 둘째, 여기서 말한 거주지라는 것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함께 거주지가 이전이 되어야만 고등학교 전학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사례를 통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 A는 부모님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후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후견인과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령대로라면 고등학교 전학이 되지 않는데 정말 전학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명의 공문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11 20:1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보호자 및 후견인이 불분명할 때 학생의 전학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을 보면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의 거주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교육감이 결정하는 사안임으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 졸업장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다가 2학기 11월 중순쯤에 부득이하게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외국에 있는 현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4-02-18 11:52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초등학교 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졸업이라 함은 학생이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친 것으로서 현재 민원인의

자녀분의 경우 과정을 모두 마친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함은 인정 혹은 미인정 유학의 과정에 있을 것이며, 인정유학이면 면제 혹은 전학 처리가 되었을 것이며, 미인정 유학의 경우 유예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졸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장 발급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

초등학교 전입생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전입을 올 경우 처리 방법

질의

- 중국 칭다오 청운 한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학교에 전입 오려는 학생인데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다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전입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학교는 소속 교육청이 없어서 이렇게 이곳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20 14:5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재외 한국학교로의 전입학이 가능하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의 하신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한국학교로의 전입학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학생의 현재 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상황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선전화로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학교 졸업 학력 취소

질의

- 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졸업 학력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수업일수, 출석 일수가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졸업 학력을 취소하고 싶을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24 11:0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자격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갖춘 자격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2 외국인 아동의 개명예정 한국이름 나이스시스템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학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신입생 중 외국인아동이 입학 하었는데, 이 아동의 경우, 현재 국적이

필리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 또한 필리핀 이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아동의 이름을 개명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나이스 시스템에 개명예정인 한국이름으로 입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 개명완료시기는 앞으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부모님의 희망 의사만으로 서류상 확인이 안 되는 개명예정인 한국이름으로 나이스 입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3-18 15:48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아직 개명 되지 않은 학생의 학생부의 인적사항을 정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해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규정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의 정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같은 법령 제19조(자료의 정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의 경우 아직 완전히 개명하여 증빙서류가 발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명 예정이라는 부모님의 말씀만으로는 정정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3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질문



질의

□ 부모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아이가 있습니다. 개학 전 1월에 출발해서 6월 정도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중순에 오게 되면 출석일수 미달이 되는데요.

1. 무단결로 처리 하는 게 맞을까요?
2. 아니면 인정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4-03-25 10:29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학생 혼자 이루어진 유학에 대한 학력 인정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모(일부 공무원 파견 등 예외적으로 부나 모 중 한 분일 때도 가능)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 6개월 이상을 정규학교에서 이수해야 학력이 인정 되는 등'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하면, 해당학생의 경우 인정 유학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학력이 인정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4 아들 유학관련 문의



질의

-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금년 9월 미국에 보스턴에 있는 사립중학교(BTA)에 1년 유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학생 학기 체제가 다르기에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7학년 즉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 1학년을 마칩니다. 7월에 국내로 들어오면 중학교 1학기 과정이 끝날 시기인데 바로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6개월을 휴학하여 그 다음 해에 2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31 10:1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유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학교에 대해서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인정 유학의 경우면, 당해 국가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미인정 유학의 경우 당해 국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인정유학의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하나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5 무단결석 정의



질의

-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생(제 아이)은 수원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예술대학을 가고 싶어 1학년 말부터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 실기가 얼마 남지 않아, 남은 고등학교 기간 동안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음악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교시만 하고 나머지는 음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고등학교에서는 학교수업에 빠지면 무조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합니다.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교에서 정해진 징계를 받아야하고요. 무단결석이 아닌 일반결석으로 처리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교육법내지 시행령, 교육부 고시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무단결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또 어디에 그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18 10:1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무단결석에 대한 사례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석이라 함은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석의 종류에는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으로 나뉘고 그 종류는 사례에 따라 학칙에 따른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전 4교시 수업을 받고 이후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은 결석이 아닌 조퇴로 처리해야 함이 바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26 초등학교 전학 문의



질의

- 미국에서 한국으로 초등학교 전학 시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시험을 봐서 학년을 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빠는 직장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고, 엄마와 아이들은 미국에서 5년째 살다가 이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초등학교 입학했었고요. 엄마는 영주권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9 21:09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외국에서 복귀했을 때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사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일단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전학이 아니며,

입학, 재입학, 혹은 편입학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 인정 유학(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 외국에서의 학력을 모두 인정을 받게 되지만 미인정 유학의 경우 귀국 후 해당학교에서 치루는 학년결정 이수 인정평가를 치러 수학 능력에 따라 학년을 배정 받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학교 혹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7 생활기록부 외부활동 기재

질의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2014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살펴봤는데 외부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대신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및 직속기관이 주관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받고 활동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도 생활기록부에 외부활동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에 기재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4-07-01 10:4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보내주신 민원은 외부에서의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 주관하여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하거나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 기관 체험활동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교육관련 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8

2015학년도 외교 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 개선방안

질의

-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4. 1.8 발표된 2015학년도 외교 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 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청심국제중학교 1학년 학부모 일동(78명)은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이 개선안의 추진배경과 아울러 질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의견을 같이 한 청심국제중학교 학부모 서명부를 첨부합니다. 원거리 지역 등의 문제로 추가 제출된 서명부는 추후 첨부가 가능하며 그로 인해 1학년 학부모 총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

회신일 : 2014-02-27 19:2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2011학년도부터 외교, 국제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영어내신 성적과 면접을 주요 전형 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외교, 국제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절감하는 한편, 학업 성적 뿐 아니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4학년도까지 외교, 국제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1단계에서 중학교 2~3학년(4학기)의 영어내신성적을 상대평가인 석차9등급제의 형태로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방식이 성취평가제(A~E등급)로 전환됨에 따라 2015학년도 외교, 국제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의 1단계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기존의 석차 9등급제로 유지할 것인지,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성취평가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성적을 모두 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의 2학년 영어내신성적을 표집 분석한 결과, 중학교마다 한 학년의 A등급 비율이 최소 0%에서 90% 이상까지 다양하며,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높아 A등급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중학교가 국제중 이외에도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성적을 모두 성취평가제로 반영하면 중학교 2~3학년 성적 모두 A등급을 받은 동점자가 입학정원의 10~20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실적으로 십수 배에 달하는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2차 전형을 실시하기에는

인적, 물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천, 서류평가 등 동점자를 선별하는 장치가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천으로 동점자를 선별한다면 외고, 국제고 입학이 실력이 아닌 운에 좌우되고, 서류평가로 동점자를 선별한다면 허위로 작성하거나 표절, 대필한 서류를 선별하지 못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부는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육 전문가, 외고, 국제고, 국제중 교원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17학년도까지 중학교 2학년 영어내신성적을 성취평가제로, 중학교 3학년 영어내신성적을 석차9등급제로 반영하는 절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형방식은 외고, 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의 내신 성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입학전형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18학년도 이후 중학교 2, 3학년 영어 내신 성적을 모두 성취평가제로 반영할지 여부는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 마련 등 성취평가제 제도가 학교현장에 정착되는 정도를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을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지역과 학교마다 입학전형이 다양하게 되므로 외고, 국제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이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부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외교, 국제고 입학전형의 주요내용을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제중 비교내신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국제중에 입학할 당시 폐지에 관한 방침은 이미 고지가 되었습니다. 국제중 비교내신제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 일반중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선의의 정책목적을 가지고 절차적 타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갖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는 이러한 한계에서도 교육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외국어와 국제 분야에 소질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공정한 입학전형 절차를 통하여 외교, 국제고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고등학교 입학문의

질의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전남외고가 있으나 일본어과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외교 중 일본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의 모집요강을 살펴보니 그 지역 소재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을 하였던군요.

- 각 학교에 알아보니 전남에는 일본어과가 없더라도 엄연히 외국이 있는 지역이므로 응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며, 입학할 원하면 해당 지역으로 전학을 하라 합니다. 중학교 과정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온 가족이 여수에 거주하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을 요구하는 건 저의 뜻을 접으라는 내용으로 받아드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4-03-14 17:4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지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는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전남 지역의 외국만 응시가 가능하며, 전남지역에 외국이 없을 경우(학과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만 다른 지역의 외국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

- 자녀가 2010년 2월1일 출국해서 미국에서 2월10일부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2014년 3월 귀국예정입니다. 귀국서류를 준비하던 중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등록하고 서류를 점검하던 중 교육부에서는 해외체류기간기준을 재외국민등록일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등록일은 신청일을 말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을 거론하며 교육부에서는 서류미비라고 합니다.

- 재외 등록법을 어긴 불이익이라면 미리 이 법이 강제성이 있다고 공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류기간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입국일자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부모의 회사에서 정당하게 파견업무를 나와서 어렵게 외국학교 적응하고 귀국하는 우리아이가 왜 불법 특례자들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4-02-06 17:5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2014-05-30 [특례입학 변경사항 공문 시행]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시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내에서 거주하실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특례요건 충족후 부모 조기 귀국시 특례자격 상실

질의

- 부모의 해외 지사 근무로 전 가족이 해외에서 3년간 거주하고 6학년

에 재학 중이던 학생을 해외에 두고 귀국하였습니다. 학생은 8학년을 마치고 귀국을 하여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례입학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한 특례자격에 대해 각 기관이나 학교의 답변이 다릅니다. 특례자격을 모두 갖춘 후 부모들은 귀국하고 학생만 남아 더 공부하다가 귀국한 경우 특례자격이 상실되는지, 학생을 귀국시키지 않고 이대로 학생을 계속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2학년에 귀국시키면 대학교 특례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4-05-08 14:1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교육부 학교정책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는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으로 특례입학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2년 이상 재학,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모두 만족한 후 부모가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학교로 편입하여 졸업한다면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2 특례입학



질의

- 저의 자녀가 현재 한국 나이로 중1입니다. 초3부터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번 12월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면 주소지 중학교로 다닐 수 있는지 아님 초등 검정고시 봐야하는 지 궁금하며, 한 가지 더 고교 입학 시 영어 특기로 입학할 수 있는 고교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시도별 학교특례입학 제도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2 18:20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먼저, 귀하의 자녀께서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마쳤다면 거주지의 중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특례입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능합니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2)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부모 중 한명만 같이 거주하였다면 대상 아님) (3) 국내의 중학교에 편입한 학생 (중학교에 신입학 학생은 대상 아님)
- 기타 고등학교 특례입학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마다 교육감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하고자 하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 무상교육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 시행인데, 공립학교 기준에서만 무상

교육 시행인건지요?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국제중학교의 경우는 무상교육 지원은 안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1-24 17: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4항에 의해 국·공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분류를 동법 제3조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립 및 위탁을 받은 사립의 경우만 무상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사립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4

특목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다자녀가구)정책의 문제점

질의

- 교육부에서는 왜 국가 시책과 역행하는 입시전형을 시행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고를 지원하려고하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데 소득이 조금 많고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자녀가구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자녀가구에 해당 안 된다고 하고 또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 그럼 애초에 출산장려정책을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펼칠 일이지 맞벌이해서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려고 하는 게 무슨 죄지은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08 11:09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당초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도입취지는 학비가 없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 추진된 전형이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다자녀가구학생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정책을 수립한 것 자체가 출산장려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기준적용은 부유층자녀 입학문제 등 제도를 악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특목고에 입학하는 방법은 사회통합전형 외에 일반전형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며, 입학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35

영훈국제중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호소문

질의

- 안녕하세요? 2013년 ○○국제중학교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새롭게 입학절차를 정비 하였고 진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제시 하였습니다. 2014년, 저희 아이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사배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지원서를 냈고 새봄과 함께 우리아이는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부모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교육 없이 참교육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 그러나, 3월은 교육지원심사 기간이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비를 교육부가 아닌 학교에서 100% 지원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한 학년에 30명이 되는 사배자 학생의 입학금, 교육비, 급식비, 수련회비, 방과후 수업비 등, 제반 경비를 전부 학교에서 부담한다면, 이는 학교재정의 악화로 참교육의 방향이 어쩔 수 없이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모든 수업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사배자 학생들이 피해를 준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부디 귀속학교로 인식되어있는 학교에서 경제적형편이 어려워도 교육부에서 복지혜택을 도움 받아 끼를 살리는 참교육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대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하시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31 14:3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국제중학교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의 교육비 지원 수급 여부와 지원규모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중학교가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무상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업료가 자율화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 현재 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어제 진보진영 ○○○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분의 제1공약은 자사고 폐지를 통한 일반 고등학교의 정상화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정권을 잡는 분들의 색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합니다. 정말 일반고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도 다 폐지해야 합니다.
-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잘 보내는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쪽방 같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지 모르시는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조달하기 위해 월수입의 상당부분이 지출이 되면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도요? 물론,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현실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특목고 입에서 고배의 쓴잔을 마시고 현재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 자사고는 정부정책에 의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정책에 힘없이 따른 우리 학부모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불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자사고 폐지를 막아주세요. 만약, 자사고 폐지를 해야 한다면 외고와 같은 특목고도 다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고교평준화만이 일반고를 살릴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어떠한 대책도 일반고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안전에 이어 자사고 폐지 교육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불안한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9 21:2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자사고는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미흡'하여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동의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사항은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37 사립학교 학교회계의 구분

질의

- 질의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서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록금과 비등록금은 무엇인지?
- 질의2.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구체적 구분
- 질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세입의 각호 수입 중 등록금수입과 비등록금 수입 구분
- 질의4.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학교가 기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

하여야 한다'에서 별도 계좌 관리의 구체적 방법?

- 질의5.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8의2에서 기부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발전기금)에서 말하는 기부금인지,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부금인지?

회신

회신일 : 2014-02-21 18:49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열거된 교비회계 세입 중 등록금회계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이고, 제2호 내지 제9호는 비등록금회계에 해당됨.
- 이외에 초중등학교에서 시도별 학교회계 관리지침 등에 따른 등록금 수입은 학교운영지원비이고, 비등록금 회계 수입은 방과후학교 운영비, 급식비, 앨범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해당됨.
- 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수업료 기타 납부금계좌, 수익자 부담경비계좌, 학교발전기금계좌 등 계좌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되,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된 학교발전기금에서 말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38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

질의

-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사립학교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01 18:16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공공기관의 광의의 개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의 개념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따라서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는 사인의 사적 재산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인 법인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사적자치를 보장받아

자율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초중학교)는 국가로부터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그 교육활동은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임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는 민간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 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이들 사립학교는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제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제43조 제1항) 등을 감안하면, 사립학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39

개인이 특수학교 설립 가능 여부



질의

- 개인이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4-23 10:57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며,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학교의 경우 사인인 개인이 설립 가능합니다.

40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교재등 자료 찾기 안내

질의

- ○○초교사입니다. 다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KSL교육과정, 다국어로 번역된 교과서 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23 20:12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한국어 교육과정(KSL)은 2012.7월에 고시되었으며, 예비학교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정(KSL) 관련 및 다문화 교육 관련 자료는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1 다문화 교육 폐지 요청

질의

- 다문화와 관련한 각종 범죄, 민족갈등, 자국민차별 등 부작용이 있는 바 다문화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는 다문화를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도

외국인범죄, 위장결혼 급증으로 인한 피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복지, 교육 등)로 인하여 자국민역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다문화를 미화하여 교육시키고 일방적으로 다문화를 주입시켜 현실을 가리고 있음. 다문화 교육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그 현상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함.

회신 회신일 : 2014-07-01 23:49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지원과 아울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 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 외국인 주민이 150만 넘게 우리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문화 인식 제고를 통한 글로벌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KSL이에 발생하는 국내인과 역차별 문제에 대하여 관련 정책 추진시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검정고시 합격 후 과목 재응시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검정고시 합격 후 과목 재 응시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7-01 23:49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현행 법령 상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과목 재 응시 제한 규정은 없음. 즉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응시생이 원할 경우 검정고시 해당 과목 재 응시는 가능함.

43 정규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및 검정고시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졸업학력과 성적 대체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7-01 23:49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검정고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 보완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44 공교육을 따라가려면 사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

질의

- 영어 공교육을 따라가려면 사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중심 학습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 터 주당 2시간씩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동안 영어 학습을 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기본어휘목록,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등)과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기준,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기본 어휘목록 등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학습 자료의 난이도와 관련하여서는 제시하신 듣기 자료는 음성언어로서 초등학교 3학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 영어는 음성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또한 음성언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의 참고자료로 학생들에게 학습지가 제시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참고로 우리 부는 영어의 노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정규 영어시간 이외에 방과 후 학교, EBS 영어교육방송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는 공통 교육과정으로써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평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 각 교과별 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아울러 우리 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 법이 제정되면 학교의 선행교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여 학교현장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도의 적용기준 문의]

1. 사례 : 쪽집게 강사로 소문난 乙(영어)은 개인과외교습자 甲(A 아파트, 영어)과 丁(B 아파트, 영어)의 제의에 따라, 학생들 수강료에서 매월 일정금액(○○○만원)을 그 교습행위의 대가로 받기로 하고, 월·수·금요일에는 A 아파트에서, 화·목·토요일에는 B 아파트에서 학생 1인당 월 수강료 120만원·팀당정원 3명인 고등부 3학년 학생들 3팀을 대상으로 1년째 과외교습을 해오고 있다. 한편 민원인 丙은 상기 A 아파트에서 甲·乙의 과외교습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도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증거를 갖추어 관할교육청에 불법사교육 신고를 했으며, 이 신고에 따라 관할교육청이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甲은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되어 있으나, 乙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2. 문의사항

- (1) 乙 도 개별적으로 개인과외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상기 사례에서 2명의 교습자중 甲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습자 乙의 개인과외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즉, ① 교습자 乙이 자신의 주민등록지상에 개인과외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② 만약 乙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채로 상기와 같은 과외교습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학원법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2) 甲·乙·丙에 대한 관할교육청이 행한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

상기 사례에서 민원인 丙의 신고에 따라 위법사항을 적발한 관할교육청은 교습자 甲에게는 학원법 17조 3항 2호를 구체화한 시도조례규칙 [별표] 와 [별지서식]상에 명시된 강사채용을 이유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명하고, 강사 乙에겐 개인과외 신고의무 (학원법 14조의2①항) 위반을 이유로 학원법 22조 1항 4호에 근거하여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는바, 이후 그로부터 3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관할교육청에 강사 乙에게 학원법 22조1항4호 위반을 이유로 한 벌금형의 약식판결이 확정 되었다는 결정문이 통지 송달되고, 이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학원법 시행규칙 17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강사 乙이 교습행위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던 일정금액 (○○○ 만원) 金員의 50 % 를 포상금액으로 심의·결정한 후, 그 금액을 신고인 丙에게 미신고개인과외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 완료한 일련의 實際 사례에서,

① 신고 된 개인과외교습자 甲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乙을 채용하여 과외교습을 하다가 민원인 丙의 불법사교육 신고 포상제에 따른 신고에 의해 관할교육청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했을 때, 甲에게는 부정교습에 의한 교습중지 1년 (17조3항2호)· 乙에게는 개인과외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 (22조1항4호)·丙에게는 기소유예이상의 처분

확정 후 乙만의 불법 교습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포상금지급 (17조1항2호)이라는 각각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행 학원 법과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제도에 비추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요?

- ② 만약 ① 과 같이 처분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면 그 근거는 학원법 몇 조 몇 항에 명시적으로 법정되어 있는지요?
- ③ 또한 ① 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관할교육청이 甲·乙·丙 각각에게 어떻게 행정처분 해야지만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 되는지요?
- (3) 가족관계와 신고포상기준 상기 甲·乙의 관계가 부부·형제·자매·친척 등의 가족관계일 경우에, 사례와 같이
 - ① 교습자별로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신고를 해야 불법이 아닌지요?
 - ② 또한 그 신고포상여부도 남편·아내·형·동생·언니·여동생·삼촌·조카 등으로 개별적·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하는지요?

3. 관할교육청에 의한 상기 행정처분의 근거

- 1) 乙은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 학원법은
 - ① 주택에서 ② 교습의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③ 과외교습행위에 의해 개인과외신고의무 (14조의2①항) 및 그 위반여부 (22조1항4호)를 판단·결정하고 있으며, 교습자들 간의 상호관계나 그 내부형태 (예 : 고용·동업·파트·전임 등)등에 의해 그 개인과외 신고의무나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 2) 乙이 받는 교습의 대가는 교습비에 해당한다는 점
 - (1) 교습비의 항목·명칭 학원법 2조6호의 교습비등을 수식화 해 보면, 교습비등 = ① 교습비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 +

② 기타경비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가 되는데, 여기서 학원법은 ② 기타경비와는 달리 ① 교습비의 명칭과 항목을 특정·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사교육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명칭·항목 등의 추가·변경 등에 의한 교습비의 편법적·탈법적 부과징수로부터 보다 포괄적·탄력적으로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바, 따라서 교습자가 어떤 명목으로든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공한 교습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교습비에 해당되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의 신고의무가 있게 된다.

(2) 교습비 전달경로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낸 돈이 교습자에게 흘러 들어가면 되고, 학습자가 교습자에게 「직접」 납부한 것만을 교습비라고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① 그 실질이 교습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물리적·외형적 전달방식이나 수령방식에 의해 공법인 학원법상의 개인과의성립여부나 개인과의 신고의무의 준부가 가변적으로 좌우되는 것을 예방하고 ② 교습주체와 교습비 수납주체를 분리하여 개인과의성립을 회피하거나 ③ 교습비만을 전문으로 수납하는 편법적 유령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습비를 징수함으로써 개인과의 신고의무를 면탈하거나 미신고·수강료초과징수 등의 불법을 일삼더라도 관할교육청에서 전혀 제재나 단속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 있다.

(3) 요컨대,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교습의 대가가 교습비이고, 사례의 乙이 받는 金員 또한 이에 해당하므로, 乙에게는 개인과의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22조 1항 4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됨.

- 3) 甲은 무등록학원을 설립·운영한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
- (1) 범죄구성요건 흠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형벌규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甲에게는 학원법 2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무등록학원을 설립·운영한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 즉, 학원법 6조의 학원등록의무는 ① 건축대장상에 학원 용도로 기재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학원법 시행규칙 3조3항1호, 서울고법 2002누15916)에서 ② 동시간대 10人 이상의 학생들에게 ③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상기 ①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교육연구시설이 학원으로 성립 (설립)되고, 이때부터는 학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야할 기속적의무가 생기게 되며 (6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등록학원 (22조1항 1호)의 운영의 범죄가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교습자 甲은 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② 동시간대 3人 이하의 고등부 학생들에게 ③ 개인과의교습을 했을 뿐, 학원 (제2종 근생·교육연구시설)을 설립·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학원법 6조의 학원등록의무가 없고, 따라서 관할교육청에 학원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학원등록 의무를 위반한 범죄 (22조1항1호, 무등록학원)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 [헌법 13조1항 전단, 형법 1조1항] 는 점.
- (2) 강사채용과 학원성립 강사채용이 학원에서 볼 수 있는 고용형태이긴 하지만, 학원성립의 구성요건 (2조1호 = 학생 10人 이상 +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 제2종 근생 등의 시설)은 아니므로 강사채용이 있다고 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학원으로 등록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3) 공동주택의 무등록학원 해당여부 학원법 (2조1호) 은 학원을 최종적으로 「학원이란~교습형태를 말한다」고 하지 않고, 「학원이란 ~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시설은 학원법이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해 제2종 근생·교육연구시설(학원용)이므로, 학원에 해당하기 위해선 최소한 어떤 시설물이 조건부등록일로부터 1년내 (7조) 또는 정식등록 (6조) 전까지는 제2종 근생이나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학원법이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에 의해 주택이외의 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법 42 조 ②항 1호·98조 6호 및 동법시행령 47 조 ①항 별표 3 / 집합건물법 5조 ②항), 아파트에선 「학원형태」의 운영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에서 요구하는 무등록 「학원」이 성립될 수 는 없고, 따라서 甲은 A 아파트를 무등록주택·무등록시설물·무등록건축물 등으로 운영한 사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등록학원으로 운영한 범죄 사실은 없으며, 또한 학원등록이란 일단 학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춘 시설물에 대하여 관할교육청이 학원에 해당됨을 공권적으로 확인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해주는 절차를 말하므로, 무등록학원 운영이라는 범죄 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선 관할교육청에 의한 확인·등재절차는 아직 없지만 (무등록이지만), 실제로 학원구성요건을 갖추거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물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학원으로서의 설립이나 용도변경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무등록학원 운영이라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 4) 교육청공무원의 범죄성립여부 고려 (1) 직무기죄 (형법 122조) · 불법행위 (국가공무원법 56·59·78 조) 만약 乙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학원법 (14조의2①항) 위반이 아니라고 하거나, 학원법 위반의 불법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22조1항4호) 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의무규정 (234조②항) 에 위반되어 형법상의 심각한 직무유기죄 (122조) 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상 (56·59·78 조)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처분을 한 관할행정청은 유추해석을 배제하고, 최대한 학원법의 문리·논리해석에 충실하게 학원법을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법상 무고죄 (156 조)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경찰·검찰청) 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데, 여기의 허위사실의 신고란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바 (대법원 2011도 11500 / 2008도8573), ① 학원법 어디에도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 채용시 무등록학원으로 보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② 甲의 강사채용행위는 학원법 17조 3항 2호와 대부분의 시도조례에 의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부정교습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③ 학원법 2조 1호에 근거해 교습 장소로서의 공동주택이 무등록학원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학원법 전문가로서 교육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미필적을 넘어 확정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행정처분대상에 불과한 개인을 무등록학원 운영이라는 허위사실에 의해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부당하게 침해 하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타 형벌보다 무겁게 처벌받게 되므로, 관할교육청 담당자들은 이러한 형사법적 정황들도 고려하여 처분을 내렸다고 사료됩니다.

5) 고용관계와 유죄판결

- (1) 내용 주거지가 같은 2인 이상의 교습자가 한 장소에서 과외교습 행위를 하고 그 장소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일 때, 개인과외는 자연인 1인의 교습행위별로 성립하므로, 그 관계가 고용인지·동업인지를 불문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과외교육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각각의 교습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교육청에 가서 개인과외신고를 필해야 하며, 이 신고의무 위반시 학원법 22조 1항 4호 위반의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함을 판결함. 즉,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채용의 경우 채용된 강사의 경우도 개인과외 신고의무가 있음을 선고. ① 서울중앙지법 [2012 형제 25366 (2012. 4. 12)] : 고용관계인 이○희 에게 학원법 22조 1항4호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50만원의 구약식에 의해 그 벌금형의 확정을 선고함. ② 서울중앙지검 [2012 형제 108392 (2012. 12. 11)] : 고용관계인 한○희는 학원법 22조 1항 4호를 위반하는 범죄사실에 의해 유죄에 해당됨이 인정되나, 범행후의 정황·불법교습규모 등을 참작해 볼 때 그 기소만은 이를 유예하기로 한다. ③ 서울남부지법 [2012 고약 768 (2012. 2. 6)] : 고용관계인 신○진 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④ 서울남부지법 [2012 형제 25165

(2012. 6. 8)] : 고용관계인 오○훈 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의 미신고 개인과의 교습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50만원의 구약식에 의해 벌금형의 확정을 선고함. ⑤ 인천지법 [2012 고약 10883 (2012. 5. 16)] : 고용관계인 김○준, 김○립 각각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의 미신고 개인과의 교습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 ⑥ 인천지법 [2013 고약 30039 (2012. 12. 27)] : 동업관계인 최○묵, 전○만 각각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의 미신고 개인과의 교습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⑦ 인천지법 [2013 고약 738 (2013. 5. 27)] : 부부인 김○진, 김○애 각각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 위반의 미신고 개인과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각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함. ⑧ 인천지검 [2013 형제 48362 (2013. 7. 9)] : 고용·동업관계인 황보○분, 장○준, 박○영 각각은 학원법 22조 1항 4호를 위반하는 범죄사실에 의해 유죄에 해당됨이 인정되나, 그 불법의 기간과 규모를 참작해 볼 때 그 기소처분만은 이를 유예하기로 한다. ⑨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 고약 836 (2012. 9. 26)] : 고용·동업관계인 채○현, 이○재, 이○재 각각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 위반의 미신고 개인과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각 5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⑩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 고약 647 (2012. 10. 5)] : 고용관계인 신○정, 박○정, 박○미 각각에게 학원법 22조 1항 4호 위반의 미신고개인과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⑪ 수원지검 [2012 형제 61677 (2012. 10. 11)] : 고용관계인 정○호, 장○진 각각은 학원법 22조 1항 4호를 위반하는 범죄사실에 의해 그 죄가

인정되나, 그 범죄사실에 유책성이 없고 법준수의 의사를 참작해 볼 때 그 기소처분만은 이를 유예하기로 한다. ⑫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 고약 573 (2013. 8. 5)] : 고용관계인 공○현 학원법 22조1항4호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약식된 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

(2) 상기 유죄판결들의 논거

(가) 주택·교습비 요건 (학원법 제2조 3호 및 6호) 학원법 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과외교습은 개인과외에 해당되고, 개인과외 성립요건으로서의 교습비등 [= 교습비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 + 기타경비 (재료비외 5 종)]의 수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원법에 학습자가 「직접」 제공하고, 교습자가 「직접」 받은 것만을 교습비 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학습자가 교습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교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교습비등 [= 교습비 (교습료 등) + 기타경비]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교습료 「등」 이라고 포괄적·탄력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명칭·명목으로 부과되는 교습비의 탈법적·편법적 징수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고용·동업강사가 받는 강의비·사례비·실비·급여·수고비·지분금·수수료 등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 金員의 실질이 학습자를 교습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교습비, 구체적으로 교습료 등의 「등」에 해당된다.

(나) 대법원 판례 [2006도5130] 건축법이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개별법에 따른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용도구분은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즉, 주거시설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의 구분·분류는 학원법이 준용하는 건축법에 위반해선 안되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고용강사의 교습행위도 개인과외에 해당된다.

- (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2002누15916)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법이 규율하고 있으나 건축법상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바, 학원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3항은 학원등록신청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설립되고 등록하기 위해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거나 이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하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학원 (등록·무등록) 이 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운영이 무등록학원 운영에 해당될 수도 없다.

- (3) 상기 유죄판결들의 의미 행정기관인 검찰의 가변적인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기판력과 확정력으로 인해 다른 법원· 행정기관들이 동종·유사 사건들에 대해 그 판결과 위반·모순되게 판결·집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326조1호, 헌법 13조 ①항 후단)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과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강사고용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고용된 강사도 당연히 개인과외 신고의무가 있다 사료됨. 2. 관련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제 326조 1호· 제

457 조 형사확정판결은 그 기판력으로 인해 동종·유사 사건에 관한 한 다른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약식 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형사소송법 제 234조 1항·2항 및 제 249조 1항 5호 검찰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무혐의 처분에는 확정력·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나 고발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약 관할교육청이 개인과외신고의무 위반으로 고용강사를 형사고발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가정할 때, 그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확정력이 없고 또한 학원법상 불법교습은 형법상 교습행위마다 범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범죄이므로 일반국민은 언제든지 신고·고발을 통해 불법을 시정할 수 있다.
- (3) 상기 (2) 관련 대법원 판례 형사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과는 달리,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행정처분에 불과하므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확정적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며, 또한 기판력도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해 사실상 법규로서의 구속력도 없다. 대법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97다50855]고 판시함으로써 검찰처분은 법원판결에 우선 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다.

□ [질의사항] 사례와 관련해서 다음의 문의사항에 대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乙 도 개별적으로 개인과외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① 교

습자 乙이 자신의 주민등록지상에 개인과외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 ② 만약 乙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가 안되어 있는 채로 상기와 같은 과외교습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학원법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 (2) 甲·乙·丙 에 대해 관할교육청이 행한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 ▶ ①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甲이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강사乙을 채용하여 과외교습을 하다가 민원인 丙의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에 따른 신고에 의해 관할교육청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했을때, 甲에게는 부정교습에 의한 교습 중지 1년 (17조3항2호)· 乙에게는 개인과외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 (22조1항4호)·丙에게는 기소유예이상의 처분 확정 후 乙만의 불법교습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포상금지급 (17조1항2호) 이라는 각각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행 학원법과 불법사교육신고포상제도에 비추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지요? ▶ ② 만약 ① 과 같이 처분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면 그 근거는 학원법 몇 조 몇 항 에 명시적으로 법정되어 있는지요? ▶ ③ 또한 ① 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관할교육청이 甲·乙·丙 각각에게 어떻게 행정처분 해야지만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 되는지요?

- (3) 가족관계와 신고포상기준? 상기 甲·乙의 관계가 부부·형제·자매·친척 등의 가족관계일 경우에, 사례와 같이 ▶ ① 교습자별로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신고를 해야 불법이 아닌지요? ▶ ② 또한 그 신고포상여부도 남편·아내·형·동생·언니·여동생·삼촌·조카 등으로 개별적·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같은법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실제로 거주하는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신고한 1인이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의 학습자에게 교습하여야 하므로 강사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乙은 본인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甲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 교습자 甲이 강사 乙을 채용하여 교습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甲은 본인의 주소지에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행위를 벗어난 무등록학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A를 무등록학원 운영으로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족관계인 2인이 실제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습자별로 각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6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질의

- 1. A시에서 A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하고 개인과외를 하던 중 B시로 이사를 간 후 별도의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가지고 B시에서 개인과외를 하였다면, 미신고 개인과외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2. 만약 불가능하다면, B시 교육청에 신고한다면 주소지 변경 미등록으로 처분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 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신고 된 개인과외 교습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겨 과외 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에 해당되어 신고 포상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재문의

질의

- A시와 B시 모두 C도교육청에 속해 있고, C도의 교육감이 1명인 경우,
1. C도 A시에서 A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하고 개인과외를 하던 중 C도 B시로 이사를 간 후 별도의 개인 과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도 A시 지역 교육지원청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필증을 가지고 C도 B시에서 개인과외를 하였다면, 미신고 개인과외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성명, 주소, 교습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C도 A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과외교습을 하던 중 C도 B시로 주소를 옮긴 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2호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8 자유학기제 관련 문의

질의

- 자유학기제가 시행 목적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입시와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며,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13.5)하여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는 학교 특색,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예산 지원을 비롯하여, 선택프로그램 27종(지원센터, 서울시교육청 개발), 체험활동 안전 매뉴얼, 예술·동아리·체육·자율과정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운영 계획 컨설팅,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생들이 자유학기 동안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여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유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도에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9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원 인정 유무

질의

□ [질의 1]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공동주택으로 기재된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 A가 개인과외교습자 B, C와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교습비를 70%, 15%, 15% 씩 나누기로 하고, 교습자 A, B, C 각자가 동시간대 9명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대해과외교습을 해오던 중,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관할교육청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과외교습을 적발한 경우에 있어서, 교습자 A는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였으나, 교습자 B, C는 자신들의 주민등록지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

- (1) A 에 대해서만 무등록학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건축법 2조2항의 공동주택에선 일반국민의 학원설립등록의무의 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학원법 시행규칙 3조③항 1호), 학원등록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인 무등록학원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B, C 에 대해서만 각각 개별적으로 미신고 개인과외를 적용해야 하는지?
- (3) A, B, C 모두를 공동으로 하여 무등록학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2]

상기 [질의 1]에 대한 답변의 이유와 근거는 어떤 것인지? ==> 상기 [질의 1]·[질의 2]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학원법 제2조(정의)를 보면, ‘학원’은 일정 수(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하고, ‘개인 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9명 이하의 학생들에게 교습을 한 위의 사례를 ‘학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그렇다면, 위 사례에 있어 A 또는 A, B, C 모두에 대해서 ‘무등록 학원’을 적용하여 신고포상금 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미신고 개인 과외’에 해당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

자의 신고 등)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 의해, B와 C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 과외) 교습을 한 것은 명백하고, 이는 학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미신고 개인과외를 적용하여 신고포상금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법 적용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께서 동 사례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시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유형을 판단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확정하여 해당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현지 점검을 통해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포상제 문의

질의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오피스텔에서 교습자가 관할교육청에 신고 없

이 학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시간대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1:1방식의 고액의 과외교습을 해오던 중,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관할교육청이 불법과외교습을 적발했다면, 이 경우는 불법사교육 신고포상 사유 중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학원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피스텔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주거여부·교습형태·동시간대 학습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귀하가 제시해 주신 위 사례에서, - 오피스텔이 교습자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동시간대 1명에게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학원법」 상의 ‘개인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교습자는 학원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포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법 적용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현지 점검을 통해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51 자율학기제 시행재검토



질의

-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1 자율학기제 운영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자 시범운영 되고 있는 자율학기제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아이들의 평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자율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13년 자율학기제 연구학교(42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14~‘15년도에는 연구·희망학교를 운영하며 ‘16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 자유학기제에도 국·영·수 등 기본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되며, 강의식·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방식을 자기주도적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줄 계획입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은 실시하지 않지만, 형성평가·자기성찰평가 등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성취 수준은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학습성취 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은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하게 개발된 프로그램 및 평가방안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13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 시범 연구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우관계가 개선되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모습에 많은 기대를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5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질의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민원을 남깁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방과 후 영어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9월에 시행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에 보면 "방과 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라고 쓰여 있고 16조에 보면 배제부분에 제2

외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학교 내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고 학교 수업이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명문대학 진학 등을 겨냥해 영어·수학 등의 과목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선생님들 또한 가르치는 데 있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교육 정상화법이 제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만, 귀하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실 금지에 대하여 우려의 의견을 주고 계시나, 아직까지 이 법률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까지 전면 금지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 법의 시행일이 금년 9월 12일자인 관계로 그 이전까지 법률 검토 및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교실이 전면 금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교육 유사 사업체 이름으로 법의 저촉 없이 과외 알선업체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소관)에 따르면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동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해당 업체의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구직등록 등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4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국민신문고로 불법 사교육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항에서는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포상금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55

학부모회 성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질의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은 김○○로 학부모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체계 등 다음에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학부모회란무엇인가?
2. 학부모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학부모회를 학교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가?
4. 학부모회에서 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5. 위4번을 실행함에 있어 반드시 학교와 협의 하여야 하는가?
6. 운영위원회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7. 관련법령은?

회신 회신일 : 2013-07-16 18:0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질의1)학부모회란무엇인가?

- 학부모회란 단위 학교의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며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학부모들의 조직입니다.
- 학부모회가 학부모를 대표하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 교육 참여는 학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 질의2) 학부모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학부모회 구성은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부모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회, 대의원회, 학급학부모회(학년학부모회 포함) 등을 둘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별 하부조직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대표, 임원 등이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3) 학부모회에 대한 학교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

- 교육부에서는 2011년부터 단위학교차원에서 학교회계에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4) 학부모회에서 하는 일은?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 지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학교 전달,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 등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질의5) 질의4를 실행 함에 있어 학교와 협의 하여야 하는가?

-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 친목도모 행사 등 학부모회 자체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와 협의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학교교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6)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 규약(자율조직)
성 격	심의·자문기구(필수기관)	임의기구
조직권한	(국·공립학교)심의기구 (사립학교) 자문기구	자생조직
구 성 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 질의7) 관련법령은?

-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에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 및 부모

등의 학교에 대한 제시의견 존중 의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자) ② 부모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학부모회 관련 자료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www.parents.co.kr)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5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제 참여 관련 문의

질의

- 방과 후 학교가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57 주5일제 교육의 문제점 해소 문의



질의

- 2011년도까지는 2, 4주째 토요일만 쉬고, 다른 토요일은 등교하는 제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방학은 짧아지고 학생들은 학원에 더 오래 붙잡히게 되었죠. 진짜 더운 여름 방학이 짧아지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로 수업일수를 분산시키는 것(2011년까지의 제도)이 더 효율적인 듯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주5일 수업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의 정착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2006년부터 월2회 시범 운영되었고 '12년 3월부터 학교 선택에 따라 전면 자율 시행되었습니다. 방학일수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진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58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 공문에 따른 업무 과중

질의

- 저는 000초등학교 방과 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조치사항 안내'라는 공문의 내용을 보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들 하나하나의 출석률을 모두 체크하여 환불을 해주자면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해집니다. 교사를 수업에 전념하게 하기보다는 업무에 매달리는 형국이 됩니다. 업무경감이다 뭐다 말은 많은데 방과 후 학교 관련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는 느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학생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적에 따라 전학, 병결 또는 수강포기원 제출 등 방과 후 학교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가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시를 준용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점이 개선되는 과정의 불편함을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고교 정규수업 시간 전 보충수업을 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학생들 일과시간을 1시간 앞으로 당겨 1교시를 8시부터 시작하고 0교시를 오후 맨 뒷 시간으로 이동하여 9교시에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17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에서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익자부담 교육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강사 회의를 통해 “학교수업 시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학생들의 건강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로서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를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강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침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지를 살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시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질의

- 새로운 방식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데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부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관련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매년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지침 또는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분기, 반기, 년 단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생·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기 중간에 개설·폐강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61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시 전공분야 수업 서류제출 관련

질의

- 학교에서는 방과 후 선생님을 선출할 때 전공자보다는 경력이 오래 된 비전공자 선생님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공자를 확실히 구별하고, 비전공분야를 제외한 전공분야 수업에는 전공자만 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능한 젊은교 육자들의 유출과 무자격 선생님들이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과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의 재능기부 및 기업의 교육기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자격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학교 강사 관련 자격은 정규 교원자격 소지자, 자격이 없으나 재능이 있는 자, 기타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민간기관이 등록을 통해 발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 모집시 자격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수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사항이며, 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강사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강사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을 통해 우수한 방과 후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

비영리법인의 방과위탁사업운영 관련 문의

질의

- 비영리법인의 방과 후 위탁 사업 운영 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비영리 법인에서 방과 후 위탁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지부설립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도)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2010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시·도교육청 공동 개발)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과 계약 시 확인 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단위학교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과의 계약 시, 비영리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서(관할 관청),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관할 관청)을 확인하며,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사업자

등록증(관할 세무서)을 확인한다.

② 단위학교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정관'의 사업목적 및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방과 후 학교 등 교육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와 '수익 사업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법인세 관할 관청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을 하고 수강료를 징수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③ 단위학교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이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부합하고, 수강료는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 기타 개별법에 의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 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 여부는 법령(민법제50조등)에 따라 하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의 재산은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을 등기하게 되어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재산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 없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민법 제38조: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사항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법인이 분사무소설립을 통해 사업을 하는 절차에 대해 우리 부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비영리 법인설립·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주무관청(승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질의

- 방과 후 학교 개설에 있어 저희의 경우는 저희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위탁공고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과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에 이루어지므로 수요조사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직접 방문 설명, 팸플릿 제공 등)가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 즉,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는 공고 후 입찰방식이 기본적이나 시·도

교육청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학교와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64 아직도 학력이 철폐되지 않는 학력사회

질의

- ○○○교육청과 산하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강사 모집 요강’의 ‘지원조건’에 학력을 내세워 제한하고 있음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9 13:3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2012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의 운영 방침에서 “방과 후 학교 지도강사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되는 현직교원·외부강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 또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인의 재능기부 및 기업의 교육기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학력이나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사 모집 시 자격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수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사항이며, 심사를 받습니다.

-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자율화 계획(2008.4월)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이양된 사항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65 이적 동의서



질의

- 운동선수는 전학 시에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기에 학교 측에 요청한 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오네요.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에 써주겠다고 합니다. 원주교육청에도 민원을 요청한 바 귀청에서는 학교 측과 얘기하라는 답이고요. 전학 시에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답도 원주 교육청의 민원 처리방법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이적동의서가 없이는 선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결론은 학생의 기본권을 빼앗겠다는 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귀하가 질의하신 학생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13년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의 일환으로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장 동의서를 발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해당 학교

운동부 운영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고, 민원처리 시, 특별히 민원인께서 기피신청하신 원주 교육청 및 남원주중학교 체육부에게 이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질의

- 여러모로 방과 후 활동에 있어서 스포츠강사가 안된다면, 곧 타지역 역시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대부분 스포츠강사는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조차 우리에게 빼앗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먼저 스포츠강사의 처우부터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글로 인해 한 번 더 스포츠강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 해주시고 어떤 형태가 맞는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사의 방과 후 수업권에 대한 보장과 아니면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대해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방과 후 학교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7항)로서, 학교스포츠 클럽 관련 방과 후 학교 지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근무 시간 내 방과 후 학교 참여는 계약으로 정한 스포츠강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67

최근의 초등체육전담교사 제도에 관한 의견제안

질의

- 현재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11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최근 체육전담교사 시행방침, 계획을 보며 다음과 같은 의견제안 및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최근의 초등체육 전담교사 계획에 따라 현 초등스포츠강사 및 중등체육전공자들이 조직적인 모임(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 신문고나 교과부등에 민원을 함께 넣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99년도처럼 중초임용을 원하는 바가 대부분입니다.
 2. 이와 같은 민원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현장의 대부분의 초등교사 혹은 초등교육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초임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체육전담 교사제도는 초등교육 자격소지자(교대졸업자)로 신규 임용하여 영어심화 이수자처럼 체육전담 5년~10년 이상 의무 등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현재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을 볼 때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또한 교대 체육전공자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학교폭력 가산점 때문에 6학년이나 학폭업무 담당자가 서로 원하는 업무 보직이 될 정도로 경쟁이 있으므로 체육전담 가산점 등을 검토하면 충분히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초임용해서 체육전담을 한다고 할 때, 7학급 이하 우선배치 한다고 하면 체육시수를 지금의 2배 이상 늘리지 않는다면 다른 과목도 함께 가르쳐야 시수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음악 등 체육교과만 가르치는 시간제정규직 교사(시수가 작으면 월급도 작을텐데) 아님 순환교사형식?(담임교사 말도 잘 안 듣는 상황에서 순환교사의 말을? 이것은 오히려 교육의 질이 더욱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 결론적으로 중등자격소지자의 체육전담교사는 결코 필요 없고 교육을 망치는 일이며, 현재 교대 체육전공 졸업자 및 현장에서 남교사를 보다 더 충원하는 방안을 오히려 연구해야 합니다. 담당자들은 조직적인 민원이나 공청회에서의 의견(보나마나 중등기간제 분들이 시간을 내서 주로 참석할 것임)보다 현장 설문조사 및 교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보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의 주요 요지는 초등 체육전담교사의 중초임용을 반대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초등교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원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중등교사 자격만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초등 체육전담교사는 초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8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정규 교사(전일제 초등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나 수업시수가 너무 작아 1인이 전일제 근무를 하기에 효율적일 수 있는 7학급 미만에 대하여는 정규교사 뿐만 아니라 안행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68

스포츠강사가 왜 교사입니까?



질의

- 현재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30일 초등체육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중등자격소지자나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한 초등체육교사 전담배치에 반대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초등교육의 목표는 기능인 양성이 아니며 특히 초등학생은 그 나이에 필요한 교육방법이 존재합니다. 초등을 가르치는 방식과 중고등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초등교육은 가시적이고 현상적이며 구체적 조작 발달 단계에 맞춰 지도해야 합니다.

- 스포츠 강사는 이러한 초등학생의 특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강사로서 기능을 가르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옆에서 미연의 사고와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이러한 비전문가에게 교사의 자리를 개방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교대 자체에서 체육교육을 심화하거나 현직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 영전강 이후 학교현장은 혼란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중초 임용이후 초등학생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다시 만들고 싶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저희는 교대를 나온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아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한국교육 정책연구소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용규)의 일환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전달하여 연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과 관련하여 보충하고 싶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교육 정책연구소로 직접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 중 스포츠강사의 단독수업진행 반대

질의

- 현재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강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등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써 현재 초등학교 정규체육시간에 단독수업은 금지되어있고 수업보조의 역할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시간에 초등정교사는 수업을 하고 스포츠강사들은 수업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강사만 수업시간에 나가서 단독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스포츠 강사는 정규체육시간에 단독수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초등교사와 스포츠 강사의 행동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의 주요 요지는 초등 스포츠강사가 체육교과 단독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 수업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위한 체육 전문강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로서, 정규 체육교과를 담임하여 가르치는 정규교원이 아닙니다. 초등스포츠 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정규 체육수업은 담임이 스포츠강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 체육수업을 담당해야 할 담임교사가 이를 망각하고, 정규 체육수업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채 스포츠강사에게 수업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속 학교와 관련자를 알려주시면,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되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체육시간이 1,2학년들은 주2회 3학년은 주1회로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그런데 체육시간이 수학이나 영어교과 시간보다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 일 또는 대학생이 되어 운동할 시간이 더 더욱 적어지게 되는데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체육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되네요. 왜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해야 하고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교과(군)의 필수 이수단위 이상은 단위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고에서 체육은 10단위 이지만 학교에 따라 12단위를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6월 24일에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등학생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교에서 '14학년도 입학생부터 체육을 10단위 이상, 6학기 분산 배치하여 수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에 대한 필수 이수단위가 5단위였기 때문에 일반고와 같은 필수 이수단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요 스포츠 데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14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2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 스포츠클럽을 하도록 하여 모든 학년에서 체육시간과 학교 스포츠클럽 시간을 합하여 주당 4시간의 체육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71 우리나라 야구 꿈나무들의 현실



질의

- 아직도 운동부에선 성적을 위한 폭행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대다수의 부모들은 핫일이 두려워 알면서도 말도 못하는 실절입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항응. 접대도 공공연히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운동시키고 그 아이가 선수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악습은 영원히 계속 되지 않을까요? 부디 바라건데 소수의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꿈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며 보내는지 살펴주십시오. 대한 야구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요즘 인천에 있는 신흥중학교 야구부일로 시끄럽습니다.

-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만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이들끼리의 폭력은 부모가 막아 줄 수 있지만 지도자가 아이들에게 행하는 폭력들은 부모들도 가슴앓이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나라 스포츠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봐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분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00중 학교로 진학시키셨는데 불합리한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조치를 위해 00중학교 소재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께 회신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시 한 번 민원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안내 하겠습니다.

7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질의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벌써부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하는 걱정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공약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동안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학교에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면접보고 서류전형으로 합격한 스포츠 강사입니다. 제 인접학교에서는 앞으로 스포츠강사 처우가 좋아 질 거라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학교체육발전에 신경 쓰라는 교육청의 이야기만 믿고 6년간 현장에서 갖은 업무와 고통 속에서도 그 희망으로 버텼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이번 년에는 인원마저 줄인다는 말에 희망이 점점 사라져 선배 스포츠 강사분들께서 다들 우울증에 걸린 듯합니다.

- 대통령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서 전인교육은 무척 중요합니다. 외국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체육활동을 무척 중요시 하고 국가 정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 아닌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국가종합발전계획처럼 몇 십 년 을 계획적으로 체육교육을 활성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학교체육의 핵심인 스포츠 강사 직업을 예산 탓으로 돌려 인원을 줄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실업자 처지가 되는 12월 스포츠 강사의 겨울은 너무 춥고 처량하기 까지 합니다. 10개월 계약으로 인해 아이들이 선생님 내년에는 재미있는 체육활동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성과 일관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없는 한시적인 교육과 경험이 진정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10개월 계약으로 매년 학교를 바꾸거나 학교를 떠나게 되는 스포츠강사 제도로 일관성 있는 체육 교육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실제로는 체육수업을 주도하고 있고 아이들도 체육선생님! 하면서 잘 따릅니다. 이러한 스포츠 강사제도를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치부해 버리는 모습보다는 슬기로운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23:36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현재 국회예산 심의과정(예결위)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확보를 위해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우리 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예산확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원인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3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질의

-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가입 절차부터 난해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알아내야 하고, 가입한 후 독후활동도 상당히 힘듭니다. 학교추천도서 목록도 올라와 있지 않고 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길 장려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독후활동을 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9:13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의 웹 표준화와 관련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버전과의 호환성이 떨어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의 우선 기능개선사업으로 Window8 및 멀티브라우저의 사용 환경 확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 이에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화 강화를 통하여 윈도우8 운영체제 및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버전에서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추가적인 기능 개선도 2015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기능개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각 다른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스 하나를 변경하는 작업에도 ‘개발프로그램적용→전수테스트→각 시도 서버환경에서의 시범운영(최소두개시도)→각 시도별 테스트 후 적용’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으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확대되기에는 추가적인 사업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는 최선을 다해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기능 개선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

- 인성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독서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만 배치되어도 전국의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동기유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연계 도서관 교육을 하는 사서교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지며 창의성 또한 남달라 사회와 국가에 발전을 가져 올 것입니다. 교육당국의 현명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9:13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 우리 부에서는 사서교사 배정정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서교사 역시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정원은 정부조직 관계법령에 따라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관련부처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도상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원확대를 위해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체험활동에 따른 인증 프로그램 관련하여 여쭙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학생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시설이용, 인증프로그램 관련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가 사항 연수)책자에 보면 외부 위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활동, 수학여행 각종 현장체험학습 등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 예시로,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광업체에 요구하여 편성하는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대상에서 제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저희가 진행하려는 진로 캠프도 위 예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 내용을 과업지시 형태로 업체에 주면, 업체는 그 과업 지시내용에 맞게 계획서를 짜서, 검토 후에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도 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09-16 9:13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근거 : 창의교수학습과-5129(2013.9.30.)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관련 시·도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및 유의 사항 안내」

2. 내용 :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관련 준수사항 -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지도하는 경우, 관광업체 등 민간 업체에 요구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 인증 없이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 안전 조치 확인 필요.

:일일 현장체험학습(비숙박) 관련 준수사항 -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필요

※ 기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 교육청 (소속기관, 부속 시설 포함) 및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3. 답변 따라서, 교육청이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에 관한 기획을 하고 교사가 인솔·지도를 하는 경우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도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운영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6 교과 교실제 질문



질의

□ 교과교실제 질문 문항 하나하나마다 답변 해주세요.

(1) 2011년에 교과부가 2014년에 6학급 이하의 농어촌 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2014년에 도입할 수 있나요?

(2)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교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실 공사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3) 수학이나 영어는 각 학생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인데요. 수학과 영어는 한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별 1:1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교과 교실제가 도입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학·영어 교과과정을 선택해서 1:1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자면 고2인 학생이 있고 고2에 미적분을 배워야 하는데 자신이 배우는 속도가 약간 느려서 미적분이 아니라 공통과정 고1 수학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1:1 수업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개념이랑 공식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 교과 교실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를 더 다닐 수 있도록 하나요?

(5) 교과 교실제 있잖아요. 각 요일마다 짜여진 교과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교과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 (6) 교과 교실제가 도입돼도 수업 방식이 암기 중심 학습인가요? 아니면 암기 학습과 창의성·사고력 학습을 접목해서 가르치나요?
- (7) 교과 교실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의 평가 방식은 어떻게 변화 하나요? 기존 시험 제도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9-16 9:13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1) 2011년에 교과부가 2014년에 6학급이하의 농어촌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면도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2014년에 도입할 수있나요? -2011년교과부는 교과 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여건이 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과 교실제 도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산집행의 합리화, 시설비 예산의 절감, 학교희망 우선 반영 등의 사유로 지침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2013년 현재에는 여건이 되는 희망학교 중심으로 예산소요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교실제 전면도입이 당초 계획했던 2014년에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2) 교과 교실제를 하려면 교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실 공사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교과 교실제라고 해서 무조건 교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령 인구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유헴교실(현재 쓰지 않는 교실)이 충분한 학교에서는 교실 재배치, 리모델링만으로 교과 교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헴 교실수와 교과 교실운영에 필요 교실수에 따라 학교마다도입을 위한 공사 등 준비기간은 상이 합니다.

- (3) 수학이나 영어는 각 학생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인데요. 수학과 영어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별 1:1수업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교과 교실제가 도입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학·영어 교과과정을 선택해서 1:1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고2인 학생이 있고 고2에 미적분을 배워야하는데 자신이 배우는 속도가 약간 느려서 미적분이 아니라 공통과정 고1 수학교육과정을 선택해서 1:1수업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개념이랑 공식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과 교실제에서 1:1수업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 영, 수, 사, 과 등의 주요과목은 학생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준 세분화를 위한 확대학급 (예시:2개의 반을 3개의 수준으로 쪼개어 수업운영)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대학급을 통해 1:1수업까지는 아니라도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업이 교실 학급제 보다는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4) 교과 교실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를 더 다닐 수 있도록 하나요?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더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급 교실제 학교와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교육과정총론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5) 교과 교실제 있잖아요. 각 요일마다 짜여진 교과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는 시간대에 원하는 교과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교과 교실제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교과 교실제 운영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다만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서 학생의 자율적 시간표 구성의 선택권의 범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6) 교과 교실제가 도입 되도 수업방식이 암기 중심 학습인가요? 아니면 암기학습과 창의성·사고력 학습을 접목해서 가르치나요? -교과 교실제는 학생 중심의 수업,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구현을 통한 창의적인 수업을 목표로 도입 되었습니다. 교과 교실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사연수, 교과협의회 활성화 등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 교실제 운영학교에서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아닌 창의적이고 학생 활동 중심의 교실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7) 교과 교실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의 평가방식은 어떻게 변화 하나요? 기존 시험제도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교과 교실제 운영학교의 학생 평가 방식이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창의 교수 학습과에서 모든 학교에서의 학생평가방법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의

- 맞벌이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0.3일(개천절)에 맞추어 10.4일을 재량휴업 한다고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법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업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재량휴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학부모 설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요? 또한 왜 재량휴업을 해야 하나요? 가족 간의 체험활동이 증가가 이유라면 체험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재량휴업을 해야 하는지?
- 경제상의 이유로 맞벌이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을 무시한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학부모는 일당이 없어지는 휴가(유급휴가)를 내게 만들고 선생들은 출근하지 않는 것(무급휴가)은 대체 누구를 위한 재량휴업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9-16 9:13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량휴업일은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업일 운영으로 지역 문화 활동 활성화,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로 학교의 장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초중등 교육법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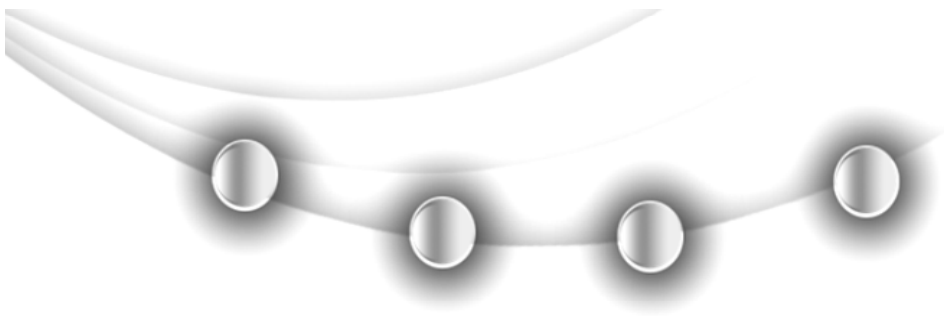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행령 제47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정 기간 전후에 체험학습 및 토요일휴업일 등과 연계하거나 국경일, 명절, 기념일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본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Ⅳ. 초·중 등 교원 인사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퇴직과 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질의

- 발령일이 2013.02.28.임을 가정했을 때 복직과 퇴직(사망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의 경우 2013.02.28.일까지 근무기간에 포함하나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의 경우 2013.02.27.일까지가 근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일"의 경우 하루 전날(2013.02.27.)을 마지막 근무기간으로 본다고 하던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퇴직일을 두고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13 15: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퇴직, 면직 등 임용행위의 기산시점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퇴직, 면직의 경우에는 발령장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그 효과가 발생하여 그날 영시(00:00)부터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합니다.

2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질의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장 제26조 및 제28조의9 제2항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무성적평정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전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학교장에게 공개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9-02 22:3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부로 제기한 ‘근무성적 평정점수 교육청 제출 전 공개’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인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점은 교육청의 조정행위를 거친 이후 결정되므로 교육청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승진 가산점 적용 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원 소속은 000교육청이고 지금은 타 지역에서 교환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얼마전 학교로 학교폭력유공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승진가산점제라 다시 복귀해도 적용이 되는 점수라 생각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만약 교환근무 중이라고 대상자 자체에서 배제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7 9:07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제기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부여’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은 1년간의 실적에 대해 원 소속 기관에서 평가되는 사항으로, 교환 근무자라고 대상자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4 개방형 교장 공모에 대한 문의(교육부)

질의

□ 본교는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사립학교)입니다. 원활한 학교경영을 위해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본교에 교장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1.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트 고등학교에서는 초빙 교장제와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한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자격, 절차,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1 22:32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제기한 ‘사립학교 교장공모제’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사립학교 교장공모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의거 사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공모제는 교장 중임 제한 횟수에 산입되는 등 국공립의 교장공모제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충분히 문의하고 시행을 검토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5 교원승진의 연구실적 점수부여 기준

질의

- 연구대회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 가산점 평정의 기준은?

회신

회신일 : 2014-01-08 15:2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구대회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 가산점 평정은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박사학위 및 연수점수 인정여부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 취득 시 연수점수 3점을 인정됩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대학의 교육학박사과정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은 주간과정으로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은 현직 교원들이 수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은 교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토요일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사일정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했을 경우, 박사학위가 인정되어 연수점수 3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29 17:3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위취득 실적 관련 회신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는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간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 받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 보장



질의

- 요즘 나이스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과가 실명화 되어 교사가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하여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형식적 평가를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평가결과가 공개된다는 일부 소문이 맞는지요? 공개된다면 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3-10-16 15:57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기 위해 로그인 과정에서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가 평가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에서는 교원 능력개발평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연수 및 홍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2014학년도 복수담임제도 운영 문의

질의

- 2014학년도에도 복수담임제도가 운영되는 건가요? 2013학년도처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건가요? 2014학년도에는 폐지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4-02-20 23:48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우리부는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역할 등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2학년도부터 2인 담임제(복수담임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3학년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
되, 2인의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의 상담·생활지도를 충실히 하자는 본
래 취지에 따라 학교별·학급별 특성에 따른 적용을 권장한 바 있습니
다. '14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사항
으로, 2인 담임제(복수담임제)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간제 교사 계속 근무기간 문의

질의

- 기간제 교사의 계속 근무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13조 3항에 의거,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
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목 변경에 의한 임용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사회 기간제 교사로 계속 4년을 근무한
후, 도덕 기간제 교사 모집에 의한 도덕교사(복수전공에 의한 도덕교
사 자격증 소지)로 다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생
물 기간제 교사로 4년 근무하고 공통과학교사 모집에 의한(공통과
학교사 자격증 소지) 공통과학 기간제 교사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18 14:21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즉, 다시 말하면 4년이 지나면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과목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교원복무시간의 근거

2

질의

- 교원이 무슨 법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30 10:09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원의 근무시간은 1985.2.6.(문교부교행01136-104-F)일자로 업무특성상 09:00-17:00(동절기, 하절기 공통)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11 교원의 부동산 임대사업



질의

-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원룸이나 사무실 또는 상가를 건축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14 8:2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므로, 임용권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12 교원동반휴직 기간 및 횟수



질의

- 교원의 재직 기간중 동반휴직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 교원

인사실무>에서 동반휴직의 '휴직의 횟수 : 제한 없음(총 휴직기간은 6년 이내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총 휴직기간'에 대한 해석을 발생한 사유당 최대 6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교원의 총 재직기간 중 6년이라고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최초 동반 휴직 1년(3년으로 간주)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근무 하던 중 다시 배우자의 해외 근무(새로운 사유 발생)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남은 3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6년이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0 16:22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건의 동반휴직 사유에 대해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동반휴직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동반휴직을 사용한 자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한 후, 새롭게 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용권자는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년 미만 국외연수휴직 가능한지?



질의

- 1년 미만의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는 휴직사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1년 미만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는 휴직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25 21:27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연수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연수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교사 타시도 교류(일방전출) 확대



질의

- 교사 타시도 교류가 일대일 동수 교류 원칙을 고수하여 시·도간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타 시·도로 새로 시험을 보거나 불필요한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교사 타 시·도 교류(일방전출)을 확대하여 많은 교사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타 시·도교류(일방전출) 확대해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4-02-14 16:4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에 의하여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교육청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인사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원 인사 교류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별 특성, 교원의 수급상황, 교원 임용시험 지원현황, 인사 교류대상 및 신청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 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사항이며,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5

교사의 육아휴직 중 계절제대학원 수강

질의

- OO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방학 중 3주 수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OO교육청에 문

의하니 육아휴직 중에는 교육대학원(계절제)에 다니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 정말 육아휴직 중 교육대학원(계절제)에 다닐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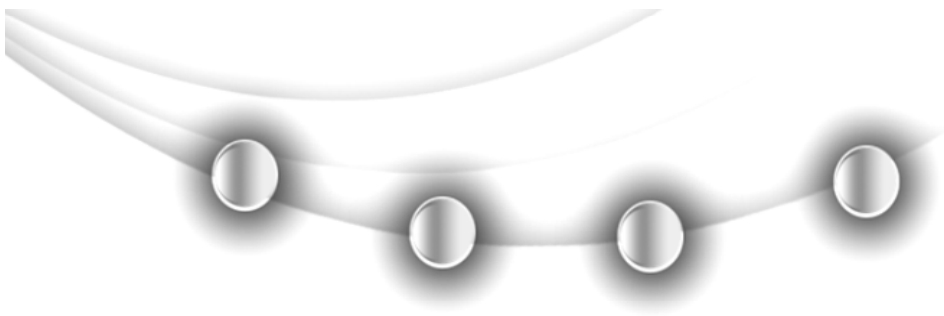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 회신일 : 2013-12-05 16:28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자가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려는 것은 평소 다른 교원들이 재직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학위의 인정여부 및 승진가산점에 활용할 지 여부는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감의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V. 학생 건강안전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한센인 자녀(미감아)의 특별지도 내용

질의

- 한센인 자녀(미감아)는 일반학생들과 다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인지 여부와 특별지도의 내용과 근거(법령, 공문, 기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한센인 미감아(민원인의 표현을 인용하여 이후 정상자녀를 "미감아"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반학생들과 달리 건강하지 않은지, 또한 미감아를 통해 일반인에게 한센병이 전파될 수 있는지 등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야 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과거 1960년대 문교부 시절 미감아에 대한 교육방침은 한센인의 정상자녀와 일반학생들을 분리교육하지 않고 같은 학교에서 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보건사회부 또한 의학적으로 미감아는 한센병 환자가 아니므로 분리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기록을 살펴볼 때 미감아들이 일반자녀들과 달리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한센인 자녀와 일반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아이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수업을 하거

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던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한센인 자녀에 대한 특별지도와 관련한 교육부의 별도의 지침
은 없습니다.

2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정책

질의

- 교육기관에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학생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 및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교육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함께 현재 흡연중인 학생들에게 금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8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도 각 기관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흡연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의 건강행태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흡연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09년 12.8% -> '13년 9.7%)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학교 보건실 예산 및 직원 배치

질의

- 중. 고등학교 보건실 관련 예산 및 보건실 직원의 배치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에 설치된 보건실의 관리는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보건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규모, 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일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당 1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개별학교에서 학교 전체예산의 일부를 보건실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4 보건교사 직무와 국민건강보험업무와의 관련성 질의

질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실시하는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가 보건교사 업무인지에 대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의 보건교사의 직무 중 다목(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은 법에 따라 학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검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하여금 건강검사의 준비 및 실시 등에 관해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제2문에는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교 내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며,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5

학교 급식법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관련

질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 표시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아황산류를 포함하면 13가지인데, 학교급식의 알레르기 표시대상도 "아황산류"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2012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의무화되어(2013.11.23.시행), 기존 알레르기 유발식품 12가지 원재료(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가 식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간식단표 등에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식품첨가물인 아황산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아황산류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학교 급식법 관련 건강진단 횟수 문의

질의

-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 횟수가 년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의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의 개인위생에는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당사는 식품위생법의 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은 준비과정에서 위생·안전관리 등에 소홀하게 될 경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관리기준을 학교급식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업체의 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에 1회 실시(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급식 후 남은 음식 재활용

질의

- 학교급식을 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지역마다 인증된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인증서를 발행하여 인증서를 보여주면 학교급식에서 급식하고 남은 음식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면 독거노인들이 영양가 있는

반찬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건강도 챙기고 생계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에서 남는 잔반을 독거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되도록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고등학교는 기술·가정 등 관련 교과교사가 체계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급식시간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식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매주 1회 이상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등 학교별 실정에 맞게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도 잔반이 남지 않도록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학교급식에서 남는 잔반을 독거노인 등을 위해 재활용 하는 것은 위생·안전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방사능 급식



질의

- 일본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데 오염 수산물을 포함 일본 수입물품들이 계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량의 방사선 물질이 확인된 식품을 섭취해도 내부피폭이 심각한데 전혀 제한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여 민원 남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 급식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오염 식단 재료들을 제외하고 급식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국내로 유통되는 수입 식재료는 주관부처인 식약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수산물만 통관시키고 있고,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제도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 학교 급식판 세척제에 관한 질의(교육과학기술부 급식담당)

질의

- 안녕하세요? 이번에 채널A방송(유독성세제)편을 본 시청자이자 학부모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급식판 세척제가 2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산화나트륨이 있다는 것과 제대로 세척을 하지 못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입에 소위 말하는 양재물이 들어 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네요.
- 수산화나트륨 세척제가 세척력이 우수한건 알고 있지만 만약 세척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의 수산화나트륨 세척제 사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08-06 14:05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소 식기세척제 사용 및 잔류여부 확인검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행정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세척제 사용방법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
- 확인검사 방법 :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에 대하여 PH 시험지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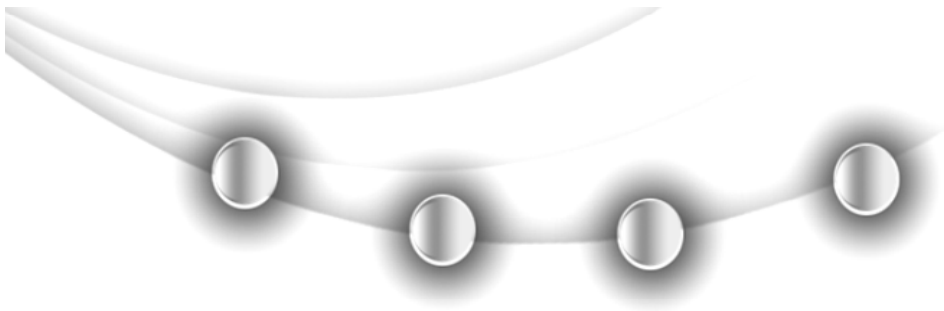
등을 이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잔류 확인 시, 행균 강화 및 세척기 이상여부 확인) 또한, 금년 1월 세척제 잔류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재강조 하였으며, 향후 교육청에서 연 2회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각급학교의 ‘확인검사’ 실시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우리 부에서도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잔류 우려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급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Ⅵ.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편 관련 문의

질의

- 2013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교과가 개편되고, 2013년에는 3학년, 4학년이 개편되며 2014년에는 5학년, 6학년이 개편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개편된 과정이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2015년에 다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 개편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에 나머지 학년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2009개정 교과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적용 시기는 2013년 1, 2학년, 2014년3, 4학년, 2015년5, 6학년입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 적용시기가 2011년1, 2학년, 2012년3, 4학년, 2013년5, 6학년과 혼동되신 것 같습니다. 총론은 교과별 수업시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2015년 이후 새롭게 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2 역사교육 확대 방안

질의

- 역사교육의 확대 방안에 대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주변국의 지속적 역사 왜곡, 일부 청소년들의 욱일승천기, 야스쿠니 신사 사건 등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사 필수 개설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독려('10.3~)한 결과, 2011학년도 신입생들의 경우 모든 학교가 한국사를 100% 개설하여 필수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시·도교육청 확인).
- 아울러, 역사 교육과정 부분 개정 추진('10.5.13.)을 통해 독도 관련 내용 교육과정 명기를 통해 독도 교육 강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체계 조정(※중학교 : 근현대사 내용 보완 / 고등학교 : 전근대사 내용 보완), '한국 문화사 교육' 범교과 학습주제 교사용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11.2)을 통해 통사 중심의 역사학습을 보완하는 박물관 학습 등 체험중심의 학습자료 개발보급을 추진 하였습니다.
- 2011년 한국사는 고등학교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과목만 필수화 했습니다(교육과정정책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국사)를 필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과 국가정체성 및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 및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원의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 함양을 위한 연수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국가정체성

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부는 역사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대일·대중역사의식,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국사교육, 국가영토(독도교육)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무한도전, 킬투의 베란다쇼 등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학생이 1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한국사 교사들의 재미있는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고견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바른 역사 교육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편성 및 관련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년 12월 31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10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1) 위에서 말한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나요?
- 2) 학교에서 정보통신 활용교육과 보건교육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하고 한자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3) 위 세 과목 모두, 또는 한 과목이라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사항이 있나요? 처벌 사항이 있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평가영역

질의

- 통합교육과정 학회는(2013년7월5일자)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은 8개의 대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일첨부함 ‘통합

교과교육학회에 대한 답변(0705')

- 하지만, 교과부가 2012년 9월 3일자로 보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안내’라는 공문붙임문서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낸 ‘20120903-전국 권역별 교육과정 핵심요원 워크숍 질의응답’ 자료 2번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영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 2.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의 경우 평가영역이나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지 않은데,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교과서가 통합형태로 개발되지만, 평가는 각 과목별로 하되 전학생 등을 고려하여 대주제(봄, 여름, 가을, 겨울등)를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평가영역을 정할 수 있음.
- 1,2학년 통합교과의 평가 영역을 반드시 8개 주제영역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하는 것이 맞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통합교과의 평가영역 설정은 전학생 등을 고려하여 대주제(봄, 여름, 가을, 겨울 등)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합교과의 대주제는 타 교과의 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제를 평가영역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의 특징을 감안한 것도 있습니다.
- 다만, 학년협의회(혹은 교과협의회)에서 대주제(대영역)를 대신할 타당한

다른 평가영역을 개발하여 입력하시기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5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

질의

- 저희 학교는 1학년에서는 선택과목에 기술·가정이 없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집중이수제로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가정보다 심화과목인 가정 과학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반드시 기술·가정을 이수한 후에 가정 과학을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 과목이 선택이고 한국사만 필수입니다. 어느 학기에 과목을 선택할지 등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6 고등학교 1시간 수업을 50분에서 감축 운영 가능

질의

-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공립 대안고등학교입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부적응, 위기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시간 수업을 50분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시간 수업시간을 50분

에서 45분이나 40분으로 줄여서 운영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수업시간 원칙은 교육과정 고시 총론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시간을 운영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립형 대안학교 인가 기관인 소속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적용시기 문의

질의

- 10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이 적용되던 시기는 언제까지였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학생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2.30일 고시)이 적용되었던 시기입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궁금한 자료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초등학교 하루 수업 시수 증배 가능여부

질의

-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은 하루에 4~5교시, 3~6학년은 5~6교시를 편성하는데, 현장학습이나 수학 여행시 나이스 상에 표시 가능한 8교시까지 수업을 편성(실제 활동하는 시간에 알맞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작금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체험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활동 내용 시간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통상적으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도 통상적인 교육과정 일일 운영시수를 권장합니다. 다만, 당일 수업목표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일일 수업시간(3~6학년의 경우 5~6교시)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이상의 시간(예, 8교시)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유념하여야 할 것은 장시간 학습에 참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부담, 건강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9

2015년 5, 6학년군 사회과 편성 관련 문의

질의

□ 현 교과서는 5학년에서 역사영역을 배우고, 6학년에서는 일반사회와 지리영역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지리/역사 골고루 5, 6학년에 편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5학년 학생이 올해 5학년 교과서로 역사를 짚 배우고, 내년 6학년이 되어 새로 나온 개정 교과서로 사회를 배우게 되었을 때, 아래 질문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새 교과서에서 6학년에 할당된 역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복해서 배우게 되는 건가요?
2. (6학년에 역사가 편성됨에 따라) 5학년으로 내려가 편성된 일반사회/지리 영역의 내용이 생길텐데, 그럼 지금 5학년 학생은 그 부분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2015학년도 6학년의 경우, 역사 영역 중복학습 및 일반사회 영역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5학년 때 배우지 않은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용도서 적용 순서를 바꾸어 적용합니다.

- 6학년 1학기 : 지리 및 일반사회 영역(살기 좋은 국토, 우리 경제의 성장,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 6학년 2학기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참고로, 이 학생들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5학년 1, 2학기 동안 역사 영역을 학습합니다.

10 '진로와 직업' 교과명 문의



질의

-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교수·학습 방법에서 중등학생의 경우 '직업과 진로'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업과 진로' 과목은 없는 교과목 같은데요. '진로와 직업'교과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내용 중 '직업과 진로' 과목명 오타 여부 관련하여, 교육과정 문서를 인쇄하는 과정 중에 '진로와 직업'으로 오타가 정정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진로와 직업'으로 과목명이 바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해설서는 국가교육

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2009개정시기/ 중학교(2009.12)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자료 요청

질의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자료를 찾고자 합니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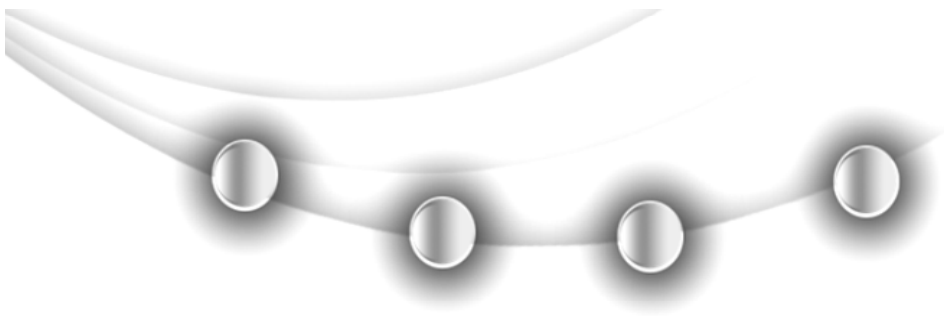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일 : 2013-07-03 9:34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귀하께서 요청하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에 관한 자료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VII. 대 학 입 시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특례입학 자격 문의

질의

- 안녕하세요. 중국 북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며 장기해외유학훈련중입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 북경한국인국제학교에 있으며 제가 유학을 마칠 시점(2014.8월경)에 아이는 2년 6월 체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특례입학을 위해서는 3년 특례를 위해 부득이 아내와 아이들이 따로 더 체류(6개월 가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2월말이라야 3년 특례조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2014년 연말까지 학기를 마치고 국제학교를 퇴교한 후(한국으로 전학 신청)그냥 체류만 더 하였다가 3년이 되는 시점(2015.2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체류기간이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새로 신학기 등록을 하고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2015년 2월말)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9 18:12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기본적으로 해외 근무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 민원인의 경우

- 1) 재학기간의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의 일반적인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상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2) 부모의 거주(여주) 및 체류기간-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3)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 4)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
- 5)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 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 등은 대학별로 자율 설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서 학생 및 부모 모두의 중첩된 체류기간만을 인정하는 대학들이 있사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입시요강 및 대학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응시자격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와 저의 처는 결혼 후 부터 20년간 직장관계로 주말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처가 경북 문경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하여 처가인 예천 및 문경에서 거주하면서 애들을 초등학교는 예천, 중 고등학교는 점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 요즈음 입시철이 되어서 대학 전형을 하는데 농어촌 입학전형에 신청하려고 해도 두부모 모두 같이 농어촌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농어촌 입학전형에 원서를 제출 못하여 애가 실망이 크고 아빠인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같이 다닌 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에 원서를 낸다고 좋아하는데 저의 애는 농촌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직장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 수시전형에 원서도 내지 못한 다고 하니 아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특별 전형 서류에 농어촌에서 다닌 초중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주소변동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제출토록 보완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 해당 부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 요건을 [농어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부모 중 한명이 동일 거주지에 계속 생활하고, 대상 학생이 초 중등학교를 농어촌에서 다

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원서제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없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9 14:48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거주 및 그 지역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대학에서는 학교 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모 동반거주 여부 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학 및 거주기간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의 경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하고 12년 농어촌에서 거주하였다면 부모거주 3년 또는 부모 비거주 12년일 경우지원 가능한 대학(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공주대, 광주대, 극동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대, 대구예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양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원대, 세명대, 수원대, 아세아연합신대, 안양대, 영남대, 영산대, 예원예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국제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영신학대 등46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 조정 요청

질의

-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재수생입니다. 저는 서울지역 대학들의 논술을 수시 전략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모두 논술고사 날짜가 거의 같습니다. 수능 보기 전 대학들은 수가 많지 않아 하루에 2번 보는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시험을 보면 그나마 소화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수능 후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하루에 5~6개 대학이 같은 날짜에 시험을 봅니다. 하루에 선호하는 대학이 3개 이상 있어 가고 싶었던 대학을 접수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이면 고등학교 출결도 출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너무 주말에만 몰지 않고 평일에도 시험날짜를 배정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08-02 15:39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권은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제34조),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 전형방법 등은 해당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또한 각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교협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하여 각 대학이 대입논술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논술 시험과 관련한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4 입학사정관제 전형 개선 건의



질의

- 올 8월말에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개선하여 발표된다고 합니다.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차선책으로 뒷돈을 들여가며,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봉사시간도 돈으로 사고, 그것을 주선해주는 브로커가 있으며, 해외 대회나 캠프에 나가서 상을 돈으로 받아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에 편법이 지배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9 15:41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민원인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올해 적용되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토익/토플과 같은 공인어학성적, 또한 교과 관련 외부수상실적은 제출하지 못하도록 모집요강에 명시했습니다.
- 특히, 민원인께서 지적해 주신 봉사활동 중 문제가 되는 해외봉사활동

실적 등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도 못하며, 이러한 내용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부족한 부분은 추가 검토하여 올해 8월 발표하는 방안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보다 더 충실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검정고시 출신의 만학도가 입학 가능한 학교 문의

질의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출신인 63세 입니다.대학교 졸업이 평생 한인데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대학교를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21 9:18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입학 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전화번호: 1600-1615)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2014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및 수시모집 대입전형 관련 책자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학비가 저렴하고 시간적으로도 유용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좋을 듯 합니다.

6

2014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2012. 12)2014학년도 기회균형 선발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 방안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내용 중 1페이지의 추진근거 및 경과를 보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다고 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다른 수급권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봤을 때,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만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며, 2호에 있는 수급자(급여를 받는 자)는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원 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자 증명서 상의 하단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2014학년도 기회균형 선발제 관련 차상위 계층 확인방안에 1번과 같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안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23 22:18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조 제14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두 번째는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 상위 계층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원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대학에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당연히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민원인께서 참고하신 자료는 ‘2014학년도 기회균형 선발제 차 상위 계층 확인방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구체적 확인방안을 제시한 것입

니다. 차 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자가 차 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 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 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 상위 자격 통지서, 한 부모 가족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대학은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7 대학입시 재외국민전형 중 영주교포 자격

질의

-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10년 학제인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현재는 필리핀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그동안 영주권이 없는 나라였는데 최근에 제한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닌 "은퇴비자" 라고 해서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서도 특별영주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아이가 필리핀의 은퇴비자(특별영주자)로 한국의 대학교에 재외국민의 영주교포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9-03 23:28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우선,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이 인정되어야 함.

-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각 대학의 장이 정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고등교육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정원의 2%의 모집 대상자와 '입학정원 제한 없음'의 모집 대상자로 크게 구분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 자격 기준에 의거 입학정원 2%이내 모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이란, 1)교포자녀, 2)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3) 해외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5) 유치과 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6) 기타 재외국민 7)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는 6) 기타 재외국민의 지원 자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여주군 행정구역이 여주시로 편입시 현중1.2재학생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23일자로 여주군이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현재 중1 .2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농어촌특별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서를 서신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교육부 농어촌특례 담당자와 통화 내용과 오늘 통화한 담당자와의 이야기가 다르고, 각 학교별로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9월22까지 먼 단위로 옮겨야 된다, 아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서신으로 문서를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1 18:10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농어촌특별전형에 관련하여 교육부에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96학년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따라 각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의 대상과 지원 자격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학생부와 학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의 장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편법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각 대학에 편법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입시요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이 학생,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요건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소 허위 이전 등을 통한 편법 등이 발견된 바, 이를 예방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하여 2016학

년도부터는 농어촌 거주기간을 6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으로 확대(학생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전예고 실시)함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안내하고 '15학년도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해당대학교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입학한 후 읍면승격(행정구역개편 등)시에는 재학 중인 학생은 주소변동 없을시 농어촌 자격을 유지합니다. 승격이후 입학하는 학생은 농어촌특별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안내드리며, 농어촌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전(행정개편 전) 읍면에 거주(주소 변동이 없을 경우)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특히, 행정구역 개편으로 변경된 후에 주소변동(옆집으로 이사하거나 등등)이 있을 때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재학하고 있는 1, 2, 3학년이 졸업 시까지 주소변동이 없어야 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읍 또는 면지역으로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거주(부모와 함께 거주사실 등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결정함)하면 2016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농어촌 특별전형이 6년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관련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9 수시 2차 전형료 환불



질의

- 수시 전형료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환불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맞는 행정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3-11-13 20:14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민원인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 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게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책정은 대학입학 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우리 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대학의 대입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자격시험이라면 원서접수취소와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대입원서 접수의 경우는 원서접수 기간 동안 매일 공시되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학교 및 모집단위 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한 번 접수한 원서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한 수험생의 특정 모집단위 지원과 취소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경쟁률의 변동이 심하게 되고 경쟁률 자체에 허수가 생기는 등 실질 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입시업무는 물론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에서도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대학의 대입수입총액과 지출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 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정시부터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계별로 반환규정을 정하고 전형료의 잔액을 반환 할 예정입니다.

10 대학 수시 지원 가능 횟수 문의

질의

- 대학 수시 6개를 신청하였지만 6개 쓴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 질문은 수시 6개 썼지만 수시지원을 6개 이상 더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3-12-04 18:03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수시 6회 제한으로 6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시 불합격시 정시에서 가,나,다 군별로 3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대학입학 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1600-1615)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외국 고등학교 졸업장 관련

질의

- 저는 23살 올해 군대를 마친 예비역남성입니다. 제가 고1부터 고3까지 칠레라는 타지에서 이민생활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칠레에서 가져온 졸업장이 효력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 민원 신청합니다. 가져 올 당시 칠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필증 도장을 받아 온 상태구요. 제가2015 수능시험을 치루고 대학에 사용가능 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09 17:02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이 인정 되어야 함.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첫 번째,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전부를 수료한 자란 외국에서 그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총 24학기, 학제가 다를 경우 23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초. 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22학기-23학기)의 초. 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합니다. 또한, 동일학년(학기)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 인정합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기관(시. 도교육청 및 각 대학)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또한, 각 대학의 대입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민원인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 설명센터 (<http://univ.kcue.or.kr/> 안내전화 1600-1615)에 탑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응시서류 제출 여부

질의

- 저희 자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업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학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 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고등교육은 사립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음.
2. 대학입학 절차요강을 보면, - 기회균형 선발특별전형으로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에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되어 있음 : 저희 자녀는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질문요지 :

-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은,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없는지요?
- 특수교육대상자는 기회균형 선발특별전형에 응시 할 수 없는지요?
- 대학입시전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12-31 15:38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은 2012학년도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었다가 전형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전형은 고교졸업(예정)학력을 소지한 사람은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는 달리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특정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수험생 본인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으로 장애인 증명서(보건복지부에서발행)가 있어야 합니다.
-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학입학 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제34조),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3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방법 문의

질의

- 고등학교를 졸업한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네요. 2015년도 11월에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수능을 지원(신청)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지원 후 나중에 시험은 어느 학교에서 보아야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어디로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수능을 보게 되면 지원하려는 대학에 입시원서를 작성 할 때 관할 인근 고등학교나 기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07 10:48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
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
항 내지 19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이 지침에 따라"시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 도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자체실정
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험시행공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2014.6-7월 중에 중앙 일간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에 공고합니다(주요 공고내용 : 시험일자, 시
험영역, 시험시간, 영역별. 과목별 문항수, 출제범위 및 출제비율, 기
출문항범위, 응시자격, 응시원서작성.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표
시 및 통지, 문제. 정답공개 및 이의신청, 기타유의사항 등)
- 응시원서작성, 접수방법-출신(재학)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학교를 통해 일괄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학교 또는
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응시자가 직접 방문접수(개별접수)
함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

른 관할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주소지 관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가능)

- 제출서류-응시원서1부(원서접수처에서 출력) - 응시수수료(원서접수 시 납부) - 신분증(원서접수 시 본인 확인용) - 여권용 규격 사진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또한, 학생선발권이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운영하므로 민원인께서 지원 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각 대학교에서 안내하고 있는 입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입학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http://univ.kcue.or.kr>:1600-1615) 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설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및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14 학생부 전형 외부 스펙 반영 문의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외부스펙에 대한 기사를 보았고, 그것에 따른 제기를 하고 싶어 딱히 전할방법이 없어 교육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여러 기사에서 보도를 잘못된 것인지 여기저기서 얘기가 달라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외부스펙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해를 올해부터가 아니라 최소 3년 전부터라도 대입입시 제안을 내놓고 그 뒤에 차차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입시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교육부 측에서도 현명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학생들을 잘 통솔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24 17:12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우선 민원인께서 인지하고 계신 ‘자기소개서에 교외활동의 사항을 기재하면 서류평가 0점을 준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해 드립니다.
- 「대입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는 자가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외부 수상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을 경우 입시전형 서류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교육부에서는 공인어학성적, 영어/수학/과학 경시대회와 올림피아드 수상 등 외부 실적만 제외되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학교장 승인 하에 이루어진 비교과 외부 활동들, 그리고 학생 스스로 행한 외부 활동들(예를 들면, 곤충채집을 좋아하는 아이가 스스로 한 곤충 채집 활동들,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한 동아리 활동, 박람회 등 참관활동, 독서활동 등)은 지금처럼 기재가 가능하며, 기존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어학성적과 교과관련 외부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이던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해당됩니다.
- 특기자 전형 등에는 기존처럼 모든 스펙기재가 가능하오니 민원인께

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입학 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1600-1615)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설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및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15 대학입학 시험 수시, 정시 지원 횟수에 관한 질의

질의

- 2015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치는 금년도 수시와 정시시험에 대해 질의 하고자합니다
 1. 금년에는 수시와 정시의 시험원서 횟수가 수시 4회, 정시 2회로 변경되었다는 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갑자기 시험 횟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입 재수생의 학부모로서 대입 시험기회가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학생들의 시험 칠 기회의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제한으로 시험 치라고 해도 필요 이상은 원서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될 것 알면서 원서를 접수 하는 학생(학부모) 없습니다.
 2. 시험원서 접수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수시 4회, 정시 2회라고 고정하지 마시고 수시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시최대 6회까지 내고 정시에 자신 있는 학생은 정시 최대 6회까지로 해서 총 6회 내에서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시험을 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예:수시 2회, 정시4회, 또는 수시3회, 정시3회 또는 수시 6회, 정시0회)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입학시험 선택권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07 14:55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민원인께서 알고계시는 원서접수 횟수가 아니라 각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 할 때 전형의 수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원서접수 횟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수시원서 접수는 6회, 정시가,나,다군 3회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시에 합격 및 예비합격자도 정시에는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학입학 정보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1600-1615)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설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및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6

대입지원 시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질의

질의

□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현재 고2로 내년(2015년도)에 대입시험을 치르는데요. 현 거주지역이 2013년 07월경 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2월경에 전세로 8년간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동일지역내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 저의 자녀가 2016년도 대입시 농어촌전형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 이럴 경우 첫 번째 질문 -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없지요?

두 번째 질문 - 만약에 농어촌 지원이 안 된다면 저의 자녀 같은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이사를 한 이유로 같은 지역 내 다른 학생과의 차별이 발생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 집니다. 이럴 경우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04 15:53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각 대학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은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 재학기간, 학생거주지, 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

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의 "입학전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우리 부에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회의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대학 입시 전형 중 고른기회(다문화가족자녀 자격) 문의

질의

- 입시전형 중에 고른 기회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 상 위계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세 자녀가정 자녀, 한 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등이 대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대상(자격)을 외국적 부(모)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법 즉 다문화지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문화구성원 즉 부모, 자녀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부(모)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뿐만 아니라, 출생 시 부터 한국국적을 가진 자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한국대학에서는 고른 기회유형에서 외국적 부(모)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자녀를 그 대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엄연히 저희도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게 고른 기회유형과 같은 입시 제도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다문화가정임에도 누구는 되고 누구에게는 되지 않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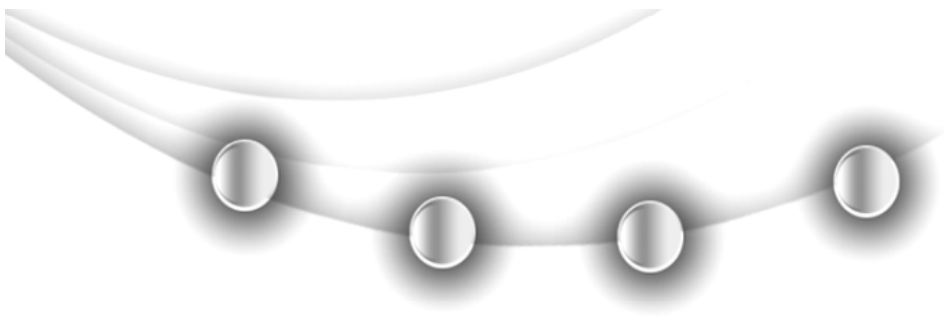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 회신일 : 2014-04-14 18:35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각 대학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바, 각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교육 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경희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대입정책수립 시 대교협 및 각 대학과의 협의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VIII.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고3 재학 중 군입대시 출결 처리방법

질의

- 고3재학 중 11월 18일 일자로 입대를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입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는 공고에서 12월에 입대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입대를 하고 나면 출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09 15:24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우리 부와 국방부, 육군본부는 특정기술과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군전투력 보강을 위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육군 부사관 입대가 가능하도록 협의(단, 전문계학과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고의 경우 지원시기 등에 제약이 있음)하였습니다.
- 또한 군복무확인서를 현장 실습 인증서류로 대체하여 교육과정 이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육군 부사관이 아닌 일반병으로 입대할 경우 교육과정이수 및 출결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해당 학교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스터고 이중 지원에 대한 문의



질의

- 지난 1학기에 경남 진주소재 항공과학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낙방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에 여수소재 여수 석유 화학고를 지원하여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학교로부터 이중지원으로 인하여 여수 석유 화학고 지원 및 입학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매우 상심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과 일정이 다른 경우에도 여러 마이스터고 중 한 학교에만 지원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10-29 17:23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1개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마이스터고 간 모집 일정과 상관없이, 1개의 마이스터고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타 전기학교(타 마이스터고, 외고, 과고 등)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에 응시한 학생이 여수석유화학고 입시전형에 재 응시한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 되며, 이중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 기본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제한에 따른 입학전형 응시생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 및 여수석유화학고는 입시요강에 이중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근거자료 붙임 참고)하고 있으며,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성화고 취업률에 관해 통계 관련

질의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혹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19 9:30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매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는 교육통계서비스(<http://seci.kedi.re.kr>)에 유·초·중등통계-주제별분석-졸업-고등학교항목에 가시면, '고등학교 연도별 졸업 후 상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사이트에서 개별 학교명으로 검색하시면 학교·학과별 취업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규정에 대한 민원

질의

□ 이천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규정에 대한 민원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5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학교급간 차별배점에 의한 진로 진학 상담교사 선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로 진학 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 직무와 특성을 반영하되, 진로 진학 지도경력, 관련 분야 교육이수, 전문성,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정하고 진로 진학 상담교사를 선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시·도교육감이 세부배점기준, 선발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진로 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하는 사항으로, 진로 진학 상담교사의 선발은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2014.3.1.자로 배치 발령하고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잔여 재직기간 7년 이상 선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로 진학 상담교사 선발 시 배치 후 7년 이상의 재직 가능기간을 고려하는 기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준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 진로 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한 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1일 기준으로 기존 교과자격을 유지한 상태

에서 진로 진학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학교에 배치하고, 8월말까지 실시하는 부전공자격 연수를 통해 진로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9월1일 기준으로 진로 진학 상담교사로 교과 전환발령을 하고 있어, 진로 교사 자격취득은 9월1일이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부전공 자격연수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막대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소요되어 진로 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진로 진학 상담교사들의 심화연수 등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진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취득 후 진로 진학 상담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7년간의 잔여 재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5

진로·진학 상담교사 추가 선발 모집 문의

질의

-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선발 모집 문의

회신

회신일 : 2014-01-20 11:26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진로 진학 상담교사 선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로 진학 상담교사는 2014년까지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94.5%)에 배치가 완료되며, 소규모 학교·도서벽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별 1명 배치가 아닌 순회(겸임)교사형태의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진로 진학 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선발계획은 진로 진학 상담교사의 자연 감소(퇴직·승진·휴직 등)인원 및 미배치학교에 배치를 위한 선발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규모 학교 추가배치를 위한 선발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의 강력한 변화 필요

질의

- 진로 진학 상담교사 제도의 강력한 변화가 필요

회신

회신일 : 2014-02-11 14:50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진로 진학 상담교사 선발제도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로 진학 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진로·진학 관련학생 상담 및 지도 등 학교의 진로 교육을 총괄하는 교과교사로서, 교과 교사 자격을 갖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진로 진학지도 경력, 관련분야 교육이수, 전문성,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4년까지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의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사대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진로 지도 역량강화를 통한 진로 진학 상담교사 선발 등 다각적인 양성 및 선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 계획

질의

-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계획

회신

회신일 : 2014-02-17 10:45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배치를 위해 2013년도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대상자 총 718명을 선발하여 2014년 1월부터 자격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15년에 배치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선발은 올해 이루어질 계획이나, 올해부터는 시도별로 교육감이 자연감소(퇴직·승진·휴직 등) 및 미배치 학교에 대한 배치 등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 계획을 수립·공고할 예정입니다.

8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현실과 문제점

질의

- 진로 진학 상담교사의 현실과 문제점

회신

회신일 : 2014-03-05 18:56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우선, 진로 상담 교사의 시간배정과 관련하여, 상담은 최소8시간(수업시간인정권장)은 하시고, 과목수업은 10시간 이내 배정하라는 기준이 있으나 시도별 상황,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 상담선생님께서 현장에서 학생의 상담에 매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로 상담 선생님의 상치과목 배정, '진로와 직업' 과목의 일정 시수 편성 관련하여 진로 선생님들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학교 내에서 진정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

청소년 행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질의

- 청소년 행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회신

회신일 : 2014-03-17 14:40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의 비전 하에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넷에 무료로 다양한 진로심리검사('14년 10종) 서비스 및 사이버 상담 실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개인별 상담 내실화 -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보급 -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현장직업체험을 각 1회 이상 하도록 지원하고 진로캠프,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를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연수 제한 시정 요청

질의

-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제한 시정 요청

회신

회신일 : 2014-04-02 18:19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전문상담교사를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현 교원자격검정령에 제한이 있는 사항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부내 '교원연수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귀하의 의견대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원칙과 충돌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현재 교원자격검정 규정 상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에만 부전공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에는 전공 과목명이 없기 때문에 부전공 과목 표기가 불가능하며, 유치원, 초등, 초등 특수교사는 부전공 자격 연수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이는 비교과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고견은 부내 업무 소관과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학부모 대학진학 상담사 과정 개설요청

질의

- 학부모 대학진학 상담사 과정 개설요청

회신

회신일 : 2014-04-11 14:41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우리 부는 자녀 진로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학부모 연수 지원 및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 주관으로 학부모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진로교육 아카데미 연수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과정 연수를 통해 자원봉사 형태로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사를 보조하여 진로체험 및 캠프 도우미, 진로 상담 및 검사, 직업소개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니, 학교 및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매주 드림레터를 제작하여 단위 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야기 방식의 오디오 팟캐스트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를 매일(월-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빵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커리어넷(www.career.go.kr), 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진로교육이나 대학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MACOS 운영 및 개최 추진에 대한 컨설팅 요청

질의

- MACOS 운영 및 개최 추진에 대한 컨설팅 요청

회신

회신일 : 2014-04-18 17:29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청소년의 정치의식 함양과 정치 체험을 위한 귀하의 적극적인 노력

을 치하하며 더불어 귀하가 추진하고 있는 MACOS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귀하와 같이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진로를 체험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초중고 진로체험 동아리 공모전"과 "진로체험 우수 동아리 선정"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 진로체험 동아리 지원이 특정 단체나 학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장관님의 격려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교사 및 학교의 추천이라는 공정한 기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소속 학교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진학상담부장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지도교사를 배정받아, MACOS 운영 및 개최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로체험 동아리 공모전" 및 진로체험 우수 동아리 선정에 응모하면 장관님의 격려와 재정적인 지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동아리 이외에도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응모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13

부전공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도 진로 부전공 자격 대상요청

질의

□ 부전공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도 진로부전공 자격 대상요청

회신

회신일 : 2014-04-15 13:13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진로진학상담' 과목 신설과 그에 따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자격취득, 배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2013.5.)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부전공자격 연수대상은 "현직교사로서 중등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진로교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자"로서 교사 경력 등 추가적인 제한 및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이하 진로교사) 부전공자격 연수대상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현직교사로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이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진학의 상담 역할 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택과목 수업 및 창체 진로활동 지도,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지도,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중등 표시 과목교사로서의 교수학습 경험 등 직무특성상 충분한 교직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진로교사 연수 자격 기본 기준을 중등2급 정교사로 완화하는 것은 신규교사 및 교직경력 3년 미만의 교사를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의 전문성과 현장에서의 노고를 고려하여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현직 표시과목 교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상담교사도 '진로교사 부전공 연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배정된 진로교사 인원 이외의 수로 '진로교사 부전공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학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 및 관리 제안

질의

-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학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 및 관리 제안

회신

회신일 : 2014-04-18 13:40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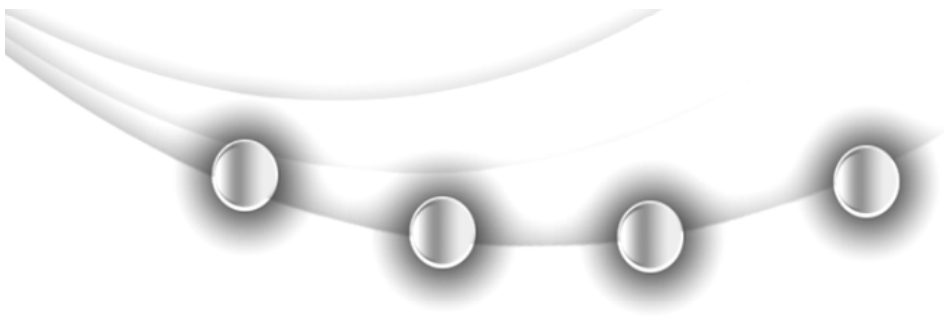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 귀하가 보내주신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학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을 교육지원청(178개) 단위로 조직하여 지역기반 직업 체험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한 체험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험처와 체험을 원하는 학생을 매칭시키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생들에게 원하는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듯, 학생들의 직업체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업, 관공서, 마을 가게·시장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과 시간의 봉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서울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락처를 보내드리오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Ⅸ. 국 제 교 육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해외 유학생의 국비 장학 지원 여부

질의

- 2013년 7월에 호주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할 돈이 없어서 여기 저기 장학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미 합격을 한사람도 장학금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 글을 읽었는데 방법은 안 나와 있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외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도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정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호주 시드니 대학 박사 과정’ 장학금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호주의 경우 엔데버 프로그램 (<http://www.endeavourawards.or.kr/>)에 합격한 장학생에 한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엔데버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원하여 합격했다면 장학금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한시적으로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호주정부에서 기획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은 지속되지 않고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원에서는 호주정부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묘안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영어권 장학금은 Fulbright재단, 영국의 BritishCouncil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쿠웨이트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자격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이라고 합니다. 한국외대 아랍어과를 1년 마친 후 군휴학 중이고, 현재는 군인신분으로 군 생활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내는 까닭은, 제가 입대하기 전부터 지원하고 싶었던 [쿠웨이트정부초청장학생](cf.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첨부파일 참조했습니다.)에 관하여 의구심이 생겼는데, 이리 저리 선배님들이나 지인들 통해 알아보려 해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 마침 선발요강에 쓰여 있는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메일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가 지금 1학년만 마치고 바로 입대를 했지만, 고2때부터 아랍어를 시작했고 1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2학년 진도까지 혼자 예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3학년 과정까지 스스로 공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련의 목적은 쿠웨이트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함이고, 거기 가서도 더 수월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선발 요강 중에 마. 아랍어(아랍학)관련 학점을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아랍어(아랍학)관련(비)정규과정을 225시간 이상 이수

한 자 우선선발. 전 1학년만 했기 때문에, 아랍어 관련학점은 16학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랍어 관련 (비)정규과정을 많이 채워서 선발 조건에 더욱 근접해 지고 싶습니다.

- 이 (비)정규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혹 지금까지 합격자들 가운데 그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한 건, 사우디 문화원에 가서 배우는 것 정도인데. 그것도 이 조건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전 2015-2016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먼 일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완벽히 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메일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군복무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바쁜 가운데 전공하는 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셨으니 잘 준비를 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외국 정부 초청장학생사업업무 담당자 ○○○연구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쿠웨이트 정부 초청장학생 어학연수생 모집에 대해 참고가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쿠웨이트정부에서 초청하는 어학 연수생은 1년 과정이지만 아랍어 학 연수생에게 인기가 있어서 경쟁이 심한편입니다. 현재까지의 선발기준은 아랍어 학점(학점당 2점), 성적평점(200점 만점)으로 취득점 수순으로 선발합니다. 2013년도 선발은 아랍어 학점60학점 이상, 평점4.0 이상입니다. 아랍어 학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로 3학년 이상이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참고로 어학연수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비정규과정의 경우 20시간 이수를 1학점으로 인정하며, 주한 사우디문화원의 과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랍어권 장학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오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습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정보공개->공지사항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 공고

3 사우디아라비아 단기초청연수 자격

질의

-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원 201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초청 단기연수 장학생 선발 안내에 대한 공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지원자격: 나. 현재 대학교 2-3학년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서 성적 평점 3.5 이상자를 보면 대학교 2-3학년 재학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2014 사우디아라비아정부초청 단기연수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학년 제한은 1, 4학년을 제외한 재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나. 2, 3학년의 경우 2014년도에는 3, 4학년이 되므로 단기 연수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 이러한 제한은 사우디 측과 협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귀하께서는 내년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금

질의

-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금이 원래 11월 달에 공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초에 공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지가 늦어지는 거 같아 언제쯤 공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장학생 모집에 대해서는 아직 모집요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모집 의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원의 모집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원 홈페이지 주소접속 www.niied.go.kr ->정보공개->공지사항->외국 정부 초청장학생 모집공고

5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선발자의 증명서 발급

질의

- 2010년 중국정부 초청장학생에 선발되어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입니다.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2010년 국내 교육 시 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외국 정부 초청장학생 선발관련 증명서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 홈페이지 주소접속 www.hurik.go.kr ->회원로그인(회원번호 CS0*****,생년월일*****)->○○○정보수정 및 입력->증명서신청

6

병역 미필자의 유학생 지원 가능여부

질의

- 90년생 병역미필 남학생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여권이 만료되는데 '러시아정부초청 장학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본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3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요강, 10.기타사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1차에 합격한 후 2차에 제출하는 서류 중 '여권사본' 상의 여권유효기간이 러시아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되어야 함.

◆ 공무원 및 병역미필자는 유학 가능여부를 각각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

□ 따라서 먼저 병무청에 유학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유학에 대한 선발 일정이나 자격은 본원의 모집 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 정보공개-> 공지사항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7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연령 폐지 건의

질의

□ 안녕하세요.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나이제한이 없어질 수 있는지 여쭙어 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등에서 연령 제한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위 선발과 관련하여 나이

제한은 왜 없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나이제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초청의 경우 장학생 자격은 중국정부에서 정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정부초청장학생인 외국인의 유학 자격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연령 불합치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른 질문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일본 전수학교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과 나이제한 문의

질의

- 장학금 지급이 시작되는 해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현재 대학재학생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나, 일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FAQ를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Q1)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이라면, 만18세부터 만21세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 맞나요?

Q2) 현재 대학재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선발완료 후에 현재의 대학을 중퇴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일본 문부성초청 연구 장학생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Q1)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이라면, 만18세부터 만21세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 맞나요?

->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기간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1993.4.2~1998.4.1 출생자입니다.

Q2) 현재 대학 재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선발 완료 후에 현재의 대학을 중퇴해야 하는 건가요?

-> 중퇴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휴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9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시 복수전공자 가능 여부

질의

- "[학생 및 교원 국제교류] (내용추가)2014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선발 공고"를 보고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원전공은 철학이고, 복수전공으로 중어 중문과를 하고 있는데, 복수전공이 중문과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복수전공 중어중문어과'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 초청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HSK점수 및 영어 점수공인인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정보공개->공지사항->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 공고

10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응시 자격

질의

- [학생 및 교원 국제교류] (내용추가)2014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선발 공고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선발 요강에 보면, "양국(중국,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대학포함)에서 제공하는 학비를 지원받아 6개월 이상 유학 및 연수경험이 있는 자(자비유학 제외)", "교환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학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신청 제외대상자임"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중국 대학에서 4개월 조금 넘게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 어학연수를 갈 때 한국 학교에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중국 학교에는 학비를 따로 내지 않고, 등록금을 낸 후에 한국 학교에서 나중에 소정의 장학금을 줬는데 이것도 학비를 지원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학비를 지원 받은 것이라고 볼 경우에, 제가 6개월 이상 갔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신청 제외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북경 어언대학교에서 본과 수업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건가요? 본과 수업을 듣는다면 북경 어언대학교 내에서 어떤 과를 전공으로 해서 듣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국 대학에서 4개월 어학연수(교환학생)를 다녀 온 경우에도 제외 대상자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어학연수를 다녀 온 학생은 자비유학으로 해석하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 북경 어언대에서 본과 수업을 듣나요?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나요? 본과 수업을 듣는다면 북경 어언대학교내에서 어떤 과를 전공해서 듣게 되는 건가요?

→ 본과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학연수과정을 듣습니다. 어언대에는 다수의 외국학생들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 분반고사(중국어능력시험)를 통해서 레벨별로 중국어 상반, 중반, 하반으로 반을 편성합니다. 각 반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지정하여 5개월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필수과목은 중국어중급 등의 어학과정이며 선택과목은 무역, 작문, 인문지리, 독해 등 교양과 어학을 연계한 과정으로 어언대에는 매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추후 합격자 대상으로 사전연수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11 중국 유학 관련 정보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중국유학을 꿈꾸던 중 중국 국가 정부 장학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중국 주한대사관, 대사관 교육처, 중국 대학교, 주중 한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에 계속 문의를 했고 메일을 보내고 계속 했지만 중국 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며 모두 서로에게 떠밀어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미 거의 마감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와 중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다고 하는 장학금 (奖学金资助证明)을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위해 공증을 받느라 부모님께는 안 그래도 가정환경도 넉넉하지 못하는데 거의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쓰셨습니다. 물론 이런 서류를 준비 하는 게 처음이라 늦게까지 미뤄진 탓도 있겠지만 이런 일에 서로 떠밀며 자기들이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는 분들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고, 다음에 또 다시 저 같은 사람이 없길 바라며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학부생의 중국 정부 초청 장학생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장학생 초청제도는 약10여 종류가 있으면 초청하는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공자아카데미, 각 대학, 대사관, 중국의 현, 각국의 지정된 협력기관 등에서 선발을 하며 총인원은 연간 수 만 명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www.csc.edu.cn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사이트가 안 열리면 영어를 클릭 하십시오.)

- 문의하신 학부 유학생 장학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부 유학생에 대한 규정은 좀 까다로워서 선발되려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언어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일 어학 연수부터 시작한다면 전공에 따라 1~2년간 어학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드물지만 Asiascholarship에 참여하는 7개 대학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4월경에 모집공고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대학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로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asia-edu.org/> 접속, 대학별 정보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함. 또한, 학부생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하고 싶다면 먼저 중국어를 학습하는 공자아카데미에 알아보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자아카데미의 학부과정은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요원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원에서는 중국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석박사 과정생 약20명을 선발하여 상호 파견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원 홈페이지 주소 접속www.niied.go.kr->정보공개->공지사항->중국 정부 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12

중국 유학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 장학금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현지 상해중의약대학교 본과 졸업 예정자인 한국 유학생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석사과정을 준비 중인데요. 얼마 전에 '중국정부장학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장학금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상관없습니다.)
- 2) 만약에 제가 석사과정을 시작한 뒤(입학 뒤), 내년에 있을 '중국정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 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1) 제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장학금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상관없습니다.)
- >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은 아시아포럼 장학금이 있습니다만, 중의학분야는 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관

리기금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포럼 장학생 프로그램으로서 중국 내의 대학교를 지정하고, 협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서 선발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과 대학을 선택하여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http://www.asia-edu.org/> 접속, 대학별 정보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함.

- 2) 만약에 제가 석사과정을 시작한 뒤 (입학 뒤), 내년에 있을 '중국 정부 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국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국(중국국가 유학 기금 관리 위원회) <http://www.csc.edu.cn>
 나. 본원 홈 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 -> 정보공개-> 공지사항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13 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 선발 시 나이 제한

질의

- 문부과학성 초청 연구 장학생에 교원장학생으로 신청을 희망합니다. 현재 문부과학성 초청 연구 장학생의 모집 요건이 도일시 만 35세 이상, 교직 경력이 만 5년 이상인 교원을 모집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교원들의 최초 임용 연령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남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직경력이 동 연령의 여자보다 군복무 등의 현실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교원들의 유학 관련하여 만 2년의 교직경력으로 유학휴직이 가능한 형편, 재외 교원 파견 등 역시 만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문부과학성 초청 연구 장학생은 만 5년의 교직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만 5년의 교직경력을 지난 후, 만 35세 이하의 연령을 가지기엔 다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 장학생의 경우, 만 5년이란 교직경력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요구하는 교직경력인지, 우리나라에서 만 5년을 설정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설정인 경우 만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팀]

- 우선, 교직에서 봉직하시는 남자 교원분들이 일본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일본 문부성 초청교원 연수생의 연령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일본 문부성 초청 교원연수생에 대한 연령 제한은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정한 제한입니다.
- 2. 2014년도 기준은 잘 아시는대로, (1)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35세 미만인 자(1979.4.2.이후출생자) (2)국·공·사립초·중등교원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교직실경력 소지자 (4.1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 3. 이 기준은 일본정부에서 정하여 타 국가와 동일하게 시행하므로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연구 유학생도 만35세 미만, 기타 외국인 학자 초청 프로그램도 학위를 받은 후 6년 이내의 외국인만 지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본 대사관과 다시 협의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4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관련문의

질의

- 국적, 외국거주요건 없이 학생모집을 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도 초·중·등 교육법 60조의 외국인학교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차이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 국적, 외국 거주 요건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도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 외국인 학교에 해당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3-09-10 8:4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자녀나 3년 이상 해외거주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외국거주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외국인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나.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의 차이점

- 현행 법·제도상 ‘국제학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다국적의 학생들이 외국인 교원에게 외국교육과정에 따라 외국어로 수업을 받는 학교, 즉 ①외국인학교, ②외국교육기관, ③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통칭하는 의미로 인식됩니다.
 -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를 줄여서 통상 ‘제주 국제학교’로 칭함.
- ①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②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관련

질의

- 1.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외국인 학교는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사 등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어,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필수인가요? 학교별 선택 사항인가요?

3. 외국인 학교, 외국 교육기관, 제주 국제학교 모두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9-10 8:4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1.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각종 학교에 해당하여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나, 동법 제60조의 2에 의하여 장학지도, 학교평가, 교육과정 등 일부조항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 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주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5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라 동법 제23조(교육과정)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국내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은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주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6

중국 학생 한국유학 할수있는 학교와 유학방법

질의

-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노인학회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한국학교로 유학. 방법. 조건. 준비절차를 자세히 연령별 학교별 입국 입학하여 유학을 마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각 학교별로 파일로 받았으면 합니다. 중문 파일이면 좋겠습니다. 중문이 안 된다면 영문이나 순수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서 번역 후 전달하고 진행을 돕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0 8:4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국내 대학에 대한 유학 정보는 한국 유학 포털 안내 사이트 (www.studyinkorea.go.kr)의 유학정보 가이드북(Guide Book)을 참고하시고, 대학별 입학정보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종합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대입정보 포털사이트(<http://univ.kcue.or.kr>)의 진로진학정보의 입학 관련 자료실(122번 201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의 발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초등학생 인정유학 조건

질의

- 본교 초등학생 중에 한명이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11월~4월까지 본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4~11월까지는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닙니다. 아이 부모님이 미국 학력과 한국에서 학력을 둘다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경우 인정유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0 8:4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유학 인정의 범위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에 의하여 “부친·모친 등 부양 의무자 중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다만 “부친·모친 등 부양 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로 제한하고 그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자료(해외 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 등록부 등 본상의 체류기간 / 외교통상부)또는 실 체류기간(출입국 사실증명서/시·군·구 등, 출입국관리 사무소), 재학기간 등 확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 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 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 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유학기간의 계산은 역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교육장이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정당한 해외 출국일 경우는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기간(출입국사실 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8 외국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 문의

질의

- 1. 외국 대학의 분교를 한국에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요건과 절차는 어떠한가요?
2. 외국 대학의 분교가 한국에 설립되면 입학정원에 한국인 비율 제한을 받습니까?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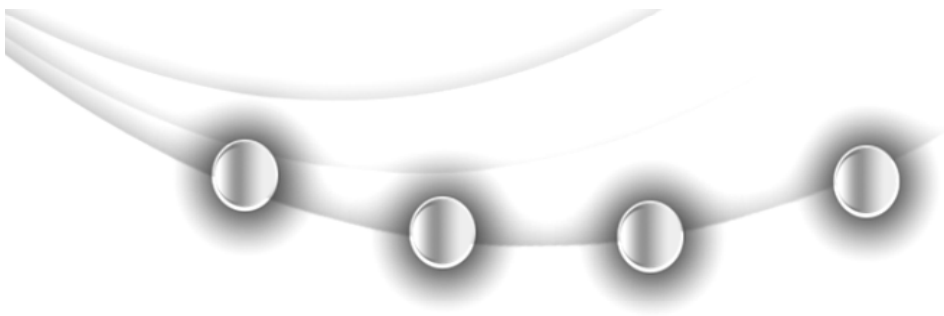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일 : 2013-09-10 8:4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1. 한국에서 외국학교의 분교를 설립하려면 「경제 자유 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isi.go.kr>) -학교설립-외국 교육기관에 탑재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경제 자유 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학생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원의 20퍼센트 내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의 추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X. 교육청 및 지방교육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지방공무원 위생원의 위험수당 지급 시기

질의

-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위생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9.각 부문 다호)에 의거 당해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위생원의 경우 해당업무 분장으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방학기간 중 위험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험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1 15:5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8],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험근무수당은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관련 법령해석 자료 관련

질의

-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인사실무 전보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0 22:1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안행부에 재문의, 법35조제2항의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현재 주소지를 제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모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교행 일방 전입



질의

- 저는 지방 일반 행정직이고 인사 교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지방 교육 행정직입니다.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직렬이 다르므로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교행직을 일방 전입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일반행정직 일방전입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무자입장에서 인사교류하면 간단한데 일방전입전출 번거롭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가능한일이고 교류(사실상)상대방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09 16:27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에 근거한 희망 인사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 직렬 및 동일 계급(직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말씀하신 교육행정 직렬과 일반행정 직렬간의 교류는 직렬이 상이하여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에 의하여 교육감은 소속 지방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상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교육청에서는 인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에 관한

별도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4 공로연수중 겸직허가 여부



질의

- 공로연수 중인 지방공무원(교육행정)이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퇴직시까지 무보수) 채용되어 근무를 할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요?

회신

회신일 :2014-01-23 17:2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시·도교육감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공로연수에 임하게 되므로 연수 기간 중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행위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의 이 두 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문의하신 내용이 영리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겸직허가 여부 등은 상기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시·도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5 전보 제한

질의

- 지방공무원의 전보제한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무원끼리 교류 시 3년이라는 전보제한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4-04-29 18:1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올해 법이 개정되어 전보제한이 없어진 건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되신 분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의 개정으로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끼리 교류 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당해 기관 또는 당해지역에 임용된 지 3년이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지방공무원의 복무중 검직 허가에 대하여

질의

- 본교는 사립학교로서 정관에 지방공무원의 근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리업무는 복무규정 상 금지되어 있으니 겸직허가는 영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1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의 절차상 신청인 본인에게 허가를 하는 것인지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 겸직허가서를 보내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근무자는 학교 행정실장) 기관으로 부터 겸직요청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4-06-12 17:3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공무원이~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관장이 해당 당사자에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겸직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2항),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의 기간, 허가여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문의

질의

- 시·도교육청간 교류 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근무 예정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 경쟁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결로 되어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타·시도(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개채용 공고 시 본청과 제2청사로 구분하여 공고를냄)와 달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의 세부기관(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규임용(공개채용)공고를 합니다.
- 이렇게 세부 구분 없이 광역자치단체로만 채용공고를 내고, 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임용 후 3년이 안 된 시점(시보 임용기간 경과 후 바로)에 시·도간 교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3년이 경과되어야 시·도간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30 17:4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인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안전행정부, 2013)에 따르면 현재 주소지를 제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모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전보·전출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용 후 3년이 경과 되어야 시·도 교육청간 교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8

육아휴직중 대학원 수학 가능여부



질의

□ 육아휴직 중 일반대학원 또는 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16 17:1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하는 휴직으로 민원인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당초 육아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더라도 그 내용도 진실에 부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의 대학원 수학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9

기술정보수당 및 연구업무수당 관련



질의

□ 2013. 12. 12. 직종개편이 되어 조무 직렬이 시설관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별정직이 연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연구직)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17 16:5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9] 따르면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중 가)와 나)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사무직렬 전산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 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내의 유사직렬로 전환 전, 관리운영직군으로 포함 시(사무직렬 제외) 해당 기술 분야에 직접 종사자가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연구업무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기 동 규정 [별표9]의 3. 연구업무수당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제2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연구업무수당이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

지방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관련 질의

질의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9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휴직의 제한)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판단하기에 애매해서 여쭙습니다.

※시설직렬(건축)이 '석면'관련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은 업체에서 근무 가능한지 여부 : 석면업무가 업무분장상 '보건'으로 되어 있지만, 석면과 연관 있는 텍스, 화장실칸막이 설치 등은 시설과에서 진행 업무연관성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4-01-24 17:4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9(휴직의 제한)에 의하여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법령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과의 업무 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과 (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는 해당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직 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 등 (이하"사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2009.2.3]
[제목개정2011.10.28]

11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복무 후 대체휴무 관련 질의

질의

-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 시 다음날 휴무와 관련하여 3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의하면 공휴일에 근무 시 다음 정상일에 휴무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개표 사무원으로 선거일에 근무하였을 때 휴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개표 종료 시간(자정 24시)과 관계없이 휴무를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 휴무를 준다면 공가, 연가, 특별휴가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15 18:3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제2조(공휴일)제10의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첫째와 둘째 질의 사항은 상기의 법령을 근거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는 사안이며 셋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가, 연가, 특별휴가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가, 연가, 특별휴가 등의 공무원의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지방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부터는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휴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소문으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휴무로 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공문이 안 오기 때문에 휴무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시다만 제가 다른 교육을 가서

또 다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14 18:3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현재 학교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에 근거하여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의 제2조에는 각종 공휴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은 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2조에 의하여 토요일은 휴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휴무일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8호, 1994.3.9.)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자격(응시요건) 질의

질의

-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능9급(사무) 직원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올 10월 25일에 있을 시험에 응시하고자 교육청으로 알아보니 사무운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며 올해 시험을 보려면 4월 25일 이전에 복직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정말 기능직(사무)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21 18:3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안행부 예규 53호, 2012.12.12)에 따르면 전직시험 응시대상자의 응시요건은 전직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9급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만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 지방공무원 직렬 문의

질의

- 이번 입법 예고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 사무직군 조무직렬 공무원을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직렬을 신설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안을 보고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기술직군내에 기존에 있는 시설직렬과 새로 신설되는 시설관리 직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번째 시설관리 직렬의 채용시험 과목이 국어,

국사, 사회 3과목인데 기술직군 채용 시험과목에 기술직군과 연관된 시험과목은 왜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8-05 17:4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는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 조무직렬은 일반직 기술직군내 시설관리직렬(별도직렬)로 무시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험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안행부에서 3과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안행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법령 개정 시 검토될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받으신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2013. 07. 30 일 기준) 뉴스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이 발표 되었는데
1.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구체적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등이 의문입니다.
- 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전용회화강사'들은 1년 계약씩 4년

에 걸쳐 단위학교별로 근로계약이 형성됩니다. 이때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2013.07.30)'에서 말한 '강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의문입니다. 영어회화 전용강사들도 한 학교에 1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전환된다고 하였을 때 사립학교장이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한 영어회화전용강사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다음으로 이런 발표 자료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 지요? 행안부, 노동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그 발표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기사문이 아닌 정부에서 발표한 정식 발표문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2 18:1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금번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된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의 범위는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담당(기간제 교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사 직종은 제외)하지 않고 행정사무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동 대책의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 전일, 시간제,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 등이며, 향후 국가 및 시·도교육청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월경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원인께서 받으신 답변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16 조무직렬 공무원 구조조정 요구

질의

- 안행부 관계자 당신들이 제 민원을 개무시 해서 민원 다시 올립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민원 이관시키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한테 민원 넣은 거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학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일반국민임을 밝힙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무직렬 공무원들 구조조정 반드시 하십시오.
- 교육청 소속 조무직렬 방호직렬 공무원들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요새 말이 많습니다. 정작 안행부는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조무직렬, 방호직렬 공무원 구조 조정하십시오. 제가 잠깐이었지만 학교에서 근무해서 이 분들 어떤 일 하는지 전부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개잡부 노가다꾼들이죠. 이분들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에 어쭙잖은 노가다 잡부 시다가 하는 일들 빗자루질 시설관리라고는 하지만 어썰픈 일들 시설관리가 뭔지는 아십니까?
- 시설관리업무는 전기+기계+가스+보일러+영선 업무를 통틀어서 하는 거고 그걸 다 일컫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아파트형공장 가보십시오. 거기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 전기기사, 기계기사, 아니면 기전기사로 구분

됩니다. 백화점만 해도 다 그렇게 나뉩니다. 거기에 통신실 따로 영선실이 다 따로 있죠.

□ 학교는 이런 거 죄다 필요 없습니다. 전기는 전기업체에서 소방방재는 방재업체에서 다 합니다 기계요? 학교에는 보일러기사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상 영선업무로 일컬어지는 수선하고 환경미화해주는 바깥 나무 전지작업하고 빗자루질 하고 풀 뽑는 게 주업무죠. 아 물론 조무원이나 방호원 중 한명은 인쇄만 하더군요. 여튼 각설하고 이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혈세 낭비죠 자질도 없고 업무 비중도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 구조조정하시고 나이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하게 하십시오. 충분히 노인들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 현직 조무원들 방호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예전 서울시장이었던 ○○○ 시장님 재임시절 능력 안 되고 도태된 공무원들 한 강가서 풀 뽑게 했었죠. 그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학교 화단에 풀 뽑는 일입니다. 나이든 사람들 컴퓨터 활용해 품의도 못 올리고 자기 손으로 출장하나 기안 하나 못 올리는 사람태반입니다. 제발 이 사람들 구조조정해서 자르고 없애세요. 젊은 사람들로 이 사람들 하는 일 채우려 들지 말고 나이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노무업무니까요 인쇄, 풀 뽑기, 빗자루질 하기 이런 거 공무원 뽑아서 시키지 좀 마세요. 경력 10년 20년 넘는 이 사람들 한 달 월급 250홀쩍 넘습니다. 이분들 줄 돈 아끼세요. 좀 나이든 어르신들 120주시고 쓰세요. 공무원 증원 할 생각 하지 말고 교육청 조무원, 방호원들 구조조정해서 그 돈 아끼시고 공무원 수 줄이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제 글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글자 들어간 기관의 민원은 거부합니다. 강제로 제 민원을 이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안행부는 제 글을 참고로 해서 그들을 구조조정해서 혈세 낭비를 막길 바랍니다. 국민의 민원을 개 무시하는 짓거리 그만 하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낭비를 막자는 제 취지가 제 글의 요지입니다. 국민의 건의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4 18:17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무직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인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등 인사 운영에 대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이나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교육공무직 제안



질의

□ 2013년 10월 14일자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02-2100-6747)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대외직명 미사용 : 현행 공무원제도는 계급체계로써 구분되어지며, 그 상하관계가 관직명에 포함되어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화와 계급구분을 위해 대외직명을 사용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공직사회에 대한 계급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산하 기관(각급 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임시직인 학교회계직(행정실무사 포함)에 계도 동일한 대외직명인 '주무관'을 붙여 호칭하면서 대외적인 업무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러한 대외직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취급자를 구분하여 그 권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취급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취급자인 임시직(학교회계직, 행정실무사 등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정사무총괄자', 또는 '지방공무원', 또는 '교장', 또는 '교감'의 정보처리를 마음대로 열람 및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의 권한(계약체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으며, 차후 문제시만 직접 교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실장의 직인과 권한(계약체결시 분임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으며, 최우선의 비품(임시직이 접근할 수 없는 통제구역내의 비품)이 있는 곳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아무런 법적 제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기에, 본 민원인은 이번 기회(수십년 동안 이러한 관행이 제도화 되어 있었음.)에 임시직(학교회계직 등)을 '교육공무직'으로 승격시켜 경찰청에서 '신원조사'를 득하게 한 후에 개인정보처리권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임시직의 권한에 대해 법적인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다는 점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29 20:5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일반 근로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 학교회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으며, 타 분야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개인정보처리 문제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외직 명제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방교육행정직 중학교 보전수당 보류 또는 철회 관련

질의

- 지방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은 사회복지직과 업무가 같습니다. 학교의 기능은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급식, 아침 돌봄, 저녁 돌봄, 현장학습 등 학생들의 외부 활동 확대, 특히 방과 후 수업 확대, 목적사업 증대 등 학교에 예산이 증대되고 사업이 늘어나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의 지원이 같이 확대되어야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업무를 지침에 맞게 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등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친절하고 싶으나 격무에 치여 그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 병설유치원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나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 교감과 달리 겸임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이중으로 해야 합니까? 또한 학교 행정실은 민원 업무도 맡아서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또한 민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황이 이럴 진데 중학교 보전수당마저 받지 못한다는 말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는 가중되나 그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맞춤형복지도 타 일반직에 비해 적고 그나마 있던 수당마저 없애버리다니요. 교원과 동일하게 받던 것을 교원은 주고 행정직은 없애고 교원은 행정업무경감으로 행정지원사를 추가 배치

하는데 행정실은 30년 전이나 정원이 똑같습니다.

- 예산과 사업을 늘릴 때는 정원도 늘려주시고 그게 힘들면 행정지원사를 행정실에도 배치해 주십시오. 그마저 안 되면 수당이라도 늘려주세요. 방과 후 업무 지원수당! 유치원 겸임업무수당!! 또한 행정실장은 부장교사도 받는 70,000원 수당도 없습니다. 행정실장은 책임만 많고 권한도 없고 수당도 없습니다. 직책을 주고 수당도 안주면 무슨 돈으로 직원들에게 베풀니까?

회신

회신일 : 2013-11-11 9:4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은 교원·학교회계직원과 보전의 성격, 법적 근거 및 과거 선례 등 다른 측면이 있어,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우리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질의

- 교사 및 학교 회계직한테 주는 수당을 왜 일반직인 우리들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건 차별입니다. 주던 수당 교사는 법에 없는 걸 법조항까지 만들어서 주시고 학교 회계직은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주시고 일반직은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는 교사나 학교

회계직보다 절대적으로 많고 책임까지 다 집니다. 이런 차별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일할 의욕이 안 납니다. 저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학교에 계신 교육행정직 모두의 현실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11 9:4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은 교원·학교회계직원과 보전의 성격, 법적 근거 및 과거 선례 등 다른 측면이 있어,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유·초·중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관련

질의

- 진정서(국민권익위원회)·수신 : 국민권익위원회·발신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 진정취지

1. 관리수당과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여 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지급되었던 교원연구비의 경우, 교원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을 지급하여 재원의 차이에 따른 차등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은 교원이 받고 있는

보전수당을 받고 있지 못해 유·초등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2012.8.23.)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구비(교원) 및 관리수당(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 및 학교비정규직)이 지급 중단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중학교 교원에게만 소급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으나, 10월 23일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3월부터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시행 5일만에 교육부는 철회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는 화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3. 수평적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조직에서 각자의 업무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원, 행정실 지방공무원, 학교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데 교원은 되고 지방공무원은 안된다는 식 때문에 교육 당사자간 갈등과 분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4. 각급 유·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교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은 각급 유·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관리수당이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 개선되어 국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유아·초·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세부진정 내용 -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방법으로 시도의 교육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에게만 조속히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교원만의 보전수당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이중 잣대' 때문에 전국의 6만 3천여 지방공무원들의 함성과 아우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는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중학교 교원에게만 시·도교육청의 규칙 개정을 통해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공무원노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교육부장관실 점거농성, 기자회견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지방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서였을까요?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3월부터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고 교육부의 차별적 관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이라며 지방공무원들은 환호작약 했습니다.
- 그런데 공문 시행 5일만인 10월 28일,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알림 철회 통보" 공문을 시행하면서 조령모개식 행정으로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는 화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몇 개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번복 공문 때문인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했다가 조용히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 교육부의 코미디 같은 행정에 각급학교 지방공무들은 허탈감과 모욕감에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보전수당을 받고 있고, 교원에 비하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될 보전수당 금액은 매우 미비합니다. 학교 내 지방공무원들은 교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자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도 실현하기 어려운 일인지 의문입니다. 따돌림과 편 가르기도 학교폭력의 하나이며, 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일 뿐인 것입니다.

- 전국의 교육청 공무원노조들은 지방공무원과 교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 편향적 꿈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초·중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교원과 같이 관리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간절한 의견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13. 11. 4.

회신 회신일 : 2013-11-11 9:49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은 교원·학교 회계직원과 보전의 성격, 법적 근거 및 과거 선례 등 다른 측면이 있어,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갈등 그리고 분열수당 관련 해결 제안**

질의

□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도 지방공무원의 권익과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또 전국의 지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제안을 드리며, 전국의 각급 기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교육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자치과 등)에서는 각과, 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전향적 검토로 최선을 다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가장 빠른 해결책! 교육부 예산과목 해설 업무수당(수당금액 명시) 활성화 및 유도< 교육부 예산 과목 해설 업무수당 적극 유도(수당금액 명시)> 가. 유·초·중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나. 방과 후 학교 업무(수납, 지출, 인쇄, 조리, 운전 등) 수당 : 각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음 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라. 학교회계, 계약담당공무원 수당 마. 수익자부담경비 수당 등
2.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갈등 심각!! 수당 규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과목 해설에 업무수당 유도가 가장 현실적 대안가. 관리수당

과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여 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지급되었던 교원연구비의 경우, 교원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을 지급하여 재원의 차이에 따른 차등을 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유·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은 교원이 받고 있는 보전수당을 받고 있지 못해 유·초등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은 매우 높은 상황임. 나. 각급 유·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교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음.

3. 지방공무원의 갈등 그리고 분열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수평적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조직에서 각자의 업무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교원은 되고 지방공무원은 안 된다는 식 때문에 교육 당사자 간 갈등과 분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8.민원인 ○○○

회신

회신일 : 2013-11-18 18:2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기 회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은 교원·학교회계직원과 보전의 성격, 법적 근거 및 과거 선례

등 다른 측면이 있어, 수당 보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교육부장관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의뢰

질의

-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교육부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시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하오니, 교육부장관께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4대원칙 중 하나인 '직접선거의 원칙'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현 제주교육감은 첫 번째 선거가 간선이었습니다.
- 교육감 선거를 간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한 것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개정 이 이루어졌다면 현 제주교육감의 첫 번째 간선은 3선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서의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헌법재판소 2001. 7. 10. 2000헌마91 결정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 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회신일 : 2013-11-21 11:1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귀하께서 제주도 현 교육감이 3기에 걸쳐 계속 재임한 것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현 제주교육감은 2004년 5월 교육감보궐선거, 2007년 교육감 선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계속 당선되어 계속 재임 3기에 해당됨을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주도 교육감의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 제2항 및 동법 부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동 법 제정 당시 제주도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부칙 제18조 제1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교육감을 동 법률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였고, 부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동 법률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를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6년 교육감직에 재임하고 있었던 제주도교육감은 동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1기 재임하였고, 2007년 12월 선거로 당선되어 2기 재임하였으며, 2010년 6월 선거로 당선되어 3기에 걸쳐 계속 재임하였으므로 차기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동 법령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안전행정부 소관 법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추진은 안전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교육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질의

- 교육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을 가능하도록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란다.

회신

회신일 : 2013-12-13 18:0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최근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장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현행 교육장 임용 방식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몇몇 교육청에서는 공모제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현재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육장의 임기 완료 후 임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교육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더불어 교육장 임용 시 사전인증제도 도입 등 이하 귀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받으신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전화상담은 교육부 콜센터(02) 6222-6060)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

교육부와 교사들의 이중적인 행태 시정 요구

질의

- 중학교 관리수당 문제입니다. 교사는 주고 교직원에는 안주고 똑같은 수당인데 명칭만 다를 뿐 교원과의 이질적인 차별대우에 회의감이 듭니다. 교사는 명칭 바뀌서 쏙 빼서 소급해서 적용하고 교직원에는 예산 절감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쏙 빼지고 교직원도 적용해 주시던가 교사들만 지급한거 환수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무상보육하면서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교사들한테도 배신감 느끼지만 동조한 교육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중학교 교직원들 어디 살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완전 무상 되면 또 생길 문제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배신감 느끼며 직업에 회의감도 생깁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9 10:4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의 보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법적인 것 및 초등학교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25 지방공무원(중학교) 관리수당 지급 시기 문의

질의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중학교 내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은 관리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원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하여 소급하여 주도록 최근 공포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6월 공문 시행 시 중학교 직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곧 올해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교육부에서는 지방공무원(중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관리수당 지급 마련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9 10:4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의 보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법적근거 및 초등학교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의

- 지방교육 전반적인 중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바쁘신 업무에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국가와 학교, 학생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전 정책제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합니다. 학교 시설관리 혁신방안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 다만, 답변 내용 중 시설관리 중간관리직 신설과 조무임기제공무원 고용에 대한 좀 더 깊은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답변에 대한 오해 설명과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 중간관리직을 신설해야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오해이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각 학교에 1~3명의 시설관리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에서 시설과장, 시설계장이라는 책임과 권한 있는 직책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에 전혀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관리직이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역량 있는 신규인원 충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점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 부작용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진주를 얻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인내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역량 있는 신규채용을 활성화한다면 머지않아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무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안할 당시에도 일단 최대치를 요구하자는 생각에서 조무임기제공무원 고용 방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조무임기제공무원 고용예산 확보가 힘들 경우 대안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조무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학교의 경우 조무임기제공무원 2명 이상(4,000만원 정도)이 고용되어야 기존 조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만 절반도 안되는 1,500~1,800만원의 인건비만 목적사업비로 책정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부를 고용할 수 있기에 조무임기제공무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매우 효율적인 비용으로 조무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규모 학교는 1,000~1,300만원, 소규모 학교는 500~800만원 정도 목적사업비로 인건비를 책정해주면 저비용 고효율의 조무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다만, 하겠다고 마음먹느냐 아니냐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저의 정책제안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가와 학교, 학생의 이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반영되어 학교 시설관리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교육부에서 국가와 학교,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시설관리 혁신방안에 혁신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13 17:2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학교시설관리 방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제안해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답변내용에 언짢은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모든 내용은 해당 관련 부서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김정호님의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7 전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시설 관리서기보(교육청소속)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때 지방조무원에서 직류 : 시설관리, 직류 : 시설관리 직급: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업 전기직으로 전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관리운영직군에서만 전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전직이 가능하다면 전직시험도 면제되는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회신

회신일 : 2014-04-16 18:3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전직의 가능여부 및 시험관련 내용은 현재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인력운영 등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질의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서 소방설비분야(기계, 전기) 자격증은 시설직렬(건축)에만 분류되어 있으나, 우리교육청 같은 경우 시설직렬이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 전기운영)과 공업직렬 공무원이 소방설비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방계획서작성, 소방시설물 설계, 공사감독,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업무 분장표에 표기하고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전직임용예정 직렬인 공업직렬(일반기계, 일반전기)에 소방설비분야 자격증을 추가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올해 전직시험(9.20.) 시행 전까지 개정하여 주실 준 없는지요.
2. 올해 전직시험 시행 전까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우리교육청 실질적인 업무특성에 맞게 인사규칙 [별표 4]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직렬에 소방시설분야(기계, 전기)자격증을 추가하여 전직시험을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중 공업직렬에 소방설비분야 자격증 추가 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강서구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21 18:3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이정현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서 소방설비분야(기계, 전기) 자격증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행정부 전직시험 담당 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 시설관리 직렬과 관련하여

질의

- 안녕하세요. 한국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사무처장입니다. 시설관리 직렬의 자격증 신설에 대해 5.14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지난 1.28일에도 안전행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행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업무협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에서는 시설관리 직렬의 자격증 신설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보여야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11,400여개의 학교가 노후화 및 전문시설인력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의 인력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도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정면적이상의 건물의 시설에 대해 KS(1004-1,2)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서울시교육청등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한 시설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4.01.28. 18:21:22

회신 회신일 : 2014-05-30 18:0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 근무자에 대한 호봉획정과 관련된 자격증 신설」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소관부서인 안전행정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법안 마련 요망

질의

- 본 민원인은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이 정치장화 되고 있어서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본 민원을 올립니다. 정당인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은 공무원인 교원, 일반행정 직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학교회계 직원이 있습니다.

- 학교회계직원은 주로 교무보조원, 사회복지사, 도서관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전산보조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돌봄교실 전담사 등이 있으며, 최근 그 직종과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하고 하고 있으나, 유독 학교회계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법 적용 대상이어서 정치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본 교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000'은 6.4 지방선거 통합진보당 서울시비례대표로 추천되어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휴직을 시켜달라고 통진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이런 사례 해당자가 본 교 말고도 서울 시내에 2교가 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회계직원의 계약 관리 지침에 의거 휴직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아서 휴직은 안 되고, 대신 공민권 행사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가 또는 조퇴 등을 활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 면담 요청 등 끊임없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경영자가 직원들의 정치활동 보장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데에 행정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정당인은 자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날마다 아이들과 만나고 상담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본 교 사례의 위 사회복지사는 아침 이른 시간에 정당의 주장을 반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가 출근하고, 퇴근 후 저녁 시간에 학구 내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학생과 학부모와 마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고 상담사이며 도서관 사서이며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 보시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든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교를 정치적으로 중립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없어서 방관하고 흘러왔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한다고 봅니다. 본 민원 내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부서에 전달되어서,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28 11:3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우리 부에서는 국립(부설)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을 통하여 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제한이므로 위헌에 해당되어 개정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별법 등 신규법령 제정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협의 및 검토해 보겠습니다.

31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질의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표)-한국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사무처장입니다. 전국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기술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자료를 보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어 시설관리 직렬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지침 별표 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시설관리 직렬의 관련분야인 전기, 기계, 소방, 통신, 건축, 토목분야의 자격증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03 18:1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신 파일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시설관리 직렬 호봉획정에 필요한 자격증 신설에 관한 검토시 필요한 경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선진국으로 가는 길(2/3)



질의

- 선진국으로 가는 길(2/3)

1. 국회 청문회~업무수행 능력만 검증하지, 개인적인 위장 전입, 부동산투자, 상속 등은 이제 청문회에서 배제하자. 청문회 질문자도 기회만 있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업무능력 때문에 청문회가 있는 것이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취지와는 달리 자질에서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 몇 몇 의원들을 보라. 폐지하라
3. 보안법, 집시법~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선 아무리 강화해도 일반 서민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집시법은 시위자 권익보다 일반서민의 권익차원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4. 공권력 강화~과행국회, 철도과업, 어떤 종교단체 등을 보라 극히 우려스럽다. 바로잡을 부분은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혹시 법 집행이 어떤 법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5. 판·검사, 변호사 등이 모든 국민보다 앞서나가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정서도 이젠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준 법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운용. 집행할 뿐이다. 현재도 많은 기술인 들이 해외에서 피 땀 흘린 결과

물이다. 이 결과물에 인문계가 다수 점하고 있는 국회와 공무원 조직이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공계는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외도 할 일이 많다.

6. 각 시도 교육감은 국가 정책에 따르는 교육감 이어야지,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 한 것인가?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이어야 한다. 국가 정책과 다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도 있다. 문교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부터 시작 한다. 중·고교 평준화는 전국적으로 시행 하라.
7. 납골문화~납골을 장려만 하지 납골모시는 곳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현 분묘도 납골로 개조할 수 있도록 2~3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국토를 정화 하자. 소생이 알기로는 현 장묘법은 납골은 분묘가 아니라 장치로 분류된다고 한다. 장묘법을 고쳐야 한다.
8. 선진국처럼 야생동물에겐 인간이 먹는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이유는 인간과 같은 먹이 유전자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 폭설 때 노루 등에게 위해서다 먹이주기, 비둘기 모이 주기 등) 폭설 때 한라산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각 언론 매체들은 앞 다투어 이를 보도 했지만, 이로 먹이 유전자 변이로 한라산 근처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로 돌아 왔다.

회신

회신일 : 2014-06-10 19:0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선진국으로 가는 길(2/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교육감 선출 관련한 각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정신 및 그간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 부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를 존중할 예정입니다.

33

시설관리직렬 자격증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질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3, 제55조의 3 조항에 의해 - (표준안)별표에 신설 한국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사무처장입니다. 시설관리직렬 자격증과 관련되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3, 제55조의 3 조항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에 포함된다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4, 별표15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3, 제55조의 「국가기술자격법」을 참조하여 시설관리 직렬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규칙으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자격증 인정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에 포함된다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신규임용과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경력경쟁 임용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제 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제외한다)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신

회신일 : 2014-06-13 17:5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 그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는 만약 시설관리 직렬의 신규임용 시 신규임용시험의 종류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3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법령 소관부서인 안전행정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행정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직선제 교육감제도 없애야 합니다! 중복세력과 전교조에 막대한 지원과 교육의 중복 편향으로 부작용만 생기고 예산은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지요? 교육부 올해 예산이 54조 2481억원!! 이 돈으로 도대체 뭘하는 겁니까? 그래서 순수학문이나 과학분야 노벨상 타봤나? 구걸하다시피 돈 뿌려서 평화상 하나 타고 교육부도 대폭축소해서 공무원들 급여 줄이고 각종 특혜성 대학 지원사업들 축소하여 예산 반으로 줄이면 장학금 수 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고 등록금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사학에 이런저런 구실로 막대한 예산 퍼주고 교피아로 퇴임 후 사학으로 취직하는 행태도 깨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총리실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고 하부조직은 안행부로 축소 이관을 제안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8 11:2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폐지 및 존치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정신 및 그간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를 존중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우리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여러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부 교육역량 :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원 연구역량 : BK21플러스, 우수 지방대학 육성: 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과 산업체간 연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특화된 전문대학 육성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한편, 모든 사업은 신청대학간 경쟁을 통해 해당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학의 선정은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 '교피아' 대학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퇴직공무원이 대학의 총장, 부총장 등으로 재취업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에 대하여는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 위촉 제한,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 일정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5 교육감선거 폐지 신청



질의

- 지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씨가 불법으로 당선 되었지만 그것을 입증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 당선자는 묻지마 식의 정책을 실시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식의

정책으로 교육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교육에 대한 방향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직 가꾸어 지지 않은 인간을 바른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정책으로 일관성 없이 한다는 것은 교육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 입시교육이 어찌니 하며 주장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사회주의에서도 대학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졸도 회사에 먼저 들어가서 상사가 되면 서열을 따져서 강압적이고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대학서열이 어찌니 하는 것은 열등한 즉 경쟁에서 뒤쳐진 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들도 사회에서 사장이 되거나 상사가 되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일관성 없는 이념은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서열의 문제점은 대학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회사입니다.
-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지 취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는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냐 이것인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결국 취업입니다. 대학은 고등학문을 하는 곳으로 그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고등학문의 성과에 맞게 서열화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쟁의 취지를 잘 살린 것이며 선의에 경쟁을 유발하여 서로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을 근거로 하는 것은 결국 주식회사에 고등교육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 벤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인사를 자신의 잣대로 마음대로 뽑습니다. 즉 자기들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잣대로 대학의 서열을 따진다는 것은 이야 말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보면 동문회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맥으로 연결됩니다. 특정 기업을 보면 특정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입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현상은 굳이 일류대학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와 모든 사람은 모두 이러한 것을 행동합니다. 심지어 일반 자영업도 친구의 친구면 일 덜 시키고 이런 것이 없으면 일을 많이 시킵니다. 진보들의 이념적인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며, 더 이상 그들에게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2의 ○○○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감 선거를 폐지해 주세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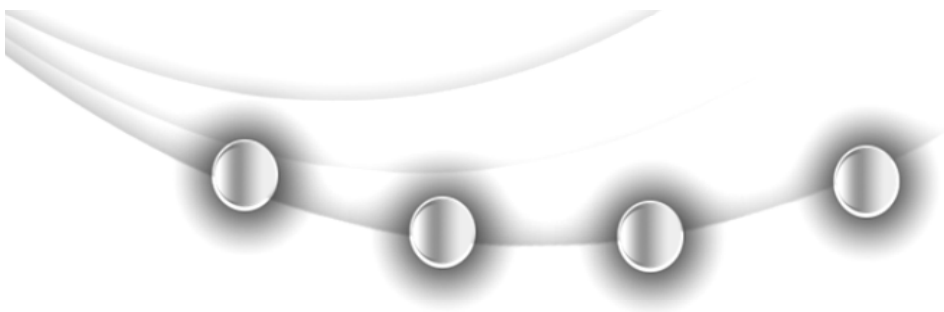
회신일 : 2013-07-15 14:0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귀하께서 교육부에 제출하신 민원(“교육감 선거 폐지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감 선거 폐지 및 존치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정신 및 그간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를 존중할 예정입니다.



XI. 교육정보 및 통계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

질의

- 나이스 홈페이지 접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양이 낮아 사양이 높은 버전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2 11:31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나이스 “대국민 홈페이지 웹 표준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는 구축 당시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Internet Explorer 7.0 과 8.0을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말씀하신 Chrome을 포함한, Safari, Firefox(이하멀티브라우저)등에서는 일부서비스(무인증열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학생들의 성적, 건강기록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각종 보안프로그램(키보드 보안, 화면 보안 등)의 설치가 필수적이고, 개발 당시 멀티브라우저는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어 일부 서비스를 부득이 제한하였습니다.
-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Internet Explorer 10 및 멀티브라우저에서의 원활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스 프로그램도 수정이 되어야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보안프로그램 또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Internet Explorer 10을 포함한 멀티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학생의 학교생활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 철저한 보안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서비스 제공이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양해 구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지연 문제



질의

-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고 하니 로딩중이라고만 뜨고 열람이 안 됩니다. 어찌된 일이죠?

회신

회신일 : 2013-08-09 15:32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스 대국민 홈페이지에서 교육관련 제증명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 잇따른 기업들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명 발급이 폭주하면서 네트워크 회선 용량 허용을 초과하여 민원서류의 발급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나이스 콜센터(1544-7979) 및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및 학교에서 관리하는 생활기록부 복사 후 교부 처리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가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고, 향후 기업 및 타 기관들의 대규모 교육관련 증명서류 수요가 있을 경우, 미리 대처하여 사용자의 민원발급 서비스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공인인증서 등록 문제 및 번거로운 인증절차

질의

- 공인인증서 등록이 원활하지 않으며 학부모 서비스 신청 후 학교에서 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불편합니다. 또한 나이스 접속시 너무 느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죠? 개선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14 11:15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공인인증서 접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는 회원정보와 인증서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인증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확인 후 등록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인증서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안내해드린 대로 인증서 등록여부를 확인하려면 귀하의 사용

자 ID가 필요하지만, 이미 회원탈퇴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등록한 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통화하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학부모서비스 신청 후 교사가 자녀의 학부모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과정에서 2~3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속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학교로 연락하여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신 시기에 최근 민간 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이스를 통해 필요한 체증명 발급 수요가 폭증하여 불편을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회원가입정보-E-mail 수신여부 및 민원게시판 신설 여부

질의

- 회원정보수정화면에서 이메일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게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20 15:15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정보-E-mail 수신여부 및 민원 게시판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정보 조회 시 나타나는 “E-mail 수신여부” 항목은 정보시스템 운영 상 제공하지 않는 기능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회원가입 시 기재하는 E-mail은 아이디 분실 시 찾기 위한 용도로 수집하고 있으며, 별도의 E-mail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민원사항은 총괄 콜센터(1544-0079) 및 각 시·도교육청 콜센터에서 접수하오니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민원 게시판 신설에 대해서는 대국민 홈페이지 개편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非윈도우즈 사용 컴퓨터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질의

- 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하루빨리 非윈도우즈 운영체제 이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02 10:02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비 윈도우즈 운영체제 사용자 사용 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는 학생

들의 성적, 건강기록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키보드 보안, 화면보안 등)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ActiveX 기반으로, 이는 구축 당시 가장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ActiveX 설치가 안 되는 운영체제의 경우 사용이 어렵습니다.

- 앞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나이스 가입 절차 과정의 복잡화



질의

- 나이스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으면서 사용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만으로도 자녀의 성적을 조회할 수 있게끔 그 과정들을 간소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1 11:18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이용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에서부터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등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 9월 현재 사용자 위주의 메뉴개편과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강화 등 대국민 서비스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최소한의 장치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학생 성적, 건강기록 정보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서비스 가입 후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임을 확인하는 담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 정보의 불법 유통 및 오용을 방지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학부모서비스 관리 감독 문제

질의

- 학부모 서비스의 유지관리가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는바 제대로 된 정보서비스를 학부모들이 받을 수 있게 이에 대한 지도 감독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학부모 서비스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학부모들이 보다 높은 퀄리티의 교육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평가들이 많은데 유독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네요.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접속하는 학부모가 이용 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문의해 주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관련하여 진행되는 평가로는 매년 온라인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학부모 만족도 89.6%, 2012년도 학부모 만족도 84.2%로 나타났으며, 올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2월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더 나은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2013년 9월 현재 대국민 서비스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현직 교사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편 방향, 학생/학부모서비스 관련 매뉴얼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나이스 대국민 홈페이지는 2014년 3월에 서비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용자의 의견 제시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초·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자녀정보를 보기위해 나이스에 아이들의 정보조회를 신청했는데 1주일이 지나도 승인신청이 되지 않아 관련 고객 상담실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만 통화가 성실하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이스의 자녀정보 신청 승인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28 16:18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나이스 자녀정보조회 신청승인 및 나이스 고객센터 통화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자녀정보조회 신청 승인은 전화로 안내한 바와 같이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승인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써 학교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고객상담센터 이용 시 통화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고객상담센터 측에 고객전화 지연문제 해결 및 통화가 성실히 진행 되도록 조치를 취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에듀팟 가입 했으나 주민번호입력이 안돼 사용 못하는 문제

질의

- 에듀팟을 사용 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입력란에 입력이 안 되는 문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도 에듀팟도 자기네는 모른다고 서로 문의 하라 하는 상황입니다. 귀 담당자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2014-05-15 9:38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시고 문의하신 내용은 학생서비스 초기 도입단계('11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발생한 문제였으며 유선 및 PC 원격접속 등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상담원에게도, 동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 및 대응 태도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10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학부모서비스) 윈도우 XP 차단관련

질의

- 보안성 취약 때문에 조만간 XP 를 차단할 예정이니 윈도우 7으로 강제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종료가 되었으니 보안성에 취약하여 업그레이드 하라는 답변 이외의 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MS 제품을 전 학부모가 구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건가요?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강제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15 9:54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MS사에서 윈도우XP 기술지원을 중단('14.4월)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안이 취약한 PC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보안 취약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입니다. 이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위와 같이 대국민이 사용하는 PC가 윈도우 XP일 경우,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윈도우 XP에서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팝업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안내메시지가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다듬어 대다수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11 다른 OS나 브라우저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질의

- NEIS 홈페이지가 윈도우만 지원해서 불편합니다. 다른 OS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07-15 14:05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는 대국민 서비스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키보드보안, 화면보안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들은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만 원활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른 운영체제(Mac, Linux 등)에서는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이 함께 노력,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제조사들은 운영체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나이스는 대국민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다양한 브라우저(Chrome, Firefox, Opera, Safari)를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각 브라우저의

- 버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서비스 이용 브라우저 버전 : Internet Explorer 32bit 6~10,
Chrome 22~28, Firefox 15~23, Opera 9~12, Safari 4~5

12 교육부 청사 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화기 구매처 문의

질의

- 교육부 청사 안에 있는 컴퓨터는 전부 다 어디서 구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4-04-03 13:20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교육부의 컴퓨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합니다.

13 전체 학교 리스트

질의

- 전국 학교명(초등학교, 중학교, 전문대, 대학교) 리스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05 10:57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우리 부 홈페이지(moe.go.kr)>정부3.0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목록 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소속, 행정구, 학교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학생 수



질의

-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4 10:07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서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등의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를 1980년도 이후부터 통계표 및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년도의 자료는 통계간행물(교육통계연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 취학률



질의

-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률, 학생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7 15:47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취학을 관련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취학을 산정은 교육부가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의 학생수와,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를 활용하여 연구 차원에서 산출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석보고서는 kess.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 간행물 -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연도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의 문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사이버대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질의

- (1~2) 기존 학교의 교사와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활용하여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 (3) 사이버대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에도 설립이 가능한지? (4) 사이버대학을 기존의 대학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해당 토지는 반드시 '학교용지'이어야 하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3-11-04 13:57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답변, (1~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기존대학의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재산 등을 사이버대학과 같은 또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대학 교비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추가로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3)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으로 수업이 이루어짐으로 설립 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립하고자 하는 곳의 용도가 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 없는 적합한 장소 확보하며, 교사는 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확보하되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교용도로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17 사이버대학 내 박사과정 설치 요청

질의

- 민원인은 00사이버대학 00대학원 석사과정 0학기 재학생으로 졸업 후 박사과정을 진학하고자 하나, 일반대학원은 직장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진학이 어려워 동 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9 8:44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사이버 대학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 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이버대학 내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보육실습 대란****질의**

-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 학습자입니다. 늦은 공부에 재미를 붙이며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차 학습하며 보육실습을 남겨두고 있는데 실습할 수 있는 학교를 연계해야하는데 이것이 복병이었네요. 접수하는 곳마다 마감이고, 실습을 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대학교마다 기존에 말하던 것과 다르게 접수를 받는 통에 미처 접수하기도전에 마감되어 버린 곳도 비일비재합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실습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08-09 8:46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기준이 2014년부터 강화되면서 올해 보육실습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습과목의 경우 일반 이론 과목과는 다르게 내실 있는 실습운영을 위해서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부득이 수강 인원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보육 실습과목 수강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보육교사 자격증취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전공의 설치와 학생 정원,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4조(학칙)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 사이버 대학에 문의하는 것이 더욱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19 사이버대학교 전형료 환불 건

질의

- 2013년 8월 6일 화요일 13시 30분경 사이버대학 진학을 위하여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3만원을 내고 접수를 하여습니다. 하고 보니 실수로 접수를 잘못하였습니다.
- 전화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재하기 직전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빠르게 접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9 13:11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전형료 환불에 대하여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 자격 미달 및 기타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전형료 반환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확인 되었고, 현재 전형료 환불규정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이 통과되면 각 사이버대학이 반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20 EBS 방송교육

질의

- EBS 방송을 다시보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8-20 11:03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EBS수능 강의는 방송과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송시간과 상관없이 EBS 수능강의 사이트 (www.ebsi.co.kr) 에서 모든 강좌의 무료 다 시보기가 가능 합니다. 올 7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 해 언제 어디서나 수능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앱도 보급되었습니다. EBS수능 강의를 통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인증 관련유무



질의

-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인증 기관이 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의 인증 유무가 왜 중요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10-07 15:47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 하는 학교의 종류로 명시 되어있으며 동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 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참고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 33조제3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하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은 2013년 현재 총 19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은 2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 사이버 대학 수업료에 관해

질의

- 저는 2012년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바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수업료를 내고 입학 후 약 한 달 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바빠 한 달기간 동안 3회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해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다. 학점을 줄 수 없다더군요.
- 수업을 약 두 번 정도밖에 듣지 못했는데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더군요. 세 번 이상 출석을 안 해서 과락이 되었다며 개학 후 한 달 만에 저는 백만원의 돈을 고스란히 날렸고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업을 못 들었으니 50%만이라도 환불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생활해서 어렵게 한 푼 두푼 모은 돈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7 15:47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2013.3.23.)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등록금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규칙 제6조 (등록금의 반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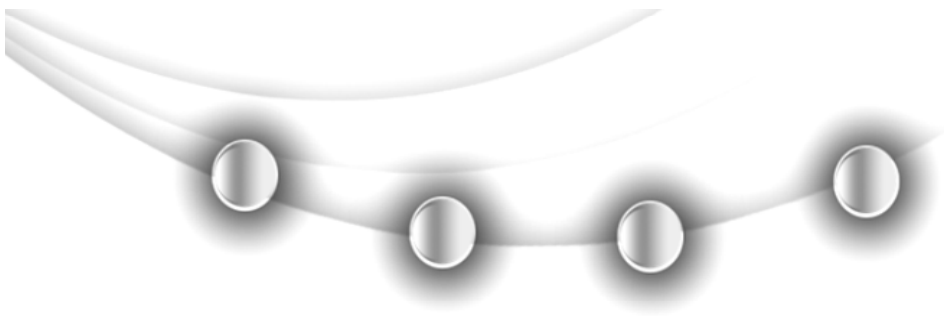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 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귀하의 민원내용을 볼 때 귀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업 결석일수가 해당학교 기준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학점이수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는 등록금의 반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XII. 대학 및 대학원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부산 경성대 국가지원 자금내역 자료 요청

질의

- 국가에서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2012년과 2013년 자금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18 21:17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재정지원과]

- 교육부는 정부(지자체 포함)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시스템(「하이에듀포트」, hiedupport.kedi.re.kr)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대 정부 재정지원 현황 자료(2013년도 자료는 결산 이후 공개 가능)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시스템(「하이에듀포트」, hiedupport.kedi.re.kr)에서 확인가능하며, 절차는 "메인화면-정보검색-대학검색-조회" 순입니다.

2 성적 분포에 대한 비율 변경 관련

질의

- 2014년부터 재정지원 대학의 지표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취업률

은 기존에 비해 5% 감소하는 등 그 항목 지표들 중에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이 2.5%가 증가하는데 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분포에 대한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성을 지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18 21:17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재정지원과]

-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 지방대 등에 불리한 취업률, 재학생 충원을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비중을 높여 지표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지표는 학점관리,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소규모강좌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들의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지표 비중을 높일 경우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교원들의 교수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임 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관한 문의

질의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학교육 역량화사업 등에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을 산정할 때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총 개설

강의학점' 으로 되어 있던데 이때 총 개설 강의학점에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18 21:17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재정지원과]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과 관련하여 '총 개설 강의학점'에는 계절학기 강의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대학 특성화사업의 세부평가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은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바, 2014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p197)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작성 지침에 따를 때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BK21플러스 사업에 관하여

질의

-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BK21Plus 사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11-18 21:17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재정지원과]

- BK21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BK21사업을 거쳐 현재 BK21플러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중간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며 바람직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BK21플러스사업에 관한 정보는 BK21플러스 홈페이지(<http://bkplus.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국고지원 구입 장비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2005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비로 구입한 장비의 매각(2006년 구입 장비)- 매각사유 : 현재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불용 상태이나, 특정업체에서 구입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상기 자산의 매각에 있어 이사회 등의 내부 절차를 밟으면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18 21:17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재정지원과]

- 귀하가 질의하신 '장비'에 대해 품목명, 구입금액 등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고지원금으로 구입하셨으므로, 국가의 물품관리 규정에 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장비의 내용 연수 확인 :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품 및 비품에 대해서는 불용, 매각 등 어려움 내용 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상태, 활용여부 등을 판단하시어, 관리전환 /매각/ 기타

(유휴, 저활용 장비 이전 지원 사업 신청 등)처리

2. 연구장비 : 연구장비(3천만원이상)는 국가 연구 시설 장비관리 표준지침에 의해 NITS에 등록, 관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의과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및 등록금 보조 문의

질의

- 귀 부서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저는 신문기자로서 신문 기사를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귀 부서에 질의 민원 드립니다.
1. 전국 의과대학(국립, 사립 포함)에 소속된 의과대학생들이 본인이 내는 등록금 이외에 특별히 교육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2. 국립 서울대학교나 국립 전남대학교에서 자기 학교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을 각 단과대학별로 지급할 것입니다. 이때 의과대학에 특별하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3-11-18 21:17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재정지원과]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입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차이는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설립하여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타 대학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수월성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학과 및 개인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대학에서 정부지원금 외에 다양한 지원금을 가지고 대학의 특성화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 그린벨트 지역에 대학 분교 설치 문의

질의

- 업무 관련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안 소재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 분교 설치 등이 가능한지요? 위에 말씀한 대로 대학 소재지는 천안이며 그린벨트 지역은 수도권(광명)입니다. - 설치 관련 가능하면 인원 등의 증설이 아니면 단과대학 등의 이전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4년제 대학의 신설(분교 설치포함) 및 이전(단과대학 이전 포함)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법령해석(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관련) 요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①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질의요지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소재지에 이미 교사시설이 있다고 교육부에 대학시설현황을 보고하여 인정받고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이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고등교육법」 [시행 2002.8.26] [법률 제6709호, 2002.8.26, 일부개정] 제24조 (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3.9.1] [대통령령 제18096호, 2003.9.1, 일부개정] 제2조 (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 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④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2.3.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1호, 2002.3.8, 일부개정]제7조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나. 관계 법령 : 해당 음. 끝.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며, 동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설령 대학이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교사 시설을 교육부에 잘못 보고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대학의 위치변경을 위해서는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지방대학이 서울에 건물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불법

질의

- 안녕하십니까?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한학생입니다. 수험생들의 대다수가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위치한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마치 서울에 위치한 학교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게끔 하네요. 모집 및 시험만 서울에 있는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용음악과 강의자체를 서울에서 하네요. 관련법규에 문외한 학생이라 여쭙니다.
 1. 지방대학이 서울에 건물을 두고 강의를 할 수 있나요?
 2. 서울에 있는 학교처럼 홍보 및 모집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3. 불법행위라면 호원대에게 가해질 제재는 무엇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우리 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대학의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장 설치운영은 당해 대학 내 설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과를 설치한 산업대학이 인근 지역에 없고 산업체가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제공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10

육아휴직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에 의거 임용되어 사립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원입니다. 연금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아 휴직을 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 및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교원이 아닌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과 기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1항 7호를 적용받는 것인지 또는 2014.1.14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을 적용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관이 우선인지요? 정관상에는 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단지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은 사립학교법 제4장 제2절(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9조(휴직의 사유)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라는 조건은 육아휴직 개시 당시의 요건인 것인지 육아휴직 개시 당시의 요건임과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육아휴직)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육아휴직도 이와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전에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없는 여성이 2014년 3월 초등 2학년이 되는 셋째 아이(2006년 6월 12일생)에 대해 육아 휴직 하고자 할 경우 문의사항.

질문 2.-1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가 맞는 것이지요?

- 1) 2015년 6월 12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2015.6.12.만9세가 됨.
- 2) 2015년 3월 1일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 *2015.3.1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됨.

질문 2.-2 2014.9.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가능한 휴직기간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요?

- 1) 2014.9.1 ~ 2015.8.31 (1년)
- 2) 2014.9.1 ~ 2015.6.11 (약10개월) *2015.6.12.만9세가 됨.
- 3) 2014.9.1 ~ 2015.2.28(6개월)
*2015.3.1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됨.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직원의 복무에 대해 법인 정관이나 자체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해당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신학교설립에 관한 건

질의

- 지금 한국교회에는 많은 총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총회마다 총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교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총회 신학교마다 "학교"라는 명칭이 법에 저촉 될까 우려하여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로 사단법인 출연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란 「같은 법」 제4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 양성 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제64조에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를 설치·경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육아휴직 관련 문의



질의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수당 관련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학연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가능하되, 나라에서 정한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군인, 교사들은 국가에서, 또는 기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저희 같은 대학병원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저희가 고소득 노동자도 아니고 3교대하면서 갓 난 아가를 돌볼 수도 없고 모유수유요? 다른 나라 이야기 같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무급휴가라도 감사하게 받을텐데. 그것도 안 되고요.(아이가 태어났으니, 돈은 더 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대학병원입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하여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경력

많은 간호사들이 별로 없지요.

- 정말 저희 같은 대학병원 노동자들은 국가나 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을까요? 매달 20만원이라도 지원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고용보험 대상자로 해주신다면 더 좋고요. 정말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글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대학병원 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수당과 관련하여, 이는 해당기관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저희 사립대학제도과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가능여부

질의

-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립고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지급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 본교에 2011.3.1.-2014.2.28 까지 계약되어 근무하고계신 기간제

선생님(여)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직원(사립대이지만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학교임)이신데, 선생님께서 배우자가 대학의 교직원이므로 가족수당과 학비 보조수당을 둘 중 한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고 계시다가 2014년 2월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립대학은 사립 고등학교와 별개로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소급지급 받고자 신청 하여온바,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민원인께서는 사립학교의 직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직원에게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정관 등 자체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립대학교 직원의 수당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직원의 수당은 해당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부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사립학교와의 일람불외화지급보증 거래시 기채 허가사항 질의

질의

-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와 신용장개설(일람불외화지급보증) 거래시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사항인지요?~일람불외화 지급보증 : 수출상과 수입상의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상이 거래은행에 신용장(일람불외화지급보증) 개설 의뢰를 하면 거래은행이 수출상을 수익자로하고 서류조건을 맞추면 수출대금 지급을 수출지의 매입은행에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 보증서 입니다.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면 수입자가 대금결제 후 서류를 찾아서 도착한 물품을 찾는 방식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학교 법인이 사립대학의 연구·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상대방이 급부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 버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신뢰할만한 당사자를 끼워 넣는 것(수입 신용장 개설)은 결국, 수출상은 수입상(학교법인)에게 물건을 팔면서 물품대금은 환어음소지자인 개설은행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매매계약은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로 보여 지며 학교법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매목적물(연구자재 등)을 취득하므로 이를 두고 일방적인 의무 부담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연구·자재 구매를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지게 되는 일반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용장 개설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 이외에 계약상 학교법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개의 의무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5 지방대학교 수도권 캠퍼스 개교 건

질의

- 저는 지방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 지방대학교 경기도 북부지역 제2캠퍼스 개교는 꼭 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국한 되어 있는지요?
두 번째 : 기존 학과만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이전 되는지요, 신설학과는 불가한지요.(단 신설학과는 기존 우리 대학의 정원에 증원 없음)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귀하께서 우리 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으로의 위치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불가합니다.

- 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학교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의 신설학과의 경우도 대학의 특성화에 필요하다면 위치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산업 단지내 대학원 신설

질의

- 저희 ○○대학교 치과대학에 치의학 석사 박사를 배출하는 일반 대학원 소속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익산에 있고요. 그런데 혹시 대전에 분교의 설치 없이 대학원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상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익산에서 규제를 받는 분원 형태, 산업체와 연계된 대학원 등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상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귀하께서 우리 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교설치 없이 본교 외

지역에 대학(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치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학이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7 대학원·대학교 설립 요건 및 기준



질의

- 대학원대학교 설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정 면적, 직원, 교수 채용, 학생 수 등 필요 요건이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귀하께서 우리 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개교예정일 12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대학·대학원 및 평생교육 정보에서 '학교법인설립 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는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학의 통·폐합 등 대학구조 조정을 통하여 대학수와 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신학교 명칭 사용

질의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국내에는 신학교는 대부분 무인가 신학교로 알고 있고 일부분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목사안수를 받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는 법망을 피해 신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신학교는 교계의 지도자 양성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수익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총회에 소속된 신학교는 교계의 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바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를 들면 밥존스 신학교는 "19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정부 차원에서 무인가 신학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밥존스

신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Gospel Fellowship Association 선교회의 협조를 받아 한국복음동지선교회를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등록 과정에서 "한국복음동지선교회" 대신 "한국복음친선협회"(Korea Gospel Fellowship Association)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마침내 1994년 1월 21일자로 문화체육부로부터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단체등록증(제64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밥존스 신학교는 외국단체인 "한국복음친선협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로서, 정리 대상인 무인가 신학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복음전파로 외국인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고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나 총회가 문화체육부에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고 신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쾌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란 「같은 법」 제4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 양성 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를 설치·경영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64조

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중복지급여부

질의

-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중복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규정이(1)해당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인가? (2)해당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는가? 이 둘 중 어떠한 것에 해당되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우리 학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는 맞지만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도 가족수당을 받고 있고, 그 배우자인 사립학교 교직원도 그 학교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가족수당 중복여부를 판단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민원인께서는 사립대학직원과 공무원이 배우자로 각각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서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재정 등으로 인건비가 보조되지 않는 사립대학의 경우, 동 조항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으나, 민원내용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사립대학 및 공무원 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대학교 문제

질의

- ○○대학교 대운동장 농구장 쪽 조명이 너무나 열악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좀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귀하께서 요청하신 농구장 조명시설에 대한 민원은 해당 대학 측에서 점검 후 보수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1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해석

질의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② <생략>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질의]감사의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총 2번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임자 A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고 후임자 B가 A의 잔여임기를 채웠다면 B는 앞으로 1회에 한해서만 중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잔여임기를 채운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2번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민원인께서는 전임자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 감사인 경우, 중임을 1회만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 제3항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정관에서 보선으로 선출하는 감사의 임기를 전임자

의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잔여임기의 만료로 감사로서 1회 임기를 마친 것이고, 사립학교법상 중임은 1회만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로 1회만 선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理事長·理事 및 監事の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2 육아 휴직 중 급여에 대하여

질의

- 저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9.1~2014.2.28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의 일부가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있고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 대신 사학연금을 들고 있으므로 사학연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게 법으로 정해졌다면 제가 왜 예외로 분류되어 급여의 한 톨도 보전 받지 못하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사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직을 하고 여러

달이 지나도 여전히 지난 휴직 기간 중 밀린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밀린 돈들을 매월 갚아 나가고 있는데 불평등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민원인께서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급여와 관련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해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우선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법 상 사학연금가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없어, 현행법 하에서는 사립학교 직원이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개정 등의 방안은 담당부서인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교육부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육아휴직의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정 및 형평성 차원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지방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에 따른 수도권 학생의 불이익 문제

질의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실시에 있어서 교육부가 권장비율은 제시 하되 실제 선발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치대 등 인기학과의 경우도 수도권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인재전형의 선발의 한계 비율을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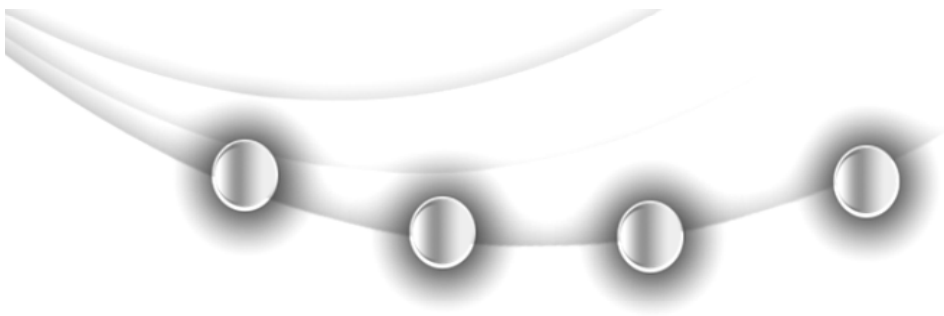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일 : 2014-04-28 18:09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지방대학육성법"이라함)이 '14.1.28.공포됨으로써 법적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전면시행 되었습니다.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 참조)다만, 해당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대학의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인재전형 및 근거법령인 지방대학육성법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구도 속에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우수인재의 지방대학유치·육성을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환적 발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XI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교과서에서 사용된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 보상금

질의

- 교과서에서 사용된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 보상금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현재 교과용 도서 보상금 분배는 '한국 복제 전송 저작권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리스트(보상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어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 복제 전송 저작권 협회(www.copyright.or.kr)에서 저작물명, 저작자명, 저작물 종류 등을 조건으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하나, 보상금 분배 신청 시에는 동명이인 등의 사유로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초등학교 교과서

질의

-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올해 교과서들이 화려하고 많은 배움 도구들도 포함된 양질의 교과서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과서들이 무겁다는 겁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방에 몇 권을 넣으면 무게가 상당히 됩니다. 교과서 편찬하시는 담당자

님들이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이번에 새로 보급된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서의 무게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외형체제 자율화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교육과정은 통합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학년군’ 개념을 도입하였고, 국어교과서의 경우 이전에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국어」로 통합하면서 종전에 비해 삽화와 ‘읽기자료’가 보다 풍부해졌습니다. 수학교과서의 경우도 흥미도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기법을 도입함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많아지고 두꺼워지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교과서 제도 선진화정책’에 따라 국정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규제하였던 국정도서의 외형체제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형, 쪽수, 디자인 등을 편찬기관과 발행사가 교과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교과서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편찬기관과 우리 부는 민원인께서 제기한 바와 같은 교과서 무게증가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어교과서의 경우 한 학기 교과서를 ‘국어①-가,①-나’ 형태로 분권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교과서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교과서 뒷부분의 ‘학습보조자료’의 목적으로 첨부되어 있는 스티커, 게임카드, 놀이판

등 부록의 양을 축소하고, 그 밖의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과서의 무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내년도 초등교과서 표기방식이 궁금

질의

- 내년도 초등교과서 표기방식이 궁금합니다. 내년도 1~4학년 교과서의 학년, 학기표기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교과용도서의 제목표기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29호, 2012.8.16)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초등 1~2학년군 교과용도서 보급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3~4학년군 보급시기에는 제목 표기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진,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 시·도교육청, 국정도서 연구학교 교원, 현장 교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형태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에 보급되는 초등 1~4학년 교과용도서와 2015년에 보급되는 5~6학년군 교과용 도서에는 구분고시에 따른 학년군 표시는 표지 상단에 배치하고, 표지 중앙에는 학년과 학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병행 표기하여 보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일본의 독도 및 위안부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질의

- 교육부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초,중,고교 교과서 나아가 대학(원)관련 서적에 해방이후 지금까지 독도 및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정책을 기술하는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책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역사·사회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서 별도로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와 연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곧 보급할 예정이며, 차후에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주제로 한 학습용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5 교과서 선정 의무 규정에 대하여

질의

- 학교에서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요? 꼭 선정하여야 한다면 근거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구입

질의

- 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한국사 과목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사 교과서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사 교과서는 국정이었는데 지금은 민간 출판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려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고등학교 2009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간본 도서입니다. 이에, 2014년 2월말 학교에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개별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는 말씀하신대로 검정도서로 8종의 책이 있고 구입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www.ktbook.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 교사가 교과서 영업행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나?

질의

- 교사가 교과서 장사 영업행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일까요? 교사가 교과서 장사를 꼭 해야 하나요?
매년 초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분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택배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해 줄 수는 없는지?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과거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택배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직접교과서를 배송하는 방법을 이용한 적이 있었으나, 교과서는 일정시기에 전국 수 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적기에 배송되어야 하는데, 택배를 이용한 개별적 분배는 현행 물류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학생 및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질의

- NESCO가 공인할 수 있는 한반도의 東海의 最古역사 입증사료는 광개토대왕비와 陵입니다. 일본이 19세기말부터 광개토대왕비문을 변조하고 2014년 2월 7일 현재까지 광개토대왕비 관련 국내외 학자들이 東海賈國烟三看烟五를 포함하여 광개토대왕비문을 왜곡하고 있는 결과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영해와 영토, 주권과 역사 및 헌법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식민 침탈의 역사를 작금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가당치도 않은 행태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나라를 팔아 넘겼던 매국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 광개토대왕비의 碑利城二家爲國 에 따라 광개토대왕의 就山陵이 대한민국 東海 앞바다에서 1600餘 年 동안 엄연히 한민족 역사와 함께 하여 왔음을 UNESCO의 현지답사를 통해 시급히 공인하여 동서 철도의 항구적 흑자구조 구축과 함께, UNESCO 현지답사 공인 결과를 공개하여 통일 기반 국내 구축은 물론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한민족 한반도의 영해인 東海, EAST SEA 이름이 미국을 포함 전 세계에 확대 되도록 민원의 절차를 통한 본 제안을 별첨파일과 함께 유엔, 유네스코, 미 의회 조사국, 로마 교황청, 중국 신화통신 및 러시아 측에도 동시 제출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광개토대왕릉 현지답사는 우리 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제시하여 주신 광개토대왕릉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나 유관기관에 문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강원도 동해앞바다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광개토대왕릉의 위치 및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학계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역사에 대한 의견과 지적은 우리 부 업무수행에 있어 참고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 한국사 교육 강화 요청

질의

- 요즘 청소년들에게 역사인식이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도에 대한 생각도 없죠. 당장 자기일이 아니니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역사에 대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수업과정에서도 한국사가 주요과목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역사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도영토관리 대책단’을 만들어 교육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초·중·고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영토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독도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0

일본의 독도 및 위안부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질의

- 교육부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초,중,고교 교과서 나아가 대학(원)관련 서적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독도 및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정책을 기술하는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역사·사회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서

별도로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와 연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곧 보급할 예정이며, 차후에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주제로 한 학습용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11 于山島(우산도)가 獨島(독도)라는 논증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요청

질의

- 우산도 명칭에 대한 논증을 통하여 일본학자들이 우산도와 독도가 무관하다는 학계 주장을 무력화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되어온 독도의 명칭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산도 명칭에 대한 논증 작업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교육부 차원에서 독도명칭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북아 역사 재단측에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결과, 연중 공모를 통해 자유연구과제로 선정이

된 경우 일정부분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동북아 역사 재단 홈페이지(www.historyfoundation.or.kr)방문을 통해 연구과제 공모기간, 지원요건, 절차 등을 보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연구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커뮤니티 - 연구자정보 교류게시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귀하의 연구에 많은 발전이 깃들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하여 질의



질의

-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부의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5/14)하였으나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의사항에 대한 과정도 까다로웠지만 어렵게 올린 질의에 대하여 무성의한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상위기관으로서 대신 답변을 주시거나 해당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답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자본시장에서 평생 일하였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을 두고 나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던차 귀 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상고사학술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바람직한 학술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뜨거운 열기도 느꼈고 왜 이런 모임이 1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참고가 되는 유익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의 재단에 대한 내용을 듣다보니 어처구니없는 말씀이다 싶어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 해서 아래사항에 대한 확인요청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귀 재단이 동북아역사왜곡문제 즉, 동북공정에 대응한 국가단체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2. 귀 재단이 설립이후 진행한 사업과 성과에 대한 내용(독도관련사항 제외)
3. 귀 재단이 연간 200억의 국민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4. 귀 재단 설립후의 수입과 지출규모, 공개할 수 있다면 그 세부내역
5. 귀 재단의 인원구성이 일본사연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내역
6. 귀 재단이 미상원에 한강 이북이 옛 중국의 영토라고 적시한 보고서 제출여부, 과정과 그 사유 이상에 대하여 응당한 시일내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6 13:41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과서기획과]

□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책팀입니다. 확인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에 자료를 요청, 회신된 자료를 통해 항목별로 답변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 재단이 동북아역사왜곡문제 즉, 동북공정에 대응한 국가단체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동북아의 역사문제,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해 세운 기관입니다.

2. 귀 재단이 설립이후 진행한 사업과 성과에 대한 내용(독도관련사항 제외)

☞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일 역사문제 분석·대응 및 연구
 - 한중 역사문제 분석·대응 및 연구
 - 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동아시아사 교육과 역사 홍보 강화
 - 일본·중국의 교과서 왜곡 대응
 - 역사현안 연구기반 구축
 - 동아시아 역사 화해를 한 교류와 협력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3. 귀 재단이 연간 200억의 국민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 첨부과일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귀 재단의 설립후의 수입과 지출규모, 공개할 수 있다면 그 세부 내역

☞ 첨부과일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귀 재단의 인원구성이 일본사연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내역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직은 총 45명(2014.6월 기준)이며, 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사분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사, 한중 관계사, 정치외교 등의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일본 관련 연구직은 총 12명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일본사·근세사·현대사 등 4명, 한일관계사 5명, 정치외교 3명 등입니다.
6. 귀 재단이 미상원에 한강 이북이 옛 중국의 영토라고 적시한 보고서 제출여부, 과정과 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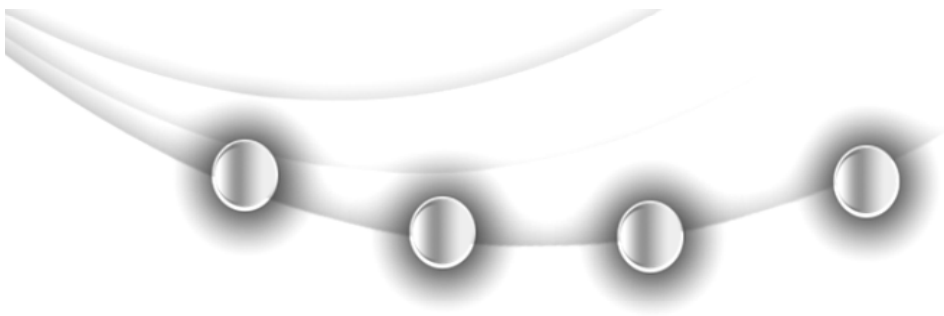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 동북아역사재단은 미상원에 한강 이북이 옛 중국의 영토라고 적시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학문적 근거를 통해 한강 이남까지 옛 중국의 영토라고

한 주장을 반박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통일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문위원이 美의회조사국(이하 CRS)에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한 범위를 보여주는 중국측 지도 및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미의회 조사국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조사국 전문위원은 외교부를 통해 동 보고서에 대한 재단의 학술적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 역사재단은 재단 내부와 국내 학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동 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한강 이남까지 옛 중국의 영토)에 반박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미의회 담당자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XIV. 교원양성 및 연수, 수당 및 성과금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관광 중등 정교사 2급 취득에 관한 건

질의

-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관광분야에서 강의를 하기 위하여 관광중등정교사 2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저는 80년대 학번으로 당시 저희 학과에 교직 이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으로 진학했습니다.
- 현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교육대학원 진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자에게 교사 자격을 위한 일정한 교직 이수에 해당하는 소양교육과 같은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현재 관광분야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사양성과정은 없으며, 귀하의 경우 교사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사자격증 수여 요구

질의

- 문대 치위생과를 나와서 치과에 예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했지만 구강보건교사 자격증 제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치위생사도 구강보건교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치위생사도 구강보건교사 자격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가 약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모든 학교에 한 명씩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 영역을 세분화 하여 구강보건교사 제도를 새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해결

질의

- 저는 교육대학원생입니다.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봉사 6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제가 방학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학교에 20군데가 넘는 곳에 전화를 드렸지만 교육봉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끊으십시오. 교육봉사60시간을 만들었으면 학교 측에서도 해주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일일이 전화하기도 넘 힘들고 교육봉사60시간을 위한 교육봉사 건수를 교육청에서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반드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력인정 시설이나, 사회교육기관, 공공기관등에서의 각종 봉사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어'를 지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고시 내용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 가정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당 30시간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4**중등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질의**

- 중등교원 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도 졸업 당시 '철학' 과목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본 교과목으로 도덕·윤리 교과 지도

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표시과목이 철학인 경우 교원 임용시 도덕, 윤리 교과 목 지원 자체가 되지 않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은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 중 철학과 논리학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교원임용 시험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있으므로, 관련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경력 인정관련 질문

질의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으로 중학교에서 교과 교실제 협력교사로 전임으로 일하는 기간이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로 전일제 근무 중인데 교육경력 100프로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경력이라 하면에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학교의 교원이라 하면 교장, 교감, 교사를 의미하므로, 귀하와 같이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감사합니다.

6 교원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의

질의

- 저는 작년에 모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확인해보니 자격증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용시험 시 "교육부장관"으로 발급받은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자격증의 발급 기관장 명칭은 수시로 바뀌므로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전적 대학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질의

□ 저는 지금 교육대학원 다니기 전에 다른 지역의 교육대학원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지금 다른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적 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을 지금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적대학원에서 들었던 과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기본 이수영역의 경우 이름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저의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영어문법지도론(b)”을 이수하였는데,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기본 이수과목인 “영어문법교육(b)”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마찬가지로, “영어담화. 텍스트 연구(a)”로 들은 전공과목을 재학 중인 학교의 “영어작문교육(a)”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식을 학교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 3) 교직과목 경우에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교과목 이름이 달라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관련 학점은 인정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전적대학원을 중퇴하였으므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전문상담교사 2급 기본 이수과목 문의

질의

- 저희 학교에는 기본 이수과목으로 7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그 외의 과목이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꼭 이수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8 10:53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50학점과 교직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공 50학점 중에는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그 외의 과목과 합산하여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이수과목 7과목외의 기본 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아도 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이 발급됩니다.

9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위한 학적상태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4년제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직이수를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 채운 상태이고, 다음 학기에 교직 무시험검정 응시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가 시행된다고 해서 알아보다가,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3항 관련 별표1에 적혀있는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아래에 인용합니다.)

□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가. 제1호 구분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 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2)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2)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이 중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부분의 “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 학기 학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 그 동안 학생을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을 다 채운 이후 졸업시험 응시, 졸업논문 제출, 어학성적 제출을 남겨놓은 학생들은 그 다음 학기부터 자동으로 0학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등록금 없음, 학적 상태는 “재학”)
-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수료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어학성적 제출을 남겨놓은 학생들을 더 이상 재학생으로 두지 않고 “수료생”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수료생이 되면 공식적으로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집단에 포함되지 않고, 수료생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학”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 수료생은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료, 즉 모든 과정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학점포기 등 학사과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아직 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졸업생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교직이수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재학생이 아닌 상태, 즉 별표1에 명시된 것처럼 더 이상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해당하는 않는 시점에서 제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다음 학기에 저는 수료생이 될 상자입니다. 수료생이 되는 것을 피하고, 재학상태로 학적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

다. 학점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료생 제도의 시행으로 더 이상 등록금이 소요되지 않는 0학점 등록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제한적인 경우에 허용한다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해당사항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3학점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적어도 다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1/6(약 6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교직검정에 응시하고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위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시고자 하는 귀하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만합니다. 그러므로 졸업 전의 모든 상태는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별로 졸업을 하지 않고 수료자 신분의 대학원생이 많아, 학사관리의 유연함을 목적으로 수료생 제도를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실시 대상이며, 수료생 신분에서 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에서 결정 할 사항이 됩니다.

10

유아교육법



질의

- 저는 유아교육과 학생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타대학교와 다른 점이 많아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정확한 교과과정과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영유아교육법 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는 대학에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치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과 이수학점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이수과목 등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서는 교육부 고시(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탑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에서는 기본 이수 과목을 21학점(7과목)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 이수과목은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 언어 교육, 유아 사회교육, 유아 과학교육, 유아 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 유아·초·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부모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 교직에서는 22학점을 이수해야하며,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이론 과목은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이 있습니다.

11 08학번 유아교육과 자격증과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에 2008년도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면서 혼란이 생겨서요. 저는 원래 구법적용자인데, 제가 휴학하고 복학하고, 성적이 안 좋고 그래서 아직도 3년제 다니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3학년 복학을 했어요.
- 그리고 아직 이수 못한 과목들이 남아있어서 올해 2학기에 다닐 예정이고, 내년 1학기 수업까지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것을 충족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거든요. 혹시 2011년에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제가 2009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단순휴학, 복학의 경우 적용학년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8학년도입학생으로 간주하여 첨부해 주신과일의 구법적용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자퇴 등으로 인하여 체적이 된 적이 있다면 적용 학년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2 방송대 유아교육과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

질의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방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서는 일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그중에 교육 실습 및 교육 봉사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3 교원양성 과정 업무 편람 79p에 교육실습에 관한 내용 제시되어 있는데, 이미 2급 이상의 정교사를 소지한 자, 교육자격 종별에 상관없이 현장실습 면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교육 자격종별 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의 자격종별을 말하는지요? 1급 2급 교장, 교감, 원감, 원장 등 구분을 말하는 지요?
2. 특수학교 (초등) 1급 정교사 인데 반드시 교육 실습과 교육봉사 활동을 나가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1. 교사 자격증 중 자격종별이라고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규정이므로 해당권한은 소속대학의 장에게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결정 할 사항이며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13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관련 질의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와 관련한 별표 2(교사자격기준)에 의하며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과 관련하여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2번안과 관련하여 학부 전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법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명시된 전문상담 교육과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과 학점 등이 궁금합니다. 현행 법 규정에 의하면 학부 전공과는 관련 없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으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저는 중등 2급 정교사(사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교직 경력은 없는 상태인데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으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이 안 된다면 어떠한 법 규정에 의거해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울러 전문상담교사(1급)자격기준 1항에 의하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 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 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인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
과에 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증 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
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학부에서의 전
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총42학점 이상)을 이수
해야 합니다. 42학점은 필수과목과[14학점(7과목)이상] 선택과목으
로 [28학점(14과목)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필수과목은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
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이며, 학점과는 별개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를 이수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은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
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
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4 정교사 자격증관련



질의

- 저는 2002년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공업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이 자격증으로 임용고시를 보고 싶은데 "환경공업" 과목을 뽑는 곳은 없습니다.
- 혹시 위의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지만 이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하는 방법은, 현직교원이 아니므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참고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타 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는 없습니다.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00교육과)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경우 모집 정원의 10%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10%범위와 관계없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5 교직이수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대학에서 교직이수 중에 있는데, 교원 인성평가 라는 것이 있 더군요. 인성평가를 받고 기준에 적합해야 교원자격증이 나오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학년 인지라 올해 초에 이미 인성평가를 한 번 했었고요.(설문지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인성평가 관련해서, 설문지 형식 이외의 교원자격증 발급 이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 다. 구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인성강화 캠프'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을 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기위해 교원자격 검정기준에는 이수 학점과는 별도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적격판정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 그 외 프로그램은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교원자격 검정업무가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에게로 권한이 위임 및 위탁되어있으므로 소속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 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6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



질의

- 저는 2010년 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아 교육경력 6년 7개월입니다. 유치원 원장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의 경우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장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 유치원에 임용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자격증 취득 당시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아도 원장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연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원자격업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7 교육봉사 인정 방법



질의

- ○○○에 근무하고 있는○○○입니다. 저희는 교육부 기관인증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이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교육봉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과정에 교육봉사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타의 봉사활동과는 달리 활동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봉사활동 가능 기관’을 가장 넓게 해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까지입니다. 하지만 귀사와 같이 교육기부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의 활동은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 기부라 하면 귀사의 자체 능력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수단을 교직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의 학점을 활용하도록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8 교원자격증 발급문의

질의

- 전문대 간호과 재학 중 교직이수를 하였으나 간호사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해서 1999년에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금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께서 대학졸업 당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졸업이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교원자격 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원자격 검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2조, 제45조에 의거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졸업하신 대학에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호사 자격증 외 보건교사 자격검정기준인 전공 및 교직과목은 모두 이수되어야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해



질의

- 유치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귀하께서 영문으로 된 유치원교사 자격증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최초로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대학에 영문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07년 교육대학원을 입학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술입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에 편입한 학과는 초등특수교육과로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중에 교육과정 및 평가이론,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행정 및 경영이론, 교육방법 및 공학이론 이 과목들을 편입학한 학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의거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면제에 대한 권한이 해당대학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교장자격 인정제도에 대하여



질의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별표2]에 의하면 초·중등학교 교장자격이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다. 9년 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1-3에 의거하여 현재 사립초등학교 교사이며 교직 10년 경력이 있는데 중학교 교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교육청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초·중등학교 교장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면, 모두 초·중등학교교장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과중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립 초등학교교사로 교직경력 10년이 있는 경우 중학교교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

2급 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질의

- 소기의 2급정교사자격증 과정을 마치고 1973.9월 4년 대학을 졸업. 당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2급(영어)정교사자격증을 여러 차례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여 이에 동 자격증 재발급을 요청하니, 조속 적의 조치 요망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23 21:3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2급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자격 검정 및 자격증 수여, 재교부 등에 관한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의거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 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귀하께서 과거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교부 받으신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현재 재발급을 위해서는 졸업하신대학에 재발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3

실기교사 자격 문의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구요. 실기교사 자격증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고 졸업을 했습니다. 교직이수과목

은 당연히 듣지 못했구요.

- 혹시 지금이라도 회계 쪽으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자격증명을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25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교직이수과목 등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대학 재학 중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을 하셨다면, 추가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신·편입학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공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기준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하면 실기교사(부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계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4

교육경력 인정기준에서 "전임경력 인정기준"이란?

질의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3)에서 제 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교육경력이라 함은,
 1. 유아교육법 제 2조 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정의에서 '전임경력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임경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경력’이란 동령 제8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이나,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임명권자의 임명을 받은 후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치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초·중등학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대학(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25

전문상담교사1급 교육경력 인정 범위



질의

-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1급의 경우 해당 학교급에서 교육경력 3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상담)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중학교에서 전문상담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중학교 전문상담사로서의 경력도 전문상담교사 1급의 교육경력 범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경력이라고 하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중학교의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원의 범주(교장, 교감, 교사)에 속하지 않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한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6 교원자격증 부전공 표시 문의

질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저는 현재 정교사자격증(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과에 편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

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이상 이수” 하면 편입한 다른 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학점만 채우고)정교사자격증에 부전공과목 표시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중등학교 정교사(2급) 7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 기준에 따르면 학점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졸업을 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직교사만 부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최근에 나온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질의

- 최근에 나온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검색창에서 '교원자격 검정 실무편람'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교원자격 검정실무편람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경에 탑재 예정입니다.

28 2급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



질의

-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이 필요한데 재발급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의거,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교사자격증을 재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최초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으신 대학의 교직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시-교원임용시 호봉 인정유무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2년 동안 사이버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용 시 학점은행제로 받은 학사 학위에 대하여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 관련하여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과정은 상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대학과정과는 달리 수업연한과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여 호봉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0

교원 성과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질의

- 교원 성과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의 상황 : A라는 교원은 2012. 1.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 하였는데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함. 그 사유는 당해 연도 12월말 현재로 재직상태가 아니어서 줄 수 없다고 함.
 2. 교과부의 성과금 지급지침의 중요 사항 -성과금 평가대상 근무기간은 1월1일~12월31일이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된다.(2개월 미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간제 교사도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3. 문제의 제기 : 성과금이란 실제로 근무한 실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실제로 2개월 이상 근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 12월말 현재로 재직상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봄.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만 충족된다면, 성과금 지급 취지에 맞게 12월 말 이전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모순되는 상황의 예 -기간제교사는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B라는 기간제교사가 3,4,5월 3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그 학교를 그 만 둘 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12월말 현재로 재직상태가 아닌 데도 주어야 하므로, 8월말 퇴직 교원과 비교할 때 서로 모순되는 상황임.
5. 여기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2013. 7. 5. 광명시 ○○초등학교 교장 ○○○

회신 회신일 : 2013-10-04 17:04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본 민원은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제기하신 것으로, 교육부로 이첩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에 의거하여 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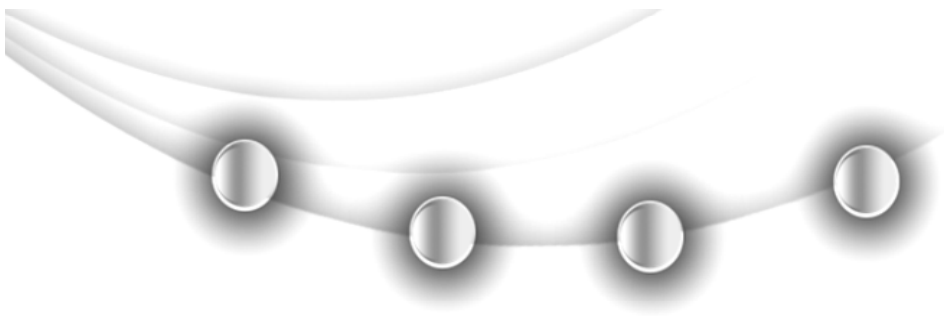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즉, 위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① 지급기준일(12.31)자로 공무원이어야 하고(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8장 성과사영금업무 처리기준 2. 지급대상) ②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만 예외를 두고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2013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침을 근거로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 평가 대상기간(1.1~12.31) 중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②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③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A학교에서 2개월, B학교에서 1개월 근무하는 경우 2개월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유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기간제교사는 지급근거나 적용되는 조건을 달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V.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질문 및 염려

질의

- 자격증부여는 일정수준 이상의 실력자만 주는 게 공정합니다. 시험 없이 자격증 주겠다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테스트 해보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험 없으면 무슨 잣대로 학생 개개인을 판단합니까?
- 이것이 과연 스펙과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실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하면 뇌물관계, 부조리가 이어져 자격증 남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그런 식으로 될까봐 염려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3-07-03 15:44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먼저 국가자격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교육부는 민간자격 과정이수형 자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과 자격 모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또는 자격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학교교육과 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자격도 1회성 검정이 아닌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여 자격과 학교교육이 곧바로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아직 구체적인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운영방안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정이수형 자격이 학교교육만 마치면 무조건 자격을 주어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모 대학은 학교교육과정을 마치면 영국자동차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 이 학교의 경우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과 교수가 수업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한 학기에 자격평가기관이 와서 실제 학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국자격제도의 운영제도를 보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학교교육의 질관리 뿐만 아니라 자격의 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격의 남발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에 산업계 및 자격관리센터가 같이 참여하고, 실제 NCS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 자격을 부여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등 엄정한 평가 및 질관리 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기존의 1회성 검정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학교 및 외부기관의 평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이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과 자격이 보다 현장성 있고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자격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격 기본법상 국가의 범위



질의

- 자격 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의 범위인데 해석상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 등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대학 내 연구소는 행정기관의 장인 총장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한 부속시설(연구시설)로서 총장이 연구소장(교육공무원인 교수)을 임명(임기1년, 연임 가능)하는 등 대학 내 행정부서이므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국가에 해당되어 민간자격 신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맞는 해석인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15:44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고유번호증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법인세과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시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설이 고유번호를 등록하였다는 것은 귀 대학이 관할세무서에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해당 부속시설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동 부속시설이 국가가 아닌 단체라는 사실을 귀 대학과 관할세무서가 세법상의 절차를 통하여 증명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시설장의 명의로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민간자격증 시험일정 조정요망

질의

- 민간자격증 시험일정 조정요망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인 '0000지도사'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요. 시험일정 일 일요일 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일요일마다 종교시설에 가는데 어떻게 항상 일요일만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국가자격시험처럼 일요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실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15:44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민원주신 민간자격 0000지도사의 시험일정 등의 조정(응시자의 응시편의 확보)에 대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달리 민간자격관리자(즉, 자격을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 운영하는 자)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자격의 명칭 및 등급종목, 자격 검정을 담당할 보유 인력, 관리 운영 조직,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일의 결정도 민간자격관리자가 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진행하는 바, 이는 국가의 지도, 감독의 사항은 아닙니

다.(*국가는 민간자격 등록 시, 법적요건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자격기본법 제17조)

4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한국시행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 측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해외 자격시험을 한국에서 시행할 경우, 사전에 취득해야 할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기타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15:44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선생님께서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의 한국 시행에 있어 "사전 취득해야할 인허가 사항 및 기타 규제"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기본법은 국내법이며 국내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에 대한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국외자격인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의 한국 시행"과 관련한자격기본법 상의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는 "해당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국가자격인 "변호사" 자격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에 관련 질의를 하시어, 국외 변호사 자격의 국내 검정으로 인하여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제 문제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5 자격시험 문제지 공개청구



질의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의 대부분은 기출문제를 공개하는데 반해 A 자격시험의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정보습득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자격증 응시자가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해 불합격 되었을 경우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문제가 틀려 일정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수험대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A 자격시험의 경우 높은 응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매회 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데도 불합격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국민에게 시간적,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출문제 공개를 요구하오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3 15:44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선생님께서는 공인민간자격인 A의 기출문제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공개 요구한 공인민간자격 "A"의 기출문제는 교육부가 생산하는 정보가 아닌, 해당 자격의 공인자격관리자인 "0000대학교"가 생산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자격의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출문제 공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령상의 국가자격과 국가 기술 자격으로 구분되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민원 내용 중 언급하신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는 각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과 '주택법'에 의한 국가자격입니다. 이러한 국가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국토교통부)가 자격시행(등록)기관이며 자격증 발급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A'는 '민간(0000대학교)'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일정한 요건과 공인조사연구를 거쳐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가 '공인'해 준 민간자격입니다.
- 따라서 자격시행(등록)기관과 자격증 발급의 주체는 모두 국가가 아닌 공인자격관리자(민간)가 됩니다.]선생님께서 기출문제 공개를 요구한 "A"는 공인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을 공인한 것이며 공인기준은 같은 법 제24조를 따르게 됩니다.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이 경우, '0000대학교')의 검정관리운영규정이 자격기본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자격관리자의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또한 주무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법 29조에 의거 연 1회 이상지도감독의 권한을 행사합니다.(법 제26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공인을 취소하거나 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청구인께서 요구하신, 기출문제의 공개 여부는 공인자격관리자의 자격기본법 상 의무가 아니며, 공인 기준(혹은 공인조사연구의 평가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장관이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6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의 학원 등록여부

질의

- 최근 지자체 주민센터 내의 자치활동-문화센터, 요가, 등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런 주민센터 내의 자치활동을 할 경우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강사료와 실비 명목으로 저렴하게 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주민이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활동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회신

회신일 : 2013-07-10 15:5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 따라 학원이란“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인(私人)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학원법상의 학원의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환불기간 관련 문의

질의

- 본인은 (2014.2.16) ○○○사회교육원 수업료 완납 후, 폐강통지[2014.2.28 (금)] 받았습니다. 빨리 다른 교육원 등록을 위해 월요일 담당자와 통화 후 사정을 몇 차례 얘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등록금반환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2주후에 입금된다는 답변입니다. 근거는, 학교방침이랍니다.

첫째, 등록금 반환 신청 후 2주일 후 라는 건 어떤 근거인지요?

둘째, 폐강통보 시 연락자에게 등록금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정도는 공지해 주어서 연락자가 알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3-17 18:2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2항에 의거 평생교육기관은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학습비 반환과 관련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질의

- 안녕하세요.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학력증명서에 자국 정부의 확인(apostille)을 받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에게도 해당 대학이 소재한 정부로부터 확인(apostille)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강사도 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강사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을 임의로 한국인 강사에게 적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5 16:1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공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에서 그 졸업증명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공증을 통해야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7.1.자 “외국서류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Apostille(아포스티유)협약에 가

입된 나라간의 공문서에 대하여 간편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아포스티유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및 효력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영사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문의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학원설립 예정지와 같은 건물에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1항 제18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의 규정에 의거 학원설립 운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된 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3-08-01 13:3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유해업소 관련 규정은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유해업소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은 유해업소에 해당되므로 동일 건물에서 학원의 설립이 불가능합니다.(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학원법 제5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 건물내 학원 설립 가능함)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유해업소 제외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한가?

질의

- 대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 (ex) - 과정명 : 미리 듣는 대학 강의- 청소년을 위한 수사학(리더의 사고와 표현원리)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외한 문화과정 등) - 강좌일시 : 2일 16시간 과정(단기과정)

회신 회신일 : 2013-08-02 11:0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1.7.25)으로, 동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제1항 1호 다목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해 교습을 하려고 하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MOU 체결, 예산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성인반 개설·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학원은 크게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뉘고 있으며, 일부 성인이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편성된 학교교과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성인반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3-08-13 10:2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구분이며 준수하여야 합니

다. 현재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소수의 성인을 함께 교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것은 주된 교습대상이 학생인 점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소수의 성인을 함께 교습을 할 수 있으나 성인반을 별도로 개설하거나 적극 홍보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피아노 방문 레슨 관련 문의

질의

- 음악 관련 법인 회사입니다. 향후 피아노 방문 레슨 사업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소속 강사가 교육청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피아노 강사와 계약을 맺음.
2. 레슨받기를 원하는 각 가정으로 강사를 파견 파견한 후 레슨비는 회사로 입금.
3. 회사가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회신

회신일 : 2013-08-06 16:1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상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도)에서 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이 소득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하는 등 개인의 교습에 대한 신고수리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파견형태로 교습하거나, 교습비등을 회사로 입금하는 형식은 불법입니다.
- 강사를 채용하고 교습비등의 영수증을 회사가 발급한다면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원은 등록된 장소(강의실, 실습실)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원격교습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할때 그 건축물의 용도

질의

- 원격교습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할 때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과연 무엇으로 되어있어야 하는지를 여쭙어보기 위해서 본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08 10:14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원격교습학원은 해당 교육지

●●● 유아·초·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학원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바닥 면적에 따라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토해양부 질의('12.4.10)에 따른 회신('12.5.0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에서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12.10.5)이 있었으나,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침이며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에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24조(적용의 배제)에 명시한 시설기준의 면제는 시·도 학원조례로 정한 교습과정별 시설 및 교구의 기준을 면제한다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구분의 적용 배제 한다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및 시행 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14 평생교육원 부설 체험공간 등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지식인력개발형태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부설로 다문화체험 등 테마공간을 설치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려고합니다. 평생교육원 형태에서 이러한 설치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8-28 17:44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현재 지식인력 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평생교육원 이외에 부설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 시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5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예능학원 운영과 관련 질의

질의

- 예능 계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도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주된 교습대상일 경우(예를 들어,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강생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소수의 기타 연령층(성인)을 대상으로 교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3 12:2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며, 외국어, 독서계열 뿐만 아닌 진학지도, 예능, 기타교습과정의 대상도 상위법령(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대상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성인 수강가능여부는 유아와 성인의 비율로 판단함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을 교습 받기 위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 국제화, 미술, 실용음악 등의 교습과정이 있으므로 성인은 원칙적으로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6 학원설립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교육센터 안에서 이론 뿐만 아니라 광택 및 선팅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을 저희 프렌차이즈를 오픈하시는 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학원 설립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학원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제 4조 제3항 관련)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합니다. 자동차 중장비도 아니고, 정비 쪽도 아닙니다.

- 이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데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경우, 어느 부분으로 학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시설과 설비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9-17 14:2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별표2]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2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기타과정을 두어 별표에 분류되지 않은 과정도 등록할 수 있으나 평생직업 교육학원은 기타과정이 없으므로 교습과정 분류표상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카케어 관련 과정은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유사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원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원어민(중국인강사) 채용시 구비서류****질의**

- 원어민(중국인) 원어민 강사 채용시 구비서류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범죄사실 증명서 와 역시 공증 받은 졸업증서 그리고 한국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다면 구비서류 중에 공증받은 졸업증서 대신 한국 대학원의 수료증서 및 수료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09-17 9:3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 학력 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강사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다면, 한국의 대학원 입학 시 중국에서의 대학교 졸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학원 수료증명서로 학력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사의 채용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오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 독학사 제도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학점 이수를 위해 독학사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질문1] 1차 시험에서 필수 과목 외에 경제학개론과 경영학개론을 각각 합격하면 2단계 과목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필수과목이 모두 불합격을 하더라도), 2단계에서도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관리 2개만 이수(타 과목 불합격)하면 3단계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3단계에서 재무관리 및 재무회계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1단계가 과목당 4학점, 2~3단계가 과목당 5학점이 이수 되는 게 맞는 거죠?

[질문2] 각 단계별로 본인에게 합격 불필요한 과목 응시 시간에도 무조건 응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시간에만 들어가서 응시가 가능한가요?

[질문3]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과목에 합격하면,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25 10:5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독학 학위제는 1단계에서 2과목 합격 시(필수, 선택 구분 없이) 2단

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2단계 2과목 합격시 3단계 응시자격이 주어 집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과목당 4학점, 2-3단계 과목은 과목당 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시험은 자신이 지원 한 과목의 시험시간에만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므로 지원한 과목의 시험시간을 확인하시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합격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진행하여야만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기간(1월, 4월, 7월, 10월) 중에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접수 기간 중에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 양재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 기간 중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신청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를 위한 수수료가 있으며, 금액은 학습자 등록은 4,000원, 학점인정 신청 시 학점당 1,000원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및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9 학사학위 인정에 대하여

질의

- 안녕하세요? 교과부에서 주관하시는 학사학위 인정에 문의 드립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졸업 시 학사학위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과부에 학사학위 신청에 의해 학사학위 인정은 동일한 학사학위의 법적 효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가칭 한예진)이 수강생 모집에 일정 학점 이수시 교과부장관이 인정한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하오니 적법하게 교과부에 학사학위 신청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 진로문제와 연결된 부분이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24 10:3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의거 운영되는 제도로써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과 학습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 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기관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운영을 학교재단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공공법인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학교 재단이 직접 할수 있는지 여부와 타 공공법인에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부설 평생교육원을 대학교 설립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타 공공법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면, 해당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수입은 면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1-03 18:5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 따라서, 위탁이라고 함은 학교(학교법인)이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더라도 수입은 모두 학교회계(기성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문의



질의

- 2013. 8. 28 일자 국회입법예고가 종료된 학원법개정안 (김상희등11인, 의안번호 6351-2013.8.13 발의)에 따르면 동일 교습 장소에서 2명까지만 개인과외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데 (14조의2⑨항 신설), 그러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된 교습자가 공동주택에서 보조강사를 고용하여 과외교습을 하고, 그 보조강사는 그 교습자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그 고용강사는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3-12-03 22:2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로 시행된 법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인과외교습자는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한 장소에 2명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학생을 공동으로 교습하는 등 실질적인 학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외국어학원 시설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보습학원으로 교습과정을 변경하고 종전에 했던 외국어 과정 수업 {성인/자격증반} 수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습학원에서 일본어 능력 시험반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03 22:3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은 등록된 장소에서 등록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일본어과정은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강의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오나, 교과과정에 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습은 외국어학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임시보습학원에서 성인을 교습하는 것은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니 자세한 행정처분 및 학원 관리에 대하여는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PEET 기숙학원 개원 가능 여부

질의

- PEET(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은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으로 일반 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등 4과목을 시험칩니다. 일종의 약학대학 입학에 위한 자격시험으로 학원분류상 검정고시 분야로 봐도 되는지요? 또 이와 관련하여 기숙학원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3-12-05 16:3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정되며, 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인·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ET과정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4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해

질의

- 연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던 중 회사를 그만두면 대학교도 그만
뒤야 하는 것이지요? 대학교측에서 교육부에 점검이 나와 실제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직 사실을
조사하고 갔다면 대학교 입학당시까지 재직 중이었다가 대학교 입학 후
회사를 그만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위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7 20:54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당시에 재직상태를 유지하
여야 합니다.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재직 상태유지 여부는 각 대학 및
학과(과정)의 특수성·자율성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학교의 입학
전형, 학칙 등을 확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5

온라인 학원관련 법률상담



질의

- 온라인 학원 운영에 있어 온라인상에서 강의나 수강은 사용자 편의성
으로 진행이 원활 할 수 있지만, 자체 시험이나 평가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해야만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오프라인
강의장을 통해서 업무 제휴 또는 파트너 계약을 준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6 17:0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 등록 시 시설, 설비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학원으로 등록될 장소의 면적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원격교습학원은 학생들의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업소, 시설 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한정하며, 학습자를 집합하여 이루어지는 교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6 온라인 첨삭 서비스의 학원법 적용 유무

질의

-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대학생을 상대로, 메일을 통해 글쓰기(필기시험 대비)를 첨삭해 주는 서비스의 경우입니다. 1:1로 진행되고, 최대 첨삭 인원은 한 달에 8명입니다. 100% 메일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2-12 11:1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학원등록대상인 원격교습학원은 유아, 초·중등 교육법 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습을 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의 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7

학원의 내부 실측



질의

- 학원의 시설규모에서 면적은 기둥과 복도를 제외하고 내부를 실측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내부실 측으로 한다면 칸막이도 제외되는지? 책장도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4-01-07 16:1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학원의 강의실 면적 측정시 실내의 내벽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원법 집행을 위한 시·도 학원 담당자 학원 업무편람, 업무 지침 등을 통해 기둥이나 강의실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실의 최소 면적을 확보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 따라서 강의실의 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은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를

놓고 강사의 교습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이며, 내벽 이외에 기둥 또는 벽면에서 돌출되어 실제 교습에 이용될 수 없는 부분 등이 있다면 제외하고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8 외국인에게 한국어 과외를 할수있나?

질의

- 외국인 친구로 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습 장소는 카페를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친구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저는 현재 사이버대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만약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외를 하게 된다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8 21:1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실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여 주신 성인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 재학생의, 교습행위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9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문의

질의

-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항의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2.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사관(기숙사)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사관에서는 서울종합예술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 내칙에는 [단 각종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전문대학 수준으로 인가한 학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안내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법률 제8조 제1호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이나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1-28 13:2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은 아닙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학사 : 140학점, 전문학사 : 80학점)을 취득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학이나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방위산업체 학점인정에 대해서

질의

- 2014.02.14일부터 산업체 복무한사람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는 법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 된다는데 이게 대학의 자율인가요? 일부 대학에만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18 15:0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인정)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및 기준등)에 의거 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1 취학전 아동의 교습 문의

질의

- 1. 교습소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는지?
- 2. 유아만을 교습하려고 하면 교습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4-02-18 15:0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미취학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습한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며, 9인 이하로 교습한다면 교습소의 신고 대상도 제외됩니다.
- 다만, 미취학 유아와 초·중등학교 학생을 함께 교습한다면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유아만 10인 이상을 교습할 경우 학원의 등록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합니다.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 2)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대안학교에서의 과목이수, 검정고시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 2항에 나와 있듯이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2-25 10:4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 제3조의2(학교외 학습 경험의 인정 등)제1항 3호에 의거 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 음악2 과목에 대한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2과목에 대해 이수를 인정받아, 인정 과목에 대한 출석수업과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시험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 외 학습경험을 통해 과목이수를 인정받은 경우, 해당과목에

대한 성적 및 석차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대학진학 시 요구할 수 있는 해당과목의 성적 및 석차 제출이 불가합니다.

- 합격하신 검정고시 과목에 대해 이수인정을 받으시려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 외 학습경험인정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해당시·도교육청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관해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www.cyber.hs.kr) 및 콜센터[1544-1294(3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조건 및 절차

질의

- 한국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 분들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학력 인정 과정을 많이 원하는데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4-22 22:1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절차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별지9호 서식 외)
→ 지정신청서 제출(별지11호 서식 외) → 서류검토, 현장확인, 지정기준 심의 → 학력인정시설 지정 → 지정서 교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사무는 시도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4

방문미술(유아~성인대상)교습의 학원설립 여부

질의

- 방문 미술 교습을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세무소에 면세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학원 설립을 먼저하고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문 미술하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업을 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각각의 선생님들이 개인과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3-12 17:1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건물에 강의실면적 및 교구, 교육환경을 갖추고 학생이 방문하여 교습을 받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문미술교습을 하는 강사를 관리하는 시설은 학원의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방문교습을 행하는 강사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타 자세한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문의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5 강사 요건

질의

-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 했습니다.외국어 학원에 강사로써 취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4-10 15:1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민원인이 한국국적이라면 국내·외 대학의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면 학원 강사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대학교 이상의 학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6 방송 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가능 여부

질의

- 중학교 3학년 1학기 하고 2학기 전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특수학교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서른이 넘어가며

졸업장이 없다는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고입검정고시를 보았지만 몇 과목만 합격해서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로 접어야 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던데, 제가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4-04-03 18:0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입학 자격 등)에 의거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에 편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방송통신중학교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아현중부설 방송중), 대구(대구고부설 방송중), 광주(광주북성중부설 방송중), 경기(수원제일중부설 방송중, 호원중부설 방송중), 대전(봉명중부설 방송중), 경남(경원중부설 방송중, 진주중부설 방송중), 강원(남춘천중부설 방송중, 원주중부설 방송중, 강릉중부설 방송중), 전북(전라중부설 방송중)

37 성인 대상 평생 직업 학원 설립시



질의

□ 외국어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1. 학원의 건축물 용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베트남어, 몽골어, 한국어 등의 과정을 만들려고 할 때 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3. 강사의 자격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10 15:2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학원이 설립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500㎡미만의 경우에는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이며,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2. 또한 베트남어, 몽골어, 한국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계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립을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원개원 예정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3.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의 강사자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며,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강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성인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원을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이런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국어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어 과정을 각각의 교습과정으로 보아 종합학원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11 17:3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 2에 따라 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원의 종류를 교습대상으로 구분하고, 유아 및 초·중·고학생을 보호하기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시간제한, 교습비 조정명령가능, 유해시설과 동일 건물내 입점불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하나의 학원으로 등록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후 학원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9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 문의

질의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중 건축물대장 용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와 별표1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나요?
- 현재 건축물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면 용도 변경 없이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 변동사항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12 8:2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와 별표1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동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40

평생교육원 교수가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에 포함되나?

질의

- 현재 모 평생교육원에서 경영학 분야 강의 및 운영을 하는 교수입니다. 최근 한 국가기관 인재 모집에 있어서,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이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생교육원 교수는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원도 학위 및 학점을 위한 기관이고, 또한 교수의 자격도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본으로 선발하는 데,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01 8:4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의 교수 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서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치된 각 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평생교육원에서의 근무 경력이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채용 기관에서 교수 인력 채용시 유사 경력에 대한 인정 범위를 판단할 사안이며, 일률

적으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4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치변경 불가 등의 제한 완화 요구

질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치변경 불가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5-02 19:5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위치변경 및 학급증설 : 현재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 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 절차 없이 기존학력 인정 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더라도, 학력 인정 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서는 구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나, 학교시설의 확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질의

-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일반 특성화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얼핏, 인가형 대안학교와 같은 것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학교들의 교사는 일반 사립고와 같은 채용방식으로 뽑히며, 일반사립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4-05-26 20:4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 시설이며, 이들 시설 중 특성화고 형태는 교육과정 운영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고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면,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상급학교 진학 등에 있어 타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받습니다.
- 한편, 특성화고에 주어지는 혜택 등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을 하는 기관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해당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 과정 및 대우는 해당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3 국내대학에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질의

- 1. 국내 대학 평생교육원의 강좌를 외국인이 수강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2. 환불 관련요청이 있을 시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지, 수강생의 국적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는지요?
3.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강좌가 오픈되면 첫 강좌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동시에 오픈이 됩니다. 이럴 경우 환불 발생시, 기존오프라인 강좌처럼 수업시간의 1/3경과 전에는 2/3환불, 1/2경과전에는 1/2환불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3경과전에 모든 강좌를 수강하고 환불시 수강료의 2/3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문제발생) 이럴 경우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5-27 9:5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이며, 해외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FTA(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한-아세안간 무역협정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2.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원이므로 환불에 관한 사항 또한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재 환불규정은 총 수업 시수에 맞추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4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 자격 제한을 두는지 여부

2.

질의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 입학 자격의 제한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 미인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중학교 과정의 경우 연령 제한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것과 의무교육대상 연령인 경우 입학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요?
- 또 다른 하나는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때도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학아동 연령의학생인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입학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4-06-05 15:0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제1항·제3항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45 학원법 문의



질의

- 학원법 2조1호 및 2조2호의 「시설」은 학원법 및 그 관계법에 의할 때, ① 학원용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만을 의미 하나요? 건축법 2조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기재가 「공동주택 (아파트)」로 명시된 학원법 2조3호가목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학원의 설립·등록」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4-06-05 17:3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질의하여 주신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6 학원 강사 자격 문의



질의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미술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사자격

과 관련하여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3에서는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강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2 16:24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2조 제1항에,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원법시행령 제12조 학원강사 자격기준 [별표3] 제8호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법령에서는 기능과 예능을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원법시행령 제12조 학원강사 자격기준 [별표3] 7호의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으로 봄이 타당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술대전에서의 입상실적은 기능대회 입상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7

학원의 휴원 및 폐원에 대한 질문



질의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원 및 폐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의 휴원과 폐원은 어떻게 다른지 학원법 소관중앙 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1 16:5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원은 학원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학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운영중단의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시설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원은 기존시설에서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장소 변경하지 않고 학원 시설을 종국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8 학원 환불 처리 기한 문의

질의

- 학원법 시행령에 보면,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5일이라는 것이 영업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휴가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만약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내 반환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6-13 11:0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8조, 동법령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습비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학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9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수강생 대학 소속 선수로 인정 가능한가?

질의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수강 선수가 대학부 스포츠 대회

출전 시 평생교육시설 운영 대학 소속 학생선수 신분 인정 가능 여부(소속 대학 학생선수 신분으로 선수 등록 및 대회 출전 등)

회신 회신일 : 2014-06-18 22:1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양인문 교육 등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강생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이 아닙니다. 단,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의 과정을 수강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학부 스포츠 대회 출전 가능 여부는 해당 대회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인에게 영어 '토익' 동영상강의를 제공하는데, 총 50시간이고, 학습비 대신 콘텐츠 사용료로 총 9만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습비 아님!)이 때, 평생교육법22조2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48조에 의한 '신고' 대상인가요? 즉, 동법의 학습비와 사용료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4-06-29 16:4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비는 학습자가 학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를 의미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콘텐츠 사용료는 학습비로 여겨집니다.

51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어캠프 관련

질의

-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에 위탁을 통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어학캠프 운영은 가능하나 사인이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주립대학교와 협정을 통해 한국의 대학교에서 어학캠프를 운영을 하는 경우, 사인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보아 운영이 허용되는지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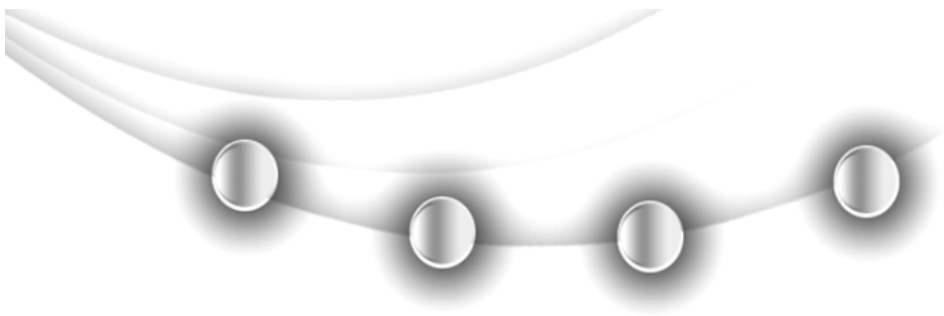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일 : 2014-06-29 16:4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방학기간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영어캠프의 위탁 운영을 위한 MOU 체결이 필요하며, MOU 체결의 상대방으로 외국교육기관인 외국대학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XVI. 기 타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원격콘텐츠 나레이션 자막 지원 문의 **질의**

- 원격 연수를 하다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습할 때 화면 밑에 자막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09 14:18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과]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원격콘텐츠 나레이션 자막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작된 콘텐츠 중에는 화면 하단에 나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강의 나레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3년 자체 개발하는 콘텐츠부터는 별도 자막 지원 기능과 장애인들의 접근성까지도 고려하여 개발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연수 이수증 발급 시기 문의 **질의**

- OO 원격 연수를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이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07-18 9:48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과]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OO 원격연수 이수증 발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증 발급의 원칙은 과정 종료 후 1주 후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가급적 연수 종료 후 2~3일 이내 1만 여명이 넘는 이수자를 확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수증 출력 오류

질의

- 원격연수를 이수했으나, 이수증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3-10-10 10:33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이수증 출력 문제 해결 방법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neti.go.kr)에서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이수증 출력] (번호1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연수 신청기간 문의

질의

- 매달 연수 신청기간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4-04-25 17:52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 선생님께서 문의해 주신 연수 신청기간과 관련해서는,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neti.go.kr) 하단의 '수강신청'란의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신청기간 및 교육기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물품 구매 요청

질의

- 중소기업제품 및 장애인 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 요청 및 특정업종에 대한 제한경쟁 요구

회신

회신일 : 2013-07-15 17:31 [운영지원과 김영래]

- 1.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업 간 제

한입찰시행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부는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질의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제3항에 따르면,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국외에서 거주하던 분을 우리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채용하였고, 근무를 위하여 우리학교 부근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경우 위 제3항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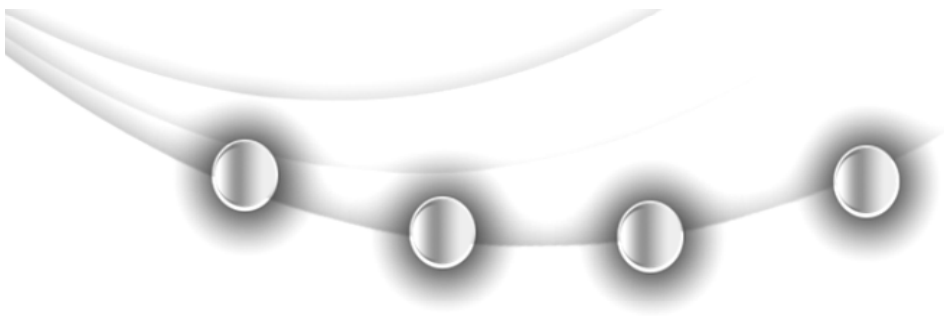
회신일 : 2013-09-09 9:39 [운영지원과 김대원]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제3항에 따라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거주하던 분을 교원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XVII. 민원처리관련 법령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X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 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8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0.22.]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0조(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20.]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2조의2(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등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7조 삭제 <2012.12.20.>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 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 [전문개정 2012.12.20.]

제9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서류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20.]

제10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며,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관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분명히 밝히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제16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일괄 접수·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전문개정 2012.12.20.]

제22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 관련민원"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 담당부서 등으

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절 처리 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개정 2012.12.20.>

제23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신고확인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민원인임을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27조(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 ②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28조(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1. 처리기간의 경과
2.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3.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의 추가 요구
4. 그 밖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전문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13.12.24.]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0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2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

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5조(전자민원창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의 통지
2. 처리 진행상황, 처리기간 연장통지 등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편람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절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 <개정 2012.12.20.>

-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④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⑦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

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 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

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 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8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와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9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전문개정 2012.12.20.]

제40조(정보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41조(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2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2절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3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설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4조(기능)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여러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20.]

제45조(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

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46조(의견청취 등) ① 조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3절 의견수렴, 확인·점검 및 평가 등

제50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51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및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52조(평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제53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0.]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5조제3항,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로 한다.

<162>부터 <418>까지 생략

만든 사람들

총 괄	감 사 관	박 준 모
	민원조사담당관	김 용 호
기획 및 편집	사 무 관	이 진 화
	교 육 연 구 사	강 경 탁
	주 무 관	이 우 정
	주 무 관	고 재 범
	주 무 관	현 지 선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 쇄 일 : 2014년 12월

발 행 일 : 2014년 12월

발 행 처 : 교육부 감사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우 339-012)

전화 : 044-203-6107

인 쇄 처 : 미래인쇄

전화 : 044-866-6331

본 책자는 PDF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민원신청⇒질의회신사례집)

또한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

(☎ 044-203-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